투자 위험 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회사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투자회사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한국투자 ANKOR유전 해외자원개발 특별자산 투자회사 1호(지분증권)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투자 ANKOR유전 해외자원개발 특별자산 투자회사 1호(지분증권)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한국투자 ANKOR유전 해외자원개발 특별자산 투자회사 1호(지분증권)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주식회사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 · 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kira.koreainvestment.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 2011년 12월 22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5년 10월 11일
6.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기명식 70,000,000주
 (모집 또는 매출 총액) — 350,000,000,000원
7. 모집 또는 매출기간 (판매기간) — 2012년 1월 26일 ~ 2012년 1월 31일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 ☎02-6112-5999, kira.koreainvestment.com
 한국금융투자협회 → ☎02-2003-9000, www.kofia.or.kr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참조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관련 — 해당사항 없음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붙임] 용어풀이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인 경우 금융투자협회에서 정한 별도의 자격요건(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5-13조에 의한 특별자산펀드 교육을 이수한 자)이 있는 자만이 투자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

4.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투자회사의 공모주식에의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모주식 및 본 투자회사에 관한 내용 및 본건 공모의 조건과 관련한 위험 등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자기 책임하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5.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ANKOR유전" 매매 거래를 위해 한국석유공사와 집합투자업자가 매매 관련 합의서(이하 "합의서")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청약 후 동 합의서 및 관련 계약에 따라 투자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동 과정에서 시장 상황(유가의 급변 등) 등의 이유로 투자를 집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투자원금에 대하여 납입일로부터의 운용이자를 가산한 금액, 제반 보수 및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투자자들에게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7. 유가 및 환율에 대한 헤지(Hedge) 거래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하므로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유가, 환율, 생산량, 예상 USD 유입액 등)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

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8. 본 투자회사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유가, 가스가격, 환율, 생산량 등)가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으로 부보(보험기간은 10년임)될 부분을 제외한 원금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9.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작성·교부하였다고 하여 본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가 본건 공모주식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투자자의 투자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으니 이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본 투자회사의 투자성과는 판매회사인 삼성증권(주)과 대우증권(주)의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증권의 위탁판매업무(모집업무)만 수행할 뿐 본 투자회사의 가치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1.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12. 폐쇄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유동성 제공을 위해 상장이 되더라도 거래량 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환금성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3.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증권신고서에는 매출규모, 이익규모 등 발행인의 영업실적 및 기타 경영성과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자본금규모, 자금흐름 등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 특정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의 변동 및 일정 시점에서의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 기타 위와 같은 예측정보에 관한 평가사항 등의 예측정보를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본 증권신고서에서 "전망", "전망입니다", "예상", "예상입니다", "추정", "추정됩니다","계획", "계획입니다", "예정", "예정입니다" 등과 같은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되거나, 기타 발행인의 미래의 재무상태 및 계약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권리, 의무이행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부분이 예측정보에 관한 부분입니다.

- 예측정보는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당사의 미래 재무상태 또는 계약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권리, 의무이행 등에 관하여 회계법인 또는 주관회사의

합리적가정 및 예상에 기초한 것일 뿐이므로,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본 증권신고서"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에 열거된 사항 및 기타 여러 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는 중요한 점에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측정보에 관한 내용은 오직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만 유효하므로,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예측정보의 기초가 된 정보의 변경에 대해 이를 다시 투자자에게 알려 줄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15.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정보는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가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날 또는 투자자가 본 투자회사의 공모주식을 취득하는 날에 상관없이 표지에 기재된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만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재무정보 등은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 이후에 기재 내용과는 다르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 약 정 보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11.12.22]

한국투자 ANKOR유전 해외자원개발 특별자산 투자회사 1호(지분증권) [펀드코드 : A7485]

투자 위험 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주)는 이 투자회사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자본금의 **50%이상**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여 예상 매장량과 실제 매장량의 차이로 발생 가능한 현금유입금액 감소위험과 예상 생산량 및 시점과 실제 생산량 및 시점 간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현금유입금액 감소위험이 있는 **매장량·생산량예측위험,** 유가 하락에 따른 현금유입금액 감소에 따른 **원유가격변동위험**, 천재지변 및 유전 소재 지역의 정세 급변으로 인한 사업 불능에 따른 **투자원금 손실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한국투자 ANKOR유전 해외자원개발 특별자산 투자회사 1호(지분증권)** 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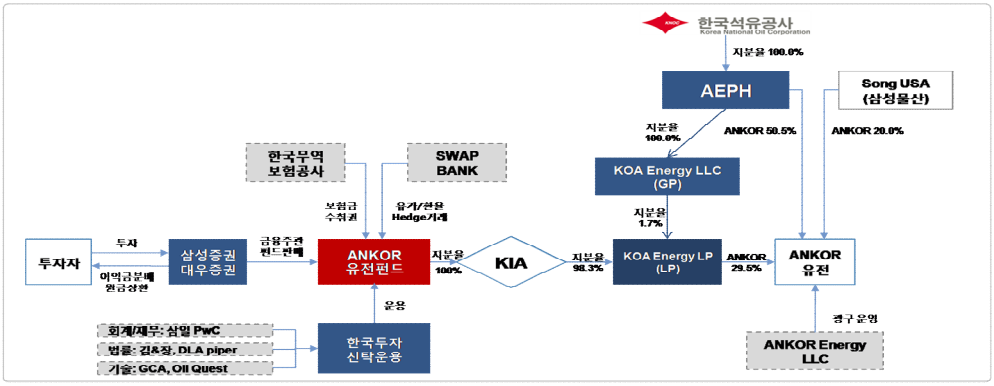
(1) 투자목적

이 투자회사는 집합투자규약 제4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전담회사의 지분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투자전략

본 투자회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KIA(Korea Investment ANKOR LLC)가 유한책임사원(지분 98.3%)으로 있는 파트너쉽(KOA Energy LP)은 한국석유공사의 100%자회사인 AEPH가 보유하고 있는 ANKOR 유전 지분 80% 중 36.875% (전체 ANKOR유전 지분의 29.5%에 해당함)를 인수할 예정입니다. 다만, 본 투자회사가 지급하는 매매대금은 한국석유공사와 집합투자업자가 체결한 "매매대금 결정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헤지(Hedge) 체결 유가를 고려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본 투자회사는 전체 ANKOR유전 지분의 29%를 양수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본 투자회사의 투자 집행 절차는 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루어 집니다.

① AEPH가 자신의 100% 자회사인 GP에 ANKOR 유전의 지분 29.5%를 현물 출자

② GP는 ANKOR 유전 지분 29.5% 중 0.5%를 LP에 현물 출자하고 나머지 지분 29%를 LP에 매각

<table>
<tr><td></td><td>③ 본 투자회사는 도관(Conduit)목적의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형태의 특수목적회사인 KIA(Korea Investment ANKOR LLC)를 설립
④ 본 투자회사는 Korea Investment ANKOR LLC의 지분 100%를 매입하는 대가로 현금출자를 하고, Korea Investment ANKOR LLC는 출자받은 금액으로 KOA Energy LP의 출자지분 중 98.3%(유한책임사원 지분)를 취득

※ 상기 투자전략은 운용상황,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멕시코만의 지역적 특성
ANKOR 유전이 속한 미국 멕시코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다양한 원유 매장 Field와 높은 매장량을 보유한 미국내 주요 에너지 공급지역입니다.

미국 에너지국(Department of Energy) 산하 기관인 EIA(Energy Information Association, 미국 에너지 정보관리 협회) 및 BOEMRE(Bereau of Ocean Energy Management, Regulation and Enforcement, 미국 대양 에너지 관리, 규제, 집행국)에 따르면 멕시코만 지역은 2010년 기준 총 6,375개의 리스지역(Lease, 자원개발 허가지역)과 3,311개의 생산 플랫폼(Platform)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확인 가채매장량(P1) 기준, 미국 전체 확인 가채매장량의 14%인 약 44억 boe의 매장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09년 569.7mmbbl의 원유 및 2,450bcf의 천연가스를 생산, 미국 전체 유·가스 생산량의 26% 이상을 차지하는 등 멕시코만은 미국 에너지 공급원의 근간이 되는 지역입니다.

둘째, 지역적 안정성 및 우수한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운송 및 판매가 용이한 지역입니다.

멕시코만 지역은 원유 개발 및 생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전통적으로 가장 투자매력도가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미국의 성숙한 정치상황 하에 형성된 안정적인 법제도를 바탕으로 매력적인 재정 안정성에 기반한 생산 및 투자 장려정책를 추진하고 있으며 둘째, 선진화된 생산개발시설 및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구축하고 추가 탐사 및 개발을 통한 성장 기회가 추구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멕시코만 지역은 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원유 및 가스의 생산, 정제, 운송을 위한 다양한 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상(Offshore)에서 생산된 원유 및 가스는 Pipeline을 통해 육상(Onshore)으로 운송되어 미국 내 원유정제용량의 43%(총 7,572Mboed)를 차지하는 Gulf Coast의 정제시설을 통해 미국 각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 ANKOR 유전 개요
ANKOR 유전은 세계최대 유전지역 중 한곳인 미국 멕시코만에 위치해 있으며, 한국석유공사와 삼성물산이 각각 100% 자회사인 ANKOR E&P Holdings 와 Samsung Oil & Gas USA (Song USA) 를 통해서, 2008년 3월 Taylor Energy 社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생산유전입니다.
2010년 6월 New Field 社로부터 SS 290의 광권을 추가로 인수하여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 기준 6개 유전 19개 리스 (16개 생산, 1개 개발, 2개 탐사)를 미국 현지의 운영자회사 (ANKOR Energy LLC)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매 결산일 주주에게 분배되는 금액 중 유전의 생산량 감퇴곡선(Decline Curve)을 반영한 원금상환스케줄에 따른 예상금액은 이익초과분배금(투자원금)의 형태로 분배되며, 동 예상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익분배금(배당)의 형태로 분배될 계획입니다. 만일 어느 결산기에 발생한 회사의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원금상환스케줄에 따른 예상금액을 하회하면, 해당 결산기에는 분배 가능한 금액만이 이익초과분배금(투자원금)으로 지급되고, 부족한 투자원금은 다음 결산기로 이월되어 분배되며, 해당 결산기의 이익분배금(배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td></tr>
<tr><td>분류</td><td>투자회사, 부동산형, 폐쇄형(중도환매불가능), 단위형</td></tr>
<tr><td>투자비용</td><td>
<table>
<tr><th>클래스 종류</th><th>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th><th>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th></tr>
</table>
</td></tr>
</table>

	선취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 보수	동종 유형 총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투자회사	납입금액의 1.5%	0.3500	0.0500	1.6200	620	644	680	723	775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주2) 동종유형 총보수·비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단위 :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	-	-	-	
투자회사	2012.02.02	-	-	-	-	-
비교지수	-	-	-	-	-	-
수익률 변동성	2012.02.02	-	-	-	-	-

(주1)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회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 기간동안의 세전 평균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투자회사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투자회사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류형투자회사의 경우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회사 (전체)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특별자산형)				운용경력년수
			집합투자기구수(개)	운용규모(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박재형	1989	차장	11	4,530	-	-	2	-6.24	9개월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dis.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당해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인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이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위험	**매장량 및 생산량 예측 위험**	본 투자회사는 ANKOR유전의 매장량을 예측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공사(KNOC)가 제공한 ANKOR 유전의 원유 및 천연가스 등에 대한 매장량 평가 자료 및 생산 계획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매장량 및 생산량 예측의 경우 예측 방법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예측된 생산량과 실제 생산량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당초 예상한 현금유입액보다 실제 현금유입액이 감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의 그래프는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목적으로 기재하는 것이며, 동 그래프에 사용한 데이터는 예시용이므로 실제 혹은 미래의 실제 현금흐름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투자회사는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총 3차례에 걸쳐 매장량 및 생산량 예측 위험을 검증하였습니다. 우선, 세계적인 유전기술평가사인 William M. Cobb & Associates(WMCA)를 자문회사로 선정하여 총7주간에 걸쳐 실사 및 기술평가, 평가 보고 등의 자문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나온 자료에 대하여 세계 유수의 유전 평가기관인 Wood Mackenzie (WM)로부터 가치 산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Global 매장량 평가기관인 Gaffney, Cline & Associates (GCA)의 기술성 평가용역 검토 및 자문을 받아 가치산정 결과를 검증하여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매장량 및 생산량 예측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 매장량 및 생산량과 실제 매장량 및 생산량 간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익분배금(배당) 및 이익초과분배금(투자원금)의 지급시기가 늦어지거나 이익초과분배금(투자원금)의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격 프리미엄 상실 위험	본 투자회사는 투자한 유전이 위치한 미국 멕시코만 지역에서 거래되는 원유인 LLS(Li ght Louisiana Sweet) 및 HLS(Heavy Louisiana Sweet)가 WTI(West Texas Intermediat e, Cushing 지역 지표가격)가격 대비 갖고 있는 가격 프리미엄을 향후 수익 추정에 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격 프리미엄은 캐나다와 미국을 연결하는 Keystone Pipeline 증설로 인한 Cushing 지역의 재고부담 가중, 미국 남부 주요 석유정제 집중지역(Houston & Port Arthur)과의 접근성 등의 이유에서 발생한 것으로 2013년 초로 예정된 파이프라인 증설(Canada Keystone Pipeline 등) 등 Cushing 지역의 재고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이러한 프리미엄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따라 본 투자회사의 가치평가(Valuation)시 현 상황이 2012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Cushing 지역의 재고 해소가 예상보다 빨리 이루어지거나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원인에 의해 이러한 가격 프리미엄은 언제든지 사라지거나 할인 요인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펀드의 예상현금 유입액은 감소될 것입니다.
	배당감소 위험	본 투자회사가 100% 출자한 KIA(Korea Investment ANKOR LLC)는 한국석유공사의 100% 자회사 AEPH로부터 ANKOR유전 지분 29.5%를 양수한 파트너쉽(KOA Energy LP)의 유한책임사원(Closing 당시 98.3% 지분)으로서, CAPEX(자본지출: 생산관련 비용)와 OPEX(업무지출: 운영관련 비용) 등을 이유로 무한책임사원(GP)인 KOA Energy LLC가 비용 청구를 할 경우, 그 지분에 비례하여 파트너십에 비용 납입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 투자회사는 CAPEX와 OPEX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이러한 비용 청구에 응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향후 수령할 수익분배금에서 이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 예상된 현금유입액 보다 실제 현금유입액이 감소할 위험이 있으며 그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헤지(Hedge) 계약체결 위험	신고서 작성일 현재 집합투자업자는 한국석유공사와 “ANKOR유전” 매매거래를 위해 매매관련 합의서(이하 “합의서”)를 체결한 상태이며, 이에 본 투자회사가 지급하는 매매대금은 거래 기준 유가($97/bbl)와 조정 유가("실제 헤지(Hedge) 체결 유가" + $1/bbl)의 비용을 고려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동 과정에서 시장 상황(유가의 급변 등) 등의 이유로 헤지(Hedge) 유가 및 목표 헤지 물량이 당초의 계획대로 이행(체결)되지 못할 경우 매매 및

		출자계약서(Amended and Restated Sales and Contribution Agreement)의 체결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배금의 수령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헤지(Hedge) 손실 위험	본 투자회사가 투자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로 인해 헤지 정산금 미결제 상황이 발생하여 계약 당시 수령하기로 한 금액을 수령받지 못할 경우 본 투자회사에서 추구하는 투자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상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파생상품 그 자체에 투자되는 금액보다도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투자원금의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헤지(Hedge)계약시 예상한 규모(Notional Quantity)와 실제 규모(실제 생산량 또는 실제 USD 유입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예상한 헤지(Hedge)효과가 기대와 다를 수 있으며, 기타 예측 불가한 상황 발생시 파생상품 거래에서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구비용 초과 위험	본 투자회사가 궁극적으로 투자하는 대상인 ANKOR 유전은 미국 멕시코만 천해(淺海)지역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유정에서 생산되는 석유가 생산비용으로 인하여 경제성을 상실하거나 고갈되어 철수할 경우 환경 보호 및 해양자원 보전을 위하여 유정을 폐쇄하여 자연상태로 복구하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투자회사는 AEPH와 협의된 수준에서 산정한 복구비를 매년 적립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투자회사의 해산 시 유전의 잔여 순현재가치(NPV)가 최초에 협의된 복구비를 산정하는데 배경이 되었던 예상 NPV와 차이가 발생할 경우 산정된 복구비 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투자회사는 AEPH와 맺게 될 유한책임조합계약서(Amended and Restated Agreement of Limited Partnership)을 통해 적립된 복구비 범위 내에서만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금성 위험	본 투자회사는 환매금지형 투자회사로 본 투자회사의 주식은 공모를 통해 한국거래소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며 상장이후 회사 청산시까지 지속적으로 거래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시장 금리가 상승할 경우 상대적으로 투자매력이 감소하여 주가가 하락하거나, 시장참여자의 부족으로 인해 상장 후 시장에서의 거래량이 예상보다 풍부하지 못할 경우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거래비용 증가 등으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의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본 투자회사는 미국 멕시코만에 위치한 ANKOR유전에 투자하며 대상 유전에서 생산되는 원유 및 천연가스의 매출로부터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을 통해 원금과 수익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유전 소재지의 특성상 본 투자회사는 외국통화(미국 달러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하며, 미래 발생할 현금흐름 또한 외국통화(미국 달러화)로 표시됩니다. 이에 따라 본 투자회사가 보유하게 될 자산가치 및 미래 현금흐름은 원/달러환율 변동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화 가치 수익률이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투자회사는 동 위험을 헤지(Hedge)하기 위해 본 투자회사로 유입될 예상 현금흐름 및 전체 투자금의 50% ~ 90%수준으로 달러 선도 계약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대상 자산에서 미래 발생하게 될 현금흐름은 매 3개월 단위마다 정산되기 때문에 본 투자회사로 유입될 미래 현금흐름 또한 매 3개월 단위로 유입되는 스케줄을 감안하여, 파생상품 계약 체결시 특정 결재 기준일의 환율을 기준으로 3개월 단위로 정산할 예정입니다. (투자금에 대한 헤지 부분은 헤지 계약의 만기 또는 필요시 만기 이전에 정산 예정). 헤지(Hedge) 거래를 통해 환율 변동 위험을 경감할 수 있으나, 실제 유입 현금액과 헤지(Hedge) 계약 물량과의 차이로 인해 헤지(Hedge) 효과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 투자회사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1주=5,000원)	**환매 방법**	**• 이 투자회사는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환매 수수료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원칙적으로 환매가 금지되어 있으나 정관 제		

<table>
<tr><td></td><td colspan="2">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에 한함</td><td></td><td></td></tr>
<tr><td>기준가격</td><td colspan="4"><table>
<tr><td>산정방법</td><td>-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부채총액)/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주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td></tr>
<tr><td>공시장소</td><td>-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kira.koreainvestment.com)·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td></tr>
</table></td></tr>
<tr><td>과세</td><td colspan="4"><table>
<tr><th>구분</th><th>과세의 주요내용</th></tr>
<tr><td>집합투자기구</td><td>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td></tr>
<tr><td>수익자</td><td>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td></tr>
</table></td></tr>
<tr><td>전환절차 및 방법</td><td colspan="4">해당사항 없음</td></tr>
<tr><td>집합투자업자</td><td colspan="4">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대표번호:02-6112-5999/인터넷홈페이지 : kira.koreainvestment.com)</td></tr>
<tr><td>모집기간</td><td colspan="2">2012년 1월 26일 ~ 2012년 1월 31일</td><td>모집·매출 총액</td><td>350,000,000,000원</td></tr>
<tr><td>효력 발생일</td><td colspan="2">2025년 10월 11일</td><td>존속기간</td><td>투자회사의 설립일로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다만, 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존속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습니다.</td></tr>
<tr><td>판매회사</td><td colspan="4">- 삼성증권(주), 대우증권(주)
- 판매회사는 추가되거나 제외될 수 있으며,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kira.koreainvestment.com) 인터넷홈페이지 참고</td></tr>
<tr><td>참조</td><td colspan="4">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107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집합투자기구의 종류</td><td colspan="4">해당사항 없음</td></tr>
</table>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kira.koreainvestmen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kira.koreainvestment.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kira.koreainvestment.com)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투자 ANKOR유전 해외자원개발 특별자산 투자회사 1호(지분증권)	A7485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회사

나. 운용자산별 종류 : 특별자산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아니한 투자회사)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단위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하지 아니한 투자회사)

마. 특수형태 표시 : 해당사항 없음

(주 1) 본 투자회사는 자산을 한국석유공사의 100% 자회사 ANKOR E&P HOLDINGS CORPORATION(이하 "AEPH")로부터 ANKOR 유전의 전체 지분중 29.5% 지분을 양수할 KOA Energy LP(이하 "파트너쉽" 또는 "LP")의 98.3%의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 지분을 보유한 해외자원개발전담회사(Korea Investment ANKOR LLC, 이하 "KIA")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입니다.

(주 2) 본 투자회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 14 조의 2 에 따른 방법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에 자산을 투자하여 운용실적에 따라 분배금이 지급되며, 최초투자금액의 전액상환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주 3) 본 투자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및 "제 2 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4) 본 투자회사는 단위형으로 설립된 이후에는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설립일로부터 8 개월간
2. 정관 제 6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분배금의 범위에서 이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경우
3. 기존 주주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신탁업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
4. 기존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3. 모집예정금액

주식의 종류	모집의 방법	주식의 수	모집가액	모집총액
		모집	확정	확정
기명식 보통주	일반공모	70백만주	5,000원	3,500억원

(주 1) 본 투자회사의 경우 정관에서 1 주의 모집가액은 2011 년 10 월 20 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모집기간	2012년 1월 26일 ~ 2012년 1월 31일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홈페이지 및 HTS -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kira.koreainvestmen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방법 및 절차	판매회사의 지점방문, 홈페이지 및 HTS를 통한 청약만 가능하며 유선 청약은 불가능합니다.
배정방법 및 절차	- 총 청약주식수가 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잔여주식은 배정비율에 따라 우선 배정하되 배정대상자가 최종 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 추첨에 의하여 배정합니다. -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미달하여 청약미달분이 발생한 경우 해당 미달분은 판매회사인 삼성증권(주)와 대우증권(주)이 전량 인수합니다. - 청약결과 배정공고 및 초과청약금 환불에 관한 통지는 판매회사인 삼성증권 홈페이지(www.samsungpop.com) 및 대우증권 홈페이지(www.bestez.com)에 게시합니다.

(주 1)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2 부.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모집의 내용

(1) 모집방법 : 일반공모

모 집 대 상	주 수(%)	주당 모집가액	모집총액	비 고
일 반 모 집	70,000,000주 (100%)	5,000원	350,000,000,000원	-
기 타	-	-	-	-
합 계	70,000,000주 (100%)	5,000원	350,000,000,000원	-

(2) 일반모집 대상 배정 내역

모 집 대 상	주 수(%)	주당 모집가액	모집총액	비 고
일반청약자	50,000,000주 (71.43%)	5,000원	250,000,000,000원	-
기관투자자	20,000,000주 (28.57%)	5,000원	100,000,000,000원	-
합 계	70,000,000주 (100%)	5,000원	350,000,000,000원	-

(주 1) "기관투자자"는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0 조 제 2 항, 제 3 항의 전문투자자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82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

③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④ 위 ①~③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주 2) 배정주식수

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 배정분 중 청약 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 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

② 한편,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판매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전량 인수합니다.

(3) 모집 조건

항 목			내 용
모집 주식의 수			70,000,000주
주당 모집가액		확정가액	5,000원
모집총액		확정가액	350,000,000,000원
최저 청약한도			일반청약자 200주/기관투자자 20,000주
최고 청약한도			일반청약자 50,000,000주/기관투자자 20,000,000주
청약단위			200주 이상 2,000주 이하: 200주 단위 2,000주 초과 10,000주 이하: 1,000주 단위 10,000주 초과 20,000주 이하: 2,000주 단위 20,000주 초과 50,000주 이하: 5,000주 단위 50,000주 초과 200,000주 이하: 10,000주 단위 200,000주 초과: 20,000주 단위
청약기간	일반모집	개시일	2012년 1월 26일
		종료일	2012년 1월 31일
	기타	개시일	-
		종료일	-
청약증거금	일반모집		청약금액의 101.5%
	기타		-
납입기일			2012년 2월 2일
배당기산일(결산일) 주1), 주2)			매년 3월 5일, 6월5일, 9월5일, 12월5일 - 투자회사 설립연도: 2011년 8월 2일 - 투자회사 청산연도: 당해 회사 청산일

(주 1) 당해 본 투자회사의 제 1 기 사업년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2012 년 6 월 5 일까지 입니다.

(주 2) 금번 공모를 통해 본 투자회사에 투자하시는 투자자께서는 2012 년 2 월 2 일(납입일)에 배정받으신 주식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본 투자회사의 예상 배당과 관련 내용은 “제 2 부. 14. 이익분배 및 과세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 3) 본 건 청약시 선취판매수수료 1.5% 징구를 위하여 청약증거금율을 101.5%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환불일에 배정수량에 대해서만 1.5%의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며, 배정받지 못한 주식에 대해서는 선취판매수수

료분 1.5%를 포함하여 환불됩니다. 다만 기관투자자의 경우 해당 청약분에 대한 납입 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청약증거금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나. 모집의 절차

(1) 모집일자 및 방법

구 분	일 자	신 문
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또는 신주발행의 공고	-	-
모집가액 확정의 공고	-	-
청약 공고	2012년 1월 26일	매일경제신문
	2012년 1월 30일	한국경제신문
배정 공고	2012년 2월 2일	인터넷공고 (주1)

(주 1) 청약결과 배정공고 및 초과청약금 환불에 관한 통지는 판매회사인 삼성증권 홈페이지 (www.samsungpop.com) 및 대우증권 홈페이지(www.bestez.com)에 게시합니다.

(2) 청약방법

판매회사는 다음 각 항의 방법으로 본 주식의 청약을 실시하며, 판매회사의 지점방문, 홈페이지 및 HTS를 통한 청약만 가능하며, 유선 청약은 불가능합니다. 다음에서 정하지 않은 청약의 실시와 관련된 절차, 방법에 대해서는 판매회사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① 청약기간은 2012년 1월 26일 ~ 31일(4영업일)까지입니다.

②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1.5%로 합니다. 다만 기관투자자의 경우 해당 청약분에 대한 납입 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청약증거금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③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2012년 2월 2일)에 주식의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이 납입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2012년 2월 2일에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환불합니다. 다만, 상기 초과금을 청약자에게 지급할 때까지 유치하는 기간에 대한 이자는 청약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청약한도는 일반투자자의 경우 200주 이상 50,000,000주 이하, 기관투자자의 경우 20,000주 이상 20,000,000주 이하로 합니다. 청약한도의 상한을 초과한 청약은 그 초과부분에 한하여, 청약한도의 하한에 미달한 청약은 그 전체에 대하여 청약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⑥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날인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사무취급처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각 판매회사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합니다.

⑦ 각 청약자는 회사 주식에 투자함에 따르는 위험을 고려하고 인식한 후에 투자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투자위험에 대한 내용은 “제2부 10.집합투자기구의 위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투자설명서 교부의무

본 일반공모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

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1. 교부장소 : 삼성증권(주) 및 대우증권(주) 본·지점, 홈페이지 및 HTS
2. 교부방법 :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수령 또는 판매회사 홈페이지 및 HTS를 통한 전자문서의 다운로드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구 분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비고
영업점 내방	주식청약서를 통한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 작성 (투자설명서 수령 혹은 거부 확인)	-
온라인(HTS)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온라인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확인	-

3. 교부일시 :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이후 ~ 청약일
4. 기타사항 :
 1) "본 주식"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 또는 홈페이지 및 HTS에서 다운로드 받은 후 교부확인란에 체크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2)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주식"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단, 전자문서(홈페이지 및 HTS 사용시)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청약 및 투자설명서 관련 안내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따라 금번 일반공모에 참여 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는 교부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교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금번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의 수령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수령 및 청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청약취급처

판매회사의 지점방문, 홈페이지 및 HTS를 통한 청약만 가능하며 유선을 통한 청약은 불가능합니다.

(5) 청약결과 배정방법

판매회사는 본 주식의 모집과정에서 다음 각 항과 같이 본 주식을 배정합니다

① 총 공모주식수 70,000,000주(350,000,000,000원)에 대해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에 각각 71.43% 와 28.57%를 배정합니다.

② 총 청약주식수가 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잔여주식은 배정비율에 따라 우선 배정하되 배정대상자가 최종 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 추첨에 의하여 배정합니다.

③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미달하여 청약미달분이 발생한 경우 해당 미달분은 판매회사인 삼성증권(주)와 대우증권(주)이 전량 인수합니다.

④ 상기 내용 이외의 것은 관련 법령 및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유관기관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6)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① 판매회사는 본 주식의 주금을 중소기업은행 영업부에 납입합니다.

② 주권교부일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일시 : 청약결과 주식배정 확정시 판매회사가 공고합니다.
2. 장소 : 한국예탁결제원
3. 1호와 2호에 불구하고 청약자 또는 인수단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주식의 발행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의 명의로 일괄 발행되고 동 주권은 청약취급처의 청약자 계좌에 자동으로 입고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

⑤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증권등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새로 증권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증권등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그 증권등을 발행 또는 등록(「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할 수 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인수인			인수주식의 종류 및 수	인수조건	인수방법
명칭	고유번호	주소			
삼성증권	00104856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250번지	기명식 보통주식 70,000,000주 (100%)	주1)	총액인수
대우증권	0011172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3			

(주 1) 판매회사인 삼성증권(주) 및 대우증권(주)이 전체공모물량의 100%를 인수하며, 각 판매회사는 인수계약서상 청약물량에 따라 인수수수료를 지급받습니다.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 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립되어야 하며, 금융위원회에 등록 후 최초증자일로부터 90일이내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 주주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존립기간 중 당해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상장 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전반적인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상대적으로 투자매력이 감소하여 주가가 하락하거나, 시장참여자의 부족으로 인해 상장 후 시장에서의 거래가 예상보다 활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향후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이 상장될 경우 매매거래개시일의 최초 가격은 장 개시시점까지 동 모집가액을 기준으로 90~200% 범위 내에서 동시호가를 받아 결정됩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투자 ANKOR유전 해외자원개발 특별자산 투자회사 1호(지분증권)	A7485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 경 사 항
2011년 8월 2일	투자회사 최초설립

3. 집합투자기구의 존속기간

이 투자회사의 존속기간은 투자회사의 설립일로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존속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습니다.

(주 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해산)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5 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대표전화 : 02-6112-5999 ,kira.koreainvestment.com)

(주 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4 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1) 책임운용전문인력 [2025.9.28 기준]

성명	생년(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해외특별자산형)				운용경력년수
			집합투자기구수(개)	운용규모(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박재형	1989	차장	11	4,530	-	-	2	-6.24	9개월

<이력>

-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학사
- 2015. 01. ~ 2019. 01: DL이앤씨㈜(구 대림산업㈜) 플랜트사업본부 공정설계팀/사업팀
- 2019. 01. ~ 2022. 04: DL이앤씨㈜(구 대림산업㈜) 주택사업본부 도시정비사업팀
- 2022. 05. ~ 2024. 12: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 자산운용부
- 2025. 01. ~ 현재: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 프로젝트금융부

(2)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해당사항 없습니다.									
성명	생년(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해외특별자산형)				운용경력년수
			집합투자기구수(개)	운용규모(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	-	-	-	-	-	-	-	-	-
<이력> -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회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 2)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회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3)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4)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주5)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당해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인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이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6)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구분	성명	수 (개)	운용규모 (억원)
책임운용전문인력	박재형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	-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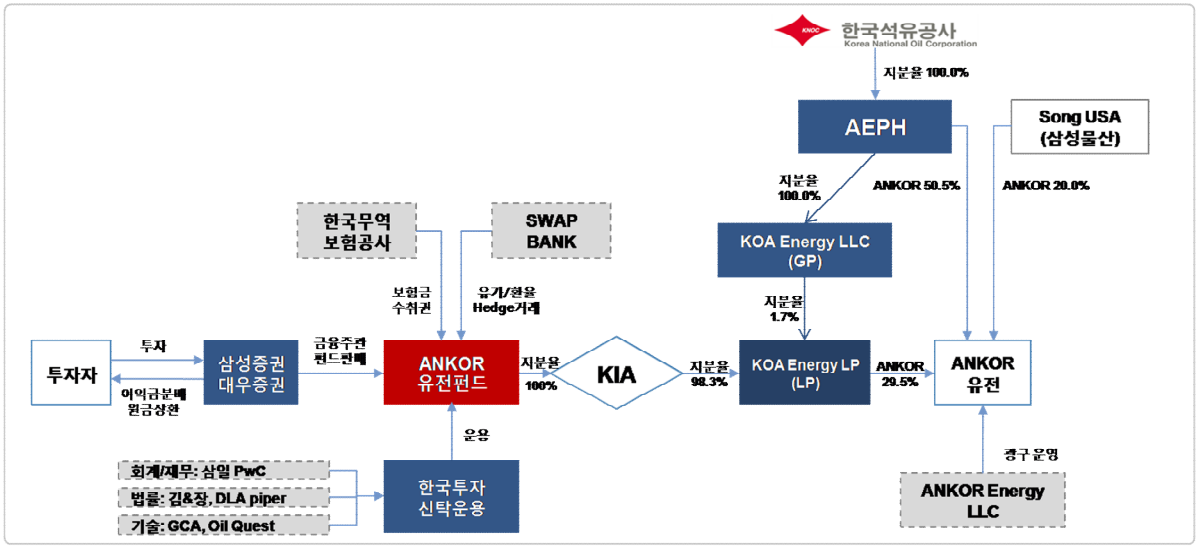
책임운용전문인력	운 용 기 간
김지훈	2012년 2월 2일 ~ 2014년 12월 4일
이제호	2014년 12월 5일 ~ 2016년 12월 29일
김왕곤	2016년 12월 30일 ~ 2018년 10월 30일
장도익	2018년 10월 31일 ~ 2025년 10월 10일
박재형	2025년 10월 11일 ~ 현재
(주1) 최근 3년간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회사, 특별자산, 폐쇄형, 단위형

본 투자회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이하 "해자법") 제14조의 2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회사재산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운용하는 해자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입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구조



- 본 투자회사는 한국석유공사의 100% 자회사인 AEPH(미국 델라웨어 주, 유한책임회사)와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인 Samsung Oil & Gas USA Corp.(이하 “Song USA”)이 각 80%,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ANKOR 유전 지분 중 일부에 투자하여 이로부터 나오는 현금흐름을 분배받게 됩니다.
- 이를 위해 본 투자회사는 투자회사의 100% 자회사인 해외자원개발전담회사(KIA)를 통해 ANKOR유전 지분 29.5%를 보유한 파트너쉽(KOA Energy LP, 이하 “LP”) 지분 98.3%을 인수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본 투자회사가 ANKOR 유전에 대한 실질적인 지분율은 29% 입니다.) 지분 인수 대금은 한국석유공사와 집합투자업자가 체결한 "매매대금 결정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헤지 체결 유가를 고려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 한국석유공사의 100% 손자회사이자 LP의 지분 1.7%를 보유한 KOA Energy LLC(이하 “GP”)가 동 LP를 관리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ANKOR 광구에 대한 KOA Energy LLC의 실질적인 지분율은 0.5% 입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회사는 집합투자규약 제4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전담회사의 지분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원유매장량과 생산량, 국제원유가격, 천연가스가격, 환율변동 등 다양한 변수와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본 투자회사의 주주는 직접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본 투자회사는 매 결산기마다 주주에게 이익초과분배금의 형태로 투자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실제 원유의 생산량이 예측과 다르거나 배당계획 등이 바뀔 경우 또는 유가·천연가스가격·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회피를 위한 헤지(Hedge) 거래조건 등이 바뀔 경우 본 투자회사의

현금흐름은 예측치와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주주에 대한 예상 분배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투자회사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자산보관회사 및 판매회사 등 본 투자회사와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투자대상	투자한도	투자대상 세부내용
해외자원개발사업	자본금의 50%이상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자산 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방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자 나.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자 및 시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해외자원개발 전담회사”라 한다)에 대한 출자 다. 해외자원개발 전담회사의 주식·지분·채권·수익권의 취득 라. 해외자원개발 전담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의 취득 마. 위험회피 외의 목적으로 투자대상자원을 기초로 한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바. 석유·가스·일반광물의 탐사·개발·생산·정제·운송·판매 등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의 자원개발기업의 경영권 참여를 위한 주식 및 지분의 투자 사.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인한 투자
채권	자산총액의 50%미만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주식관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어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22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자산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야 한다.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10%이하**	장내·외 파생상품 [아래 참조]
	법시행령 제2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법시행령 제83조 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 집합투자업자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채권조정에 따라 채권 및 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사재산으로 지분증권인 주식, 주식관련사채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 제48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회사 설정일로부터 6월간
 2. 회사 결산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결산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회사의 사업년도 종료일 이전 1월간(사업년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회사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정관 제48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정관 제48조 제3호 및 제49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회사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회사의 일부해산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회사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정관 제49조 제2호 본문,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은 회사 설립 후의 최초 운용개시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투자대상 파생상품

투자대상	기초자산	투자의 목적	투자대상 세부내용

장내 파생상품	에너지관련	에너지나 에너지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	헤지 및 헤지외목적	가격변동으로 인한 투자회사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할 수 있음
	채권관련	채권이나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	헤지 및 헤지외목적	
	통화관련	통화나 통화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	헤지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회사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할 수 있음
장외 파생상품	에너지관련	에너지나 에너지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	헤지 및 헤지외목적	가격변동으로 인한 투자회사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할 수 있음
	채권관련	채권이나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	헤지 및 헤지외목적	금리스왑거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이 투자회사가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이하
	통화관련	통화나 통화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	헤지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회사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할 수 있음
(주1) 본 투자회사는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위험회피거래를 제외함)이 자산총액의 10%이하가 되도록 투자합니다.				

나. 투자제한

투자제한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이해관계인 투자제한	- 이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 83 조 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동일종목 투자제한	- 이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시행령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서 별도로 특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최초설정일 부터 1 개월간
	-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회사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 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에 회사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파생상품 투자제한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회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 부터 1 개월간
	- 법시행령 제80조 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아래 표에 제시된 용어들은 이하 본문에 사용된 원유 및 가스 관련 각종 단위에 대한 설명이오니 투자자께서는 검토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구분	정의
b/d	barrels per day	하루에 생산/소비되는 원유량의 표시
bbl	barrel	배럴. 42 갤런에 해당하는 석유 계량 단위 (1갤런 = 3.785412 리터) (미국 기준)
boe	barrels of oil equivalent	석유환산 배럴. 일반적으로 6,000 입방피트의 천연가스는 열량기준 1배럴(42갤런)의 원유와 같은 에너지를 냄. (원유와 천연가스 등을 통일 규격으로 표기하기 위한 단위임. 원유1배럴과 천연가스 6,000입방피트를 1boe로 표기한다.)
Mboe	Thousand barrels of equivalent	석유환산 천배럴
MMboe	Million barrels of equivalent	석유환산 백만배럴
boed	barrels of equivalent per day	일일 boe
BTU	British thermal unit	영미에서 사용되고 있는 피트, 파운드법에 의한 열량단위. 1파운드의 물을 1°F만큼 높이는데 소요되는 열량임. 1BTU = 1.055kJ = 0.252kcal
E&P	Exploration and Production	탐사 및 개발 부문. 석유 및 가스산업에서 상류부문(Upstream) 분야에 해당함.
Mcf	thousand cubic feet	1,000 입방피트 1 Mcf는 미국의 일반가정에서 조리/온수 등으로 4일동안 사용하는 가스량
Mcfe	energy equivalent of 1,000 cubic feet of natural gas	1Mcf의 천연가스에서 얻는 에너지. 일반적으로 원유1배럴은 열량기준 메탄가스 6Mcf와 같은 에너지를 낸다.
MMcf	million cubic feet	100만 입방피트
Tcf	Trillion cubic feet	1조 입방피트
상류부문 (Upstream)		석유 및 가스산업에서 유전을 탐사, 개발하고 생산하는 활동
중류부문 (Midstream)		송유관(Pipeline), 저장소(storage), 포집관 및 처리시설(gathering & processing assets)
하류부문		석유의 정제 및 마케팅에 관련된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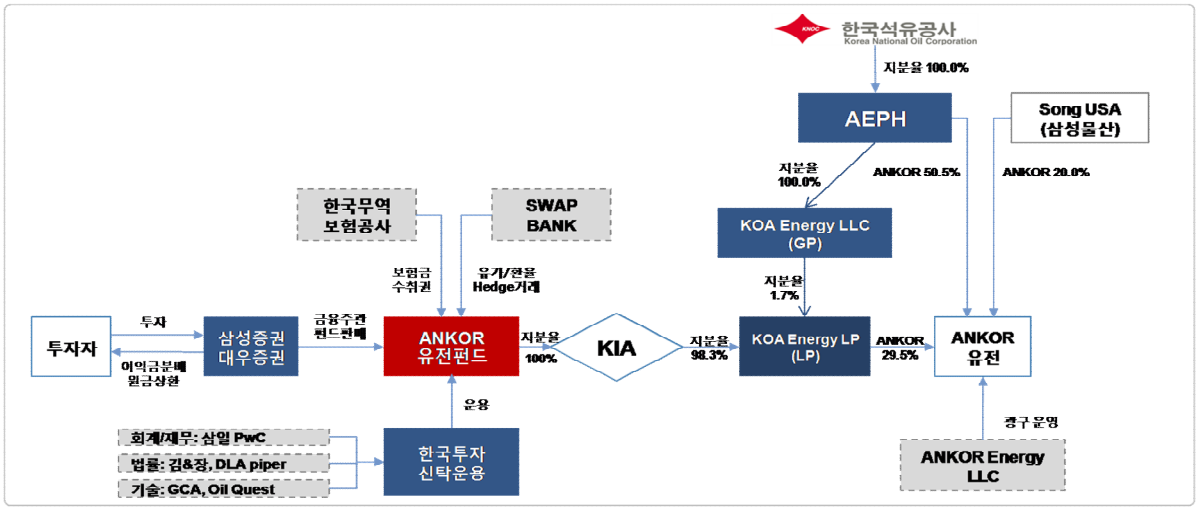
(Downstream)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본 투자회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KIA(Korea Investment ANKOR LLC)가 유한책임사원(지분 98.3%)으로 있는 파트너쉽(KOA Energy LP)은 한국석유공사의 100%자회사인 AEPH가 보유하고 있는 ANKOR 유전 지분 80% 중 36.875% (전체 ANKOR유전 지분의 29.5%에 해당함)를 인수할 예정입니다. 다만, 본 투자회사가 지급하는 매매대금은 한국석유공사와 집합투자업자가 체결한 "매매대금 결정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헤지(Hedge) 체결 유가를 고려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본 투자회사는 전체 ANKOR유전 지분의 29%를 양수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본 투자회사의 투자 집행 절차는 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루어 집니다.

① AEPH가 자신의 100% 자회사인 GP에 ANKOR 유전의 지분 29.5%를 현물 출자

② GP는 ANKOR 유전 지분 29.5% 중 0.5%를 LP에 현물 출자하고 나머지 지분 29%를 LP에 매각

③ 본 투자회사는 도관(Conduit)목적의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형태의 특수목적회사인 KIA(Korea Investment ANKOR LLC)를 설립

④ 본 투자회사는 Korea Investment ANKOR LLC의 지분 100%를 매입하는 대가로 현금출자를 하고, Korea Investment ANKOR LLC는 출자받은 금액으로 KOA Energy LP의 출자지분 중 98.3%(유한책임사원 지분)를 취득

1) 멕시코만의 지역적 특성

ANKOR 유전이 속한 미국 멕시코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다양한 원유 매장 Field와 높은 매장량을 보유한 미국내 주요 에너지 공급지역입니다.

미국 에너지국(Department of Energy) 산하 기관인 EIA(Energy Information Association, 미국 에너지 정보관리 협회) 및 BOEMRE(Bereau of Ocean Energy Management, Regulation and Enforcement, 미국 대양 에너지 관리, 규제, 집행국)에 따르면 멕시코만 지역은 2010년 기준 총 6,375개의 리스지역(Lease, 자원개발 허가지역)과 3,311개의 생산 플랫폼(Platform)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확인 가채매장량(P1) 기준, 미국 전체 확인 가채매장량의 14%인 약 44억 boe의 매장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09년 569.7mmbbl의 원유 및 2,450bcf의 천연가스를 생산, 미국 전체 유·가스 생산량의 26% 이상을 차지하는 등 멕시코만은 미국 에너지 공급원의 근간이 되는 지역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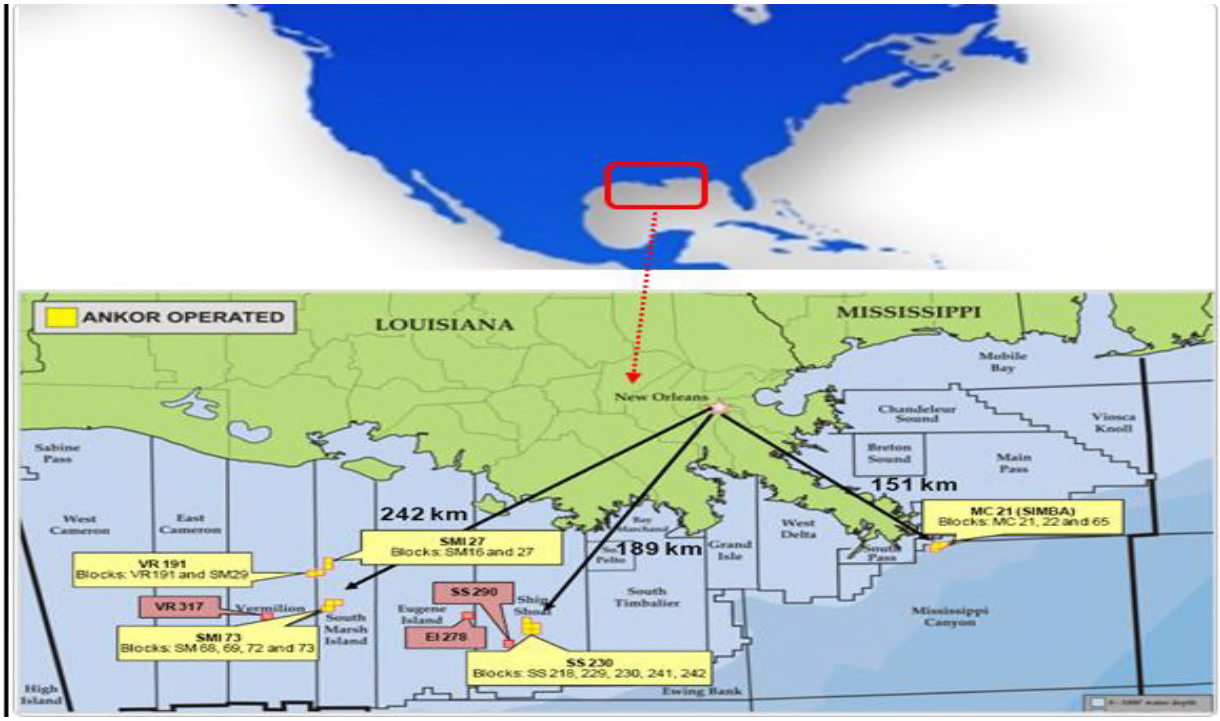
둘째, 지역적 안정성 및 우수한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운송 및 판매가 용이한 지역입니다.

멕시코만 지역은 원유 개발 및 생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전통적으로 가장 투자매력도가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미국의 성숙한 정치상황 하에 형성된 안정적인 법제도를 바탕으로 매력적인 재정 안정성에 기반한 생산 및 투자 장려정책를 추진하고 있으며 둘째, 선진화된 생산개발시설 및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구축하고 추가 탐사 및 개발을 통한 성장 기회가 추구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멕시코만 지역은 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원유 및 가스의 생산, 정제, 운송을 위한 다양한 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상(Offshore)에서 생산된 원유 및 가스는 Pipeline을 통해 육상(Onshore)으로 운송되어 미국 내 원유정제용량의 43%(총 7,572Mboed)를 차지하는 Gulf Coast의 정제시설을 통해 미국 각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2) ANKOR 유전 개요

ANKOR 유전은 세계최대 유전지역 중 한곳인 미국 멕시코만에 위치해 있으며, 한국석유공사와 삼성물산이 각각 100% 자회사인 ANKOR E&P Holdings 와 Samsung Oil & Gas USA (Song USA)를 통해서, 2008년 3월 Taylor Energy 社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생산 유전입니다.
2010년 6월 New Field 社로부터 SS 290의 광권을 추가로 인수하여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 기준 6개 유전 19개 리스 (16개 생산, 1개 개발, 2개 탐사)를 미국 현지의 운영자회사 (ANKOR Energy LLC)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자대상자산인 ANKOR 유전은 광구도와 위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루이지에나주 연안의 미국 멕시코만 천해(淺海)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ANKOR유전의 세부 리스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유전지역	리스내역	수심(ft)
생산단계	MC 21 (SIMBA)	MC 21, 22, 65	433 ~ 574
	SMI 73	SM 68, 69, 72, 73	125 ~ 132
	SS 230	SS 218, 229, 230, 241, 242	102 ~ 132
	VR 191	VR 191, SM 29	89 ~ 96
	SMI 27	SM 27, SM 16	73 ~ 79
	SMI 58	SM 69	125
개발단계	-	SS 290	217
탐사단계	-	VR 317	204
	-	EI 278	161

(주 1) 2011 년 3 월 기준, 출처 : 한국석유공사(KNOC)

(주 2) 리스내역 중 SM 69 는 유전지역 SMI 73 과 SMI 58, 2 개 지역에 공동으로 위치하여 있는 리스입니다

한편, 본 투자회사가 매입할 당시의 ANKOR유전의 매장량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원유(Mbbl)	천연가스(MMcf)	총계(Mboe)
Proved developed producing (확인 개발 가채매장량)		9,291	26,015	13,776
Proved developed	Behind-Pipe	6,070	16,789	8,965

non-producing(PDNP) (확인 개발 미생산 매장량)	Shut-in	304	646	416
Proved Undeveloped (확인 미개발 가채매장량)		1,348	736	1,475
Total proved reserves (총 확인 가채매장량, 최소 기대 매장량)		17,013	44,187	24,642
Probable reserves (추정 가채 매장량)		10,361	31,188	15,739
Possible reserves (가능 가채 매장량)		492	12,887	2,714
Total 3P reserves (최대 기대 매장량)		27,867	88,262	43,085

(주 1) 2011 년 1 월 1 일 기준, 출처 : William M cobb & Associates 2011 년 매장량 보고서

(주 2) Gas Shrinkage 및 Government and Overriding Loyalties 제외

(주 3) 전환계수 가정 : 5.8MMcf = 1 Mboe

용어설명

(출처 : 유전(가스)개발사업 모범공시기준(금융감독원) 및 기타자료)

1. 확인 가채매장량(Proved reserves)

- 지질학적·공학적 자료의 분석에 의해, 현재의 경제적 조건(Current Economic Conditions)·운영방법·정부규제상황을 고려할 때에, 이미 발견(Discovered)된 저류층으로부터 상업적(Commercial)으로 회수가능(Recoverable)할 것이 합리적으로 확실시되는 매장량이다. 합리적으로 확실시 된다는 것은 회수가능성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거나 또는 실제 회수될 매장량이 예측한 매장량이상일 확률이 9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확인 가채매장량은 개발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가. 확인 개발 가채매장량(Proved developed reserves)

- 기존 시추정에서 상업적으로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매장량으로, 1차 회수후 추가회수의 경우는 추가회수를 위해 필요한 장비가 설치완료되었거나, 설치를 위해 소요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개발로 분류된다.

나. 확인 개발 미생산 매장량(Proved Developed Non-Producing, PDNP)

1) Behind-pipe

- 기존 시추정에서 상업적으로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매장량으로, 평가 시점에 완결구간이 열려있지만 기계적 문제나 파이프라인 연결작업 등이 완료되어있지 않거나 시장여건이 불충분하여 생산하고 있지 않은 매장량을 말한다.

2) Shut-in

- 기존 시추정에서 상업적으로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매장량으로, 생산개시를 위해 추가적인 완결작업이 필요하거나 향후 재완결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다. 확인 미개발 가채매장량(Proved undeveloped reserves)

- 시추되지 않은 지역의 새로운 유정, 기존 저류층보다 더 깊게 파서 새로운 저류층까지 확대된 기존 유정, 매장량 회수를 위한 생산 또는 이동 설비 설치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필요하거나 기존 유정의 추가 생산을 위해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필요한 유정으로부터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확인 원유 가채매장량을 말한다.

2. 추정 가채매장량(Probable reserves)

지질학적·공학적 자료의 분석에 의해, 상업적으로 회수되지 않을 가능성보다 상업적으로 회수될 가능성이 큰 매장량이다. 즉, 실제 회수될 매장량이 예측한 매장량이상일 확률이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가능 가채매장량(Possible reserves)

지질학적·공학적 자료의 분석에 의해, 상업적 회수가능성이 추정 가채매장량보다 적은 매장량이다. 확률적으로는 실제 회수될 매장량이 예측한 매장량이상일 확률이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위험관리

본 투자회사는 다음과 같은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각각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요소	위험내용	관리방안
매장량/생산량 예측위험	- 예상 매장량과 실제 매장량의 차이로 발생 가능한 현금유입금액 감소위험 - 예상 생산량 및 시점과 실제 생산량 및 시점 간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현금유입금액 감소위험	- 매입전 세계적인 유전기술평가 회사인 Gaffney, Cline & Associates(이하 "GCA")의 기술성 평가 용역 및 오일 퀘스트의 기술자문 수행을 통해 예측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였음
원유가격 변동위험	- 유가 하락에 따른 현금유입금액 감소위험	- 예상 원유 생산량의 75% 수준에 대해 SWAP 및 Option 거래를 통해 헤지(Hedge)할 예정임(매입기준일로부터 7년)
가스가격 위험	- 가스가격 하락에 따른 현금유입금액 감소 위험	- 최근 10년간 가스가격 변화 추이를 분석하면, 최근 가격은 최저점으로 완만한 상승세 예상됨 - 향후 가격 상승을 예상하여 헤지

		(Hedge)를 하지 않음
환율변동 위험	- 원/달러 환율 변동으로 원화 가치수익률 하락 위험	- 예상된 생산량을 토대로 산출한 현금(USD) 유입액 및 전체 투자금의 50%~90% 수준에 대해 파생상품(FWD)거래를 통한 환율 변동 위험 축소 (매입기준일로부터 7년)
투자원금 손실위험	- 천재지변 및 유전 소재 지역의 정세 급변에 따른 사업불능 위험 EOD(Event Of Default) 발생 - 유가/가스가격 폭락으로 인한 현금유입 감소 - 실제 생산량이 예상치 하회	- 해외자원개발펀드 보험 가입을 통해 사업위험 일정부분 상쇄(단, 보험기간은 10년임) - 외화기준 지분매입원금에 대한 일부 보존 - 최초 헤지(Hedge) 물량에 미달하는 생산량 부분에 대한 헤지(Hedge) 관련 손실은 부보 대상에서 제외됨
회수위험	- 적정시점에서의 투자원금 회수 위험 - 자금 유동성 확보 위험	- 초기투자 후, 약 6년 이후 명목원금 회수 가능 - 한국거래소에 펀드 상장 후 유동성(Liquidity) 부여 - 펀드 만기 시점에 지분 매각을 통해 회수 * 생산량 감소, 헤지(Hedge)결과 등에 따라 회수기간이 변동가능
판매위험	- 판매처 확보 및 판매라인 변경에 따른 적시 판매 불능 위험	- 현재 원유는 BP p.l.c사(이하, “BP”), Gas는 삼성물산이 생산량 전량에 대해 판매대행계약(Marketing agreement)을 체결하여 Off-taker(생산물 구매자)로서 판매를 대행하고 있음
복구비용 초과위험	- 펀드 기간 종료시, 유정 복구 비용이 부족할 위험	- AEPH와 협의된 수준에서 매년복구비 사전 적립 - 펀드 기간 종료시, 유전의 잔여 NPV가 (-)일 경우 적립된 복구비범위내에서 AEPH에 지급
정부위험	- 유전 소재 지역의 정치, 사회적 위험 - 유전 소재 국가 신용도, 계약 안정성	- 해외자원개발펀드 보험 가입을 통해 국가위험 일정부분 상쇄 가능(단, 보험기간은 10년임)
법률/Tax 위험	- 각종 계약서 내용 및 투자 대상국의 법률 및 Tax 등으로 인해 사업 진행상 어려움에 처할 위험	- 현지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을 통해 최적의 거래 구조 설계 및 이를 통한 Tax 관리

비운영권자 위험	- 유전의 비운영권자로서, 합자 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美 SPC에 수동적으로 투자함으로 인한 위험	- 위 파트너쉽은 자원관련전문성을 보유한 한국석유공사가 100% 출자한 AEPH의 100% 자회사 KOA Energy LLC(GP)가 운영할 예정 - 거래 관련 계약(Transaction Agreements) 체결 및 한국석유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비운영권자위험 경감 예정

※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 비교지수 미지정 사유

유전 투자의 경우 각각의 거래가 개별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양 당사자 간에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신고서 제출시점에서 비교 또는 참고지수나 수익률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투자 의사결정시 한층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장상황,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등에 따라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상기 투자전략은 운용상황,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수익구조

본 투자회사는 일반공모를 통해 모집한 자금을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및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한국석유공사의 100% 자회사 AEPH가 보유하고 있는 ANKOR유전의 지분에 투자하고, 해당 유전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을 BP 및 삼성물산과 맺은 판매대행계약(Marketing Agreement)을 통해 판매하게 됩니다.

이러한 판매를 통한 매출에 대하여 GP는 제반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LP에게 분배하며 투자회사는 본 LP에 투자한 투자회사의 100%자회사인 KIA를 통해 분배받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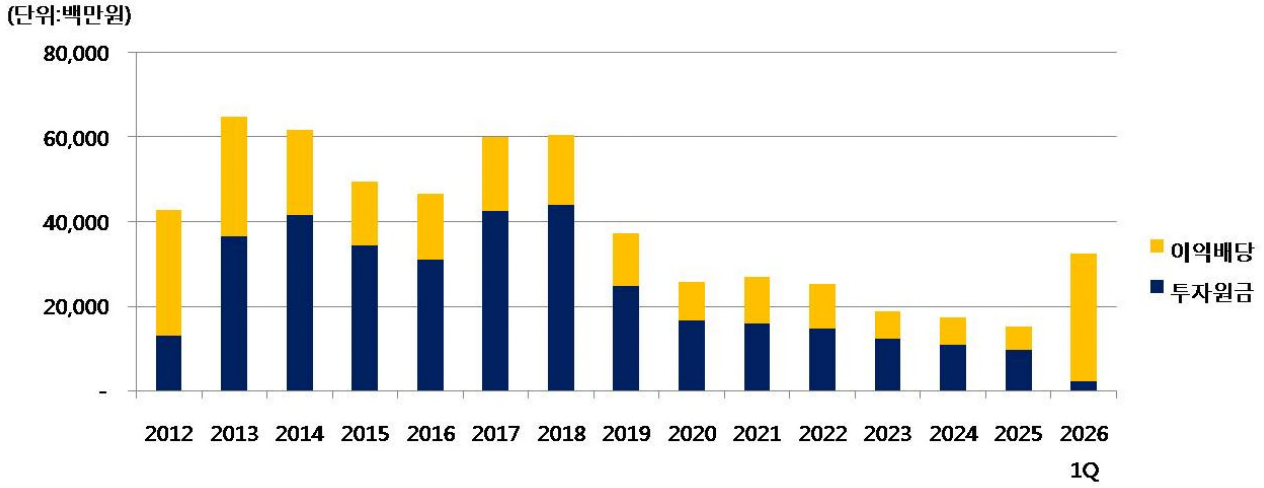
이렇게 분배받은 금액에 대하여 본 투자회사는 GP의 비용 청구 및 헤지(Hedge) 결제 등에 대비한 일정 규모의 유보금(Reserve)을 제외한 전액을 매 결산일마다 주주에게 분배할 계획입니다.

매 결산일 주주에게 분배되는 금액 중 유전의 생산량 감퇴곡선(Decline Curve)을 반영한 원금상환 스케줄에 따른 예상금액은 이익초과분배금(투자원금)의 형태로 분배되며, 동 예상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익분배금(배당)의 형태로 분배될 계획입니다. 만일 어느 결산기에 발생한 회사의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원금상환스케줄에 따른 예상금액을 하회하면, 해당 결산기에는 분배 가능한 금액만이 이익초과분배금(투자원금)으로 지급되고, 부족한 투자원금은 다음 결산기로 이월되어 분배되며, 해당 결산기의 이익분배금(배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그래프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목적으로 기재하는 것이며, 동 그래프에 사용한 데

이터는 가상의 예시용이므로 실제 혹은 미래의 실제 현금흐름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원금 및 이익금 배당 스케줄 추정(예시)]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1Q
투자원금	13,055	36,620	41,464	34,472	31,077	42,626	44,079	24,746	16,511	15,751	14,630	12,359	10,802	9,722	2,086
이익배당	29,729	28,231	20,287	15,049	15,574	17,523	16,456	12,438	9,291	11,170	10,548	6,425	6,564	5,425	30,281
총액	42,784	64,851	61,750	49,521	46,651	60,148	60,535	37,185	25,802	26,921	25,178	18,784	17,366	15,147	32,367

출처) 삼일 PwC, 단위:백만원

(주 1) 예상 원유 생산량의 75% 수준에 대해 매입기준일로부터 7 년간 헤지(Hedge) 가정
예상 원유 생산량의 51% 수준 : $ 90/bbl (Short FWD Strike) + $180/bbl (Long Call Option)
예상 원유 생산량의 24% 수준 : $ 75/bbl (Long Put Option)

(주 2) 펀드보유 ANKOR 광구 지분 29% 기준

(주 3) 필요 유보금(복구비사전 적립금, 헤지 증거금)제외 전액 배당 가정, 2025 년은 복구비 사전 적립금 포함하여 배당

한편, ANKOR유전 운영과정 중 CAPEX(자본지출: 생산관련 비용) 및 OPEX(업무지출: 운영관련 비용)가 발생할 경우에는 GP의 비용 청구 방식을 통해 집행 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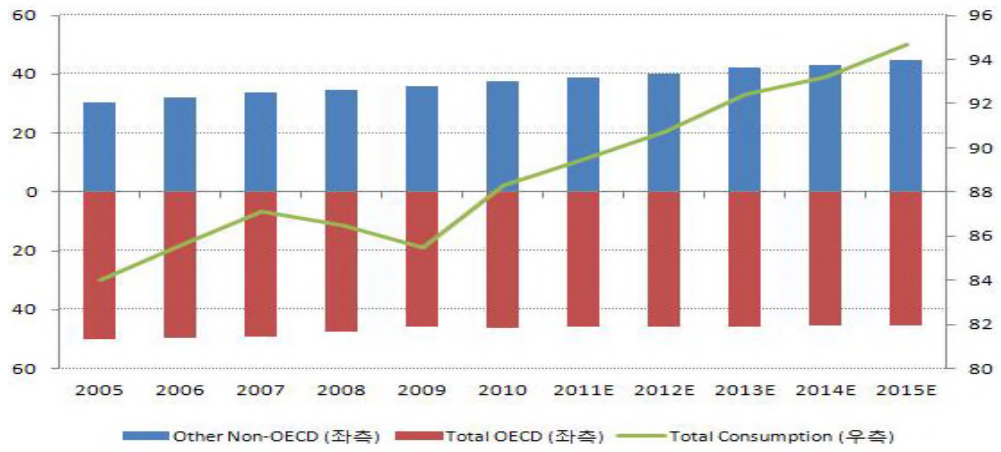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본 투자회사 상품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본 투자회사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주가하락위험	관계법령은 본 투자회사와 같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원금 및 이익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투자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본 투자회사 및 판매회사를 포함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본 건 일반공모는 모집설립을 위한 공모에 준하여 주당 공모가액은 모집총액과 발행주수를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장 이후 금리 변동, 주식시장 수급 상황 및 국내외 경제, 정치, 사회적인 사건 등 외부 요인과 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 환율 등 본 투자회사 관련 지표에 영향을 받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본 투자회사의 주가가 공모가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금번 공모에서 본 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는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주가하락 또는 상승에도 불구하고 약정된 수입분배는 상장시 모집가액 5,000원을 기준으로 이루어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투자회사는 "제2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에 의해 본 투자회사 1주당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공시할 예정이지만, 본 기준가격과 주가는 향후 본 투자회사 가치에 대한 시장 참가자의 판단에 따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본 투자회사 및 판매회사를 포함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원본손실위험	본 투자회사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는 유가, 가스가격, 환율, 생산량 등이 있으며 동 기초변수들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원본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본 투자회사는 유가 및 원/달러 환율 변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 감소 위험을 장외파생상품을 통해 일부 헤지(Hedge)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가/천연가스 가격 폭락으로 인해 본 투자회사의 현금유입액이 감소하거나, 실제 생산량이 예상치를 하회하여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위험에 대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을 통해 일부 위험을 헤지(Hedge)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은 10년입니다). 그러나 이는 원금 및 이익금 전부를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 발생 위험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 및 보험금은 USD 기준으로 결제되므로 보험금 수령시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최초 헤지(Hedge) 물량에 미달하는 생산량 부분에 대한 헤지(Hedge) 관련 손실은 펀드보험 부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특수위험, 헤지(Hedge)계약체결·정산위험, 헤지(Hedge)손실위험 및 보험 관련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투자회사의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모든 투자자들은 다른 주식 관련 투자

	와 마찬가지로 회사 주식의 가치가 항상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본 투자회사의 투자 목적이 정확히 달성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음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투자금액의 손실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며, 본 투자회사를 포함한 어떤 관련자도 투자자의 투자원금 또는 수익을 보장하지 아니하며,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을 주지하여야 합니다.
상품시장 (Commodity Market) 변동에 따른 위험	가) 원유시장 본 투자회사는 원유를 판매하여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게 됩니다. 만일 국제시장에서 유가가 하락할 경우 이로 인해 현금유입금액이 감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소비측면에서 원유 수요는 GDP 성장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최근 국가채무로 인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미국과 유럽이 속한 OECD 회원국들의 경우 무역수지 적자의 확대에 따른 국가 채무 증가로 경기침체가 본격화 되면서 원유 수요는 정체되고 있습니다. 반면, BRICs로 대변되는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자국 산업의 고도화 과정에서 원유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도국 수요 증가가 OECD국가들의 수요 위축을 상쇄하며 전체적인 원유 수요를 견인하여 향후 원유 수요는 증가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OECD 국가 대비 Non-OECD 국가의 원유소비 추이 및 전망] (단위 : mmbbl/day)  출처) Deutsche Bank, 2011 한편, 공급 측면에서 유가는 주요 원유생산처인 중동 및 아프리카 연안 지역의 정치적 불안과 원유 시추범위 확대 및 자원 고갈로 인한 시추비용 상승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최근 상황을 살펴보면, 2010년 말, 튀니지에서 시작된 민주화 운동인 이른바 재스민혁명으로 OPEC(석유수출국기구)내 8위 산유국인 리비아의 민족간 내분이 발생하면서 시작된 공급차질 우려가 카다피의 축출 이후에도 쉽게 사리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러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소요는 인근 아라비아 반도 국가들로 전이될 가능성이 여전하여 공급 차질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기 설명과 같이 원유 가격은 주요 국가의 GDP 성장율 및 산유국의 정치 안정도와 같은 요소뿐만 아니라 자연 재해(예. 허리케인 및 지진)로 인한 원유 생산 시설

의 손상, 원유 개발 및 생산 비용의 급격한 변동(예. 신기술 개발) 등의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듯, 원유는 수요와 공급 모두에 대해 불가항력적인 변수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매우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2000년 이후 유가(WTI,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 원유 가격의 변동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유가(WTI) 가격 추이]

(단위 : USD/bbl)



출처) 블룸버그(Bloomberg), (2001.01 ~ 2011.11)

이러한 유가의 변동성 때문에 본 투자회사는 예상 원유 생산량의 약 75%에 대하여 가격을 일정수준에 고정시키는 파생상품거래를 통하여 원유 판매가격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파생상품 상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헤지 구조	유가 스왑 매도 + 外가격 콜옵션 매수 그리고 풋옵션 매수
헤지 기간	매입기준일부터 7년
헤지 물량 (Notional Quantity)	헤지 기간 내 예상 생산량의 75% 수준
행사가격	예상 생산량의 51% 수준 : $ 90/bbl (Short FWD Strike) + $180/bbl (Long Call Option)

	예상 생산량의 24% 수준 : $ 75/bbl (Long Put Option)

주) 헤지(Hedge) 물량 및 행사가격은 추후 계약에 따라 변동이 가능함

구체적으로는 원유 가격이 FWD Sell 행사가격보다 낮을 때 헤지(Hedge) 상대방으로부터 행사가격 이하 하락분을 수령하게 되고, 원유 가격이 FWD Sell 행사가격보다 높을 때는 헤지(Hedge) 상대방에게 행사가격 이상 상승분을 지급하게 됩니다. 단, 外가격옵션 (행사가격 $180/bbl 수준)을 구입하여 행사가격 이상 상승분에 대해서는 헤지(Hedge) 상대방에게 지급하지 않음으로서 유가 급등시 헤지(Hedge) 미결제 위험을 축소하게 됩니다.

한편, 헤지(Hedge) 거래를 통해 원유 가격 변동 위험을 경감할 수 있으나 i) 실제 판매 유가와 헤지(Hedge) 기준 유가인 WTI 가격의 차이, ii) 균등하지 않은 일 생산량을 기준으로 평균한 실제 판매 유가와 3개월 WTI 근월물 선물 가격의 평균 가격의 차이 및 iii) 실제 판매량과 헤지(Hedge) 계약 물량과의 차이로 인해 헤지(Hedge) 효과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원유 가격 전망]

(단위 : USD/bbl)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95.00	108.00	113.00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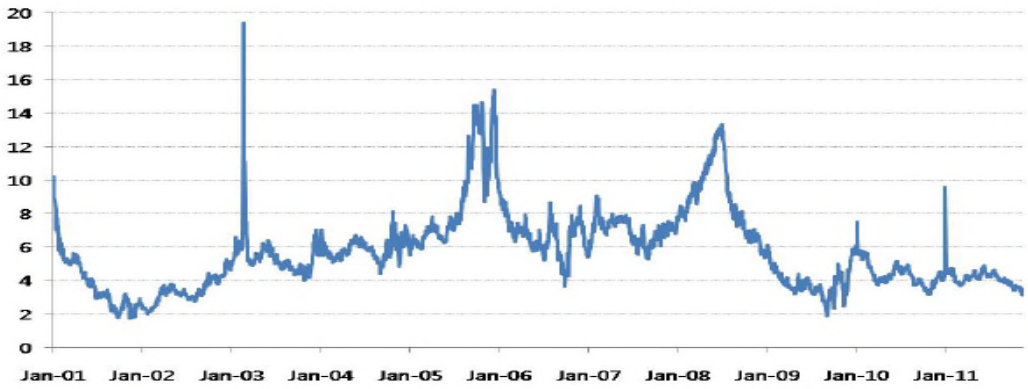
(출처: Deutsche Bank, 2011)

나)천연가스 시장

본 투자회사는 천연가스를 판매하여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게 됩니다. 만일 국제시장에서 가스가격이 하락할 경우 이로 인해 현금유입금액이 감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은 원유와 마찬가지로 주요 국가의 GDP 성장율 및 산유국의 정치 안정도와 같은 요소 뿐만 아니라 자연 재해(예를 들어 허리케인 및 지진)로 인한 생산시설의 손상 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천연가스의 특성상 난방 용도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계절적 변동성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 추이]

(단위 : USD/MMBtu)



출처) 블룸버그(Bloomberg), (2001.01 ~ 2011.11)

이에 대해 주요 투자은행은 현재의 가격 추세가 천연가스의 주요 소비처인 미국 및 유럽의 경기 침체 및 시추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현재의 가격수준을 역사적 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투자회사는 시추기술의 발전에 따른 공급 증대에도 불구하고 향후 동 지역 국가들의 경기가 회복세로 접어들 것이라는 예측에 맞추어 가격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헤지(Hedge)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천연가스 가격 전망]

(단위 : USD/MMBtu)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4.25	5.00	5.50	5.50

(출처: Goldman Sachs, 2011)

환율변동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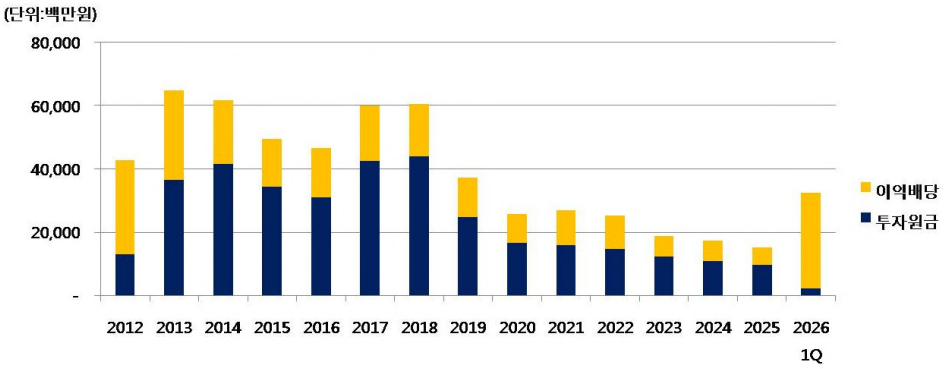
본 투자회사는 미국 멕시코만에 위치한 ANKOR유전에 투자하며 대상 유전에서 생산되는 원유 및 천연가스의 매출로부터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을 통해 원금과 수익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유전 소재지의 특성상 본 투자회사는 외국 통화(미국 달러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하며, 미래 발생할 현금흐름 또한 외국 통화(미국 달러화)로 표시됩니다. 이에 따라 본 투자회사가 보유하게 될 자산 가치 및 미래 현금흐름은 원/달러환율 변동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화 가치 수익률이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투자회사는 동 위험을 헤지(Hedge)하기 위해 본 투자회사로 유입될 예상 현금흐름 및 전체 투자금의 50% ~ 90%수준으로 달러 선도 계약 등 장외 파생상품 거래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구분	내용
헤지(Hedge) 상품	FWD Sell
헤지(Hedge) 기간	매입기준일로부터 7년
헤지(Hedge) 물량(Notional Quantity)	예상 외화 유입액 및 전체 투자금의 50%~90% 수준

	<table><tr><td>행사가격</td><td>KRW 1,165/USD</td></tr></table> 주) 헤지(Hedge) 물량 및 행사가격은 추후 계약에 따라 변동이 가능함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상 자산에서 미래 발생하게 될 현금흐름은 매 3개월 단위마다 정산되기 때문에 본 투자회사로 유입될 미래 현금흐름 또한 매 3개월 단위로 유입되는 스케줄을 감안하여, 파생상품 계약 체결시 특정 결재 기준일의 환율을 기준으로 3개월 단위로 정산할 예정입니다. (투자금에 대한 헤지 부분은 헤지 계약의 만기 또는 필요시 만기 이전에 정산 예정). 헤지(Hedge) 거래를 통해 환율 변동 위험을 경감할 수 있으나, 실제 유입 현금액과 헤지(Hedge) 계약 물량과의 차이로 인해 헤지(Hedge) 효과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기대출(콜론) 및 예금잔액 위험	이 투자회사에서 실행하는 금융기관 간 초단기자금 대출(이하 콜론이라 함)은 대출을 받는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의 현금 부족 및 부도 등으로 인해 만기일에 자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환매연기에 따른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자금 미상환에 따른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회사 내의 현금 중 자산에 투자되지 않는 잔액은 신탁회사에 예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탁회사(은행, 한국증권금융 등)의 현금 부족 및 부도로 인해 당해 예금잔액은 물론 이자수령 등의 차질로 인해 투자자는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위험	이 투자회사에서 투자하는 정기예금과 같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동성 자산의 경우 시장매각이 제한되고, 중도해지 시 약정이율의 축소 적용 등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주는 환매연기로 기회비용이 발생함과 동시에 약정이율 축소 적용 등으로 인해 수익이 당초 기대했던 수익보다 적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위험	이 투자회사는 환율변동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거래 또는 통화스왑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상대방 위험을 부담하며 거래상대방의 거래불이행 발생시 미정산 수익을 상실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환율변동 제거 효과가 사라져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시 계약조건에 의해 현재환율이 계약환율 보다 급격히 상승할 경우 계약이 부득이 조기에 종료되어 환율변동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가능하며, 이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매장량 및 생산량 예측 위험	본 투자회사는 ANKOR유전의 매장량을 예측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공사(KNOC)가 제공한 ANKOR 유전의 원유 및 천연가스 등에 대한 매장량 평가 자료 및 생산 계획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매장량 및 생산량 예측의 경우 예측 방법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예측된 생산량과 실제 생산량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당초 예상한 현금유입액 보다 실제 현금유입액이 감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의 그래프는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목적으로 기재하는 것이며, 동 그래프에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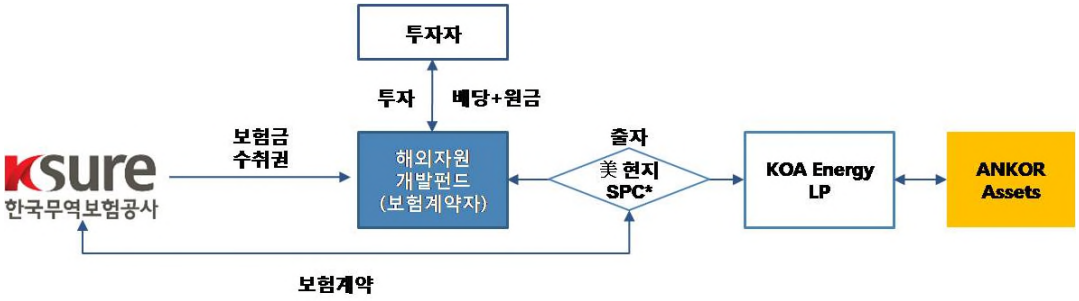
	한 데이터는 예시용이므로 실제 혹은 미래의 실제 현금흐름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1Q \| \|---\|---\|---\|---\|---\|---\|---\|---\|---\|---\|---\|---\|---\|---\|---\| \| 투자원금 \| 13,055 \| 36,620 \| 41,464 \| 34,472 \| 31,077 \| 42,626 \| 44,079 \| 24,746 \| 16,511 \| 15,751 \| 14,630 \| 12,359 \| 10,802 \| 9,722 \| 2,086 \| \| 이익배당 \| 29,729 \| 28,231 \| 20,287 \| 15,049 \| 15,574 \| 17,523 \| 16,456 \| 12,438 \| 9,291 \| 11,170 \| 10,548 \| 6,425 \| 6,564 \| 5,425 \| 30,281 \| \| 총액 \| 42,784 \| 64,851 \| 61,750 \| 49,521 \| 46,651 \| 60,148 \| 60,535 \| 37,185 \| 25,802 \| 26,921 \| 25,178 \| 18,784 \| 17,366 \| 15,147 \| 32,367 \| 출처) 삼일 PwC, 단위:백만원 (주 1) 예상 원유 생산량의 75% 수준에 대해 매입기준일로부터 7 년간 헤지(Hedge) 가정 예상 원유 생산량의 51% 수준 : $ 90/bbl (Short FWD Strike) + $180/bbl (Long Call Option) 예상 원유 생산량의 24% 수준 : $ 75/bbl (Long Put Option) (주 2) 펀드보유 ANKOR 광구 지분 29% 기준 (주 3) 필요 유보금(복구비사전 적립금, 헤지 증거금)제외 전액 배당 가정, 2025 년은 복구비 사전 적립금 포함하여 배당 본 투자회사는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총 3차례에 걸쳐 매장량 및 생산량 예측 위험을 검증하였습니다. 우선, 세계적인 유전기술평가사인 William M. Cobb & Associates(WMCA)를 자문회사로 선정하여 총7주간에 걸쳐 실사 및 기술평가, 평가보고 등의 자문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나온 자료에 대하여 세계 유수의 유전 평가기관인 Wood Mackenzie (WM)로부터 가치 산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Global 매장량 평가기관인 Gaffney, Cline & Associates (GCA)의 기술성 평가용역 검토 및 자문을 받아 가치산정 결과를 검증하여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매장량 및 생산량 예측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 매장량 및 생산량과 실제 매장량 및 생산량 간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익분배금(배당) 및 이익초과분배금(투자원금)의 지급시기가 늦어지거나 이익초과분배금(투자원금)의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격 프리미엄 상실 위험	본 투자회사는 투자한 유전이 위치한 미국 멕시코만 지역에서 거래되는 원유인 LLS(Light Louisiana Sweet) 및 HLS(Heavy Louisiana Sweet)가 WTI(West Texas Intermediate, Cushing 지역 지표가격)가격 대비 갖고 있는 가격 프리미엄을 향후 수익 추정에 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격 프리미엄은 캐나다와 미국을 연결하는 Keystone Pipeline 증설로 인한 Cushing 지역의 재고부담 가중, 미국 남부 주요 석유정제 집중

	지역(Houston & Port Arthur)과의 접근성 등의 이유에서 발생한 것으로 2013년 초로 예정된 파이프라인 증설(Canada Keystone Pipeline 등) 등 Cushing 지역의 재고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이러한 프리미엄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따라 본 투자회사의 가치평가(Valuation)시 현 상황이 2012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Cushing 지역의 재고 해소가 예상 보다 빨리 이루어지거나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원인에 의해 이러한 가격 프리미엄은 언제든지 사라지거나 할인 요인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펀드의 예상현금 유입액은 감소될 것입니다.
배당감소 위험	본 투자회사가 100% 출자한 KIA(Korea Investment ANKOR LLC)는 한국석유공사의 100% 자회사 AEPH로부터 ANKOR유전 지분 29.5%를 양수한 파트너쉽(KOA Energy LP)의 유한책임사원(Closing 당시 98.3% 지분)으로서, CAPEX(자본지출: 생산관련 비용)와 OPEX(업무지출: 운영관련 비용) 등을 이유로 무한책임사원(GP)인 KOA Energy LLC가 비용 청구를 할 경우, 그 지분에 비례하여 파트너십에 비용 납입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 투자회사는 CAPEX와 OPEX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이러한 비용 청구에 응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향후 수령할 수익분배금에서 이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 예상된 현금유입액 보다 실제 현금유입액이 감소할 위험이 있으며 그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헤지(Hedge) 계약 체결·정산 위험	신고서 작성일 현재 집합투자업자는 한국석유공사와 “ANKOR유전” 매매거래를 위해 매매관련 합의서(이하 “합의서”)를 체결한 상태이며, 이에 본 투자회사가 지급하는 매매대금은 거래 기준 유가($97/bbl)와 조정 유가("실제 헤지(Hedge) 체결 유가" + $1/bbl)의 비용을 고려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동 과정에서 시장 상황(유가의 급변 등) 등의 이유로 헤지(Hedge) 유가 및 목표 헤지 물량이 당초의 계획대로 이행(체결)되지 못할 경우 매매 및 출자계약서(Amended and Restated Sales and Contribution Agreement)의 체결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배금의 수령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서에 정한 시한(합의에 의해 연장된 시한 포함)까지 헤지(Hedge)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본 투자회사는 투자를 집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투자회사가 투자를 집행하지 않을 경우 투자원금에 대하여 납입일로부터의 운용이자를 가산한 금액, 제반 보수 및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투자자들에게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한편, 본 투자회사는 투자대상자산이 노출되어 있는 원유의 시장가격 변동(가격하락) 위험 및 환율하락(원화절상) 위험을 축소하기 위하여 스왑뱅크와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헤지(Hedge) 계약을 위한 여신 한도의 확보 및 헤지(Hedge) 거래의 결제/정산 등을 담보하기 위해, 본 투자회사는 해외자원개발펀드 보험의 수익권 및 본 투자회사가 직·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스왑 뱅크에 대해 포괄적으로 선순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헤지(Hedge) 계약을 위한 여신 한도의 확보를 위해 향후 생산량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헤지(Hedge) 계약이 조기 종료될 수 있는 조항을 헤지(Hedge) 계약 내용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대상 자산으로부터의 수익은 헤지(Hedge)거래의 결제를 위해 일차적으로 사용한 후 투자원금 및 이익분배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실제 원유 생산량이 예상보다 감소할 경우, 회사의 유동성 관리를 위하여 수익 중 일정부분이 회사내 유보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실제 현금흐름은 예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회사내 유보를 못 하거나 생산량이 극단적으로 감소하여 헤지(Hedge) 거래 결제가 불가능할 경우, 헤지(Hedge)계약이 조기에 종료되어 투자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본 투자회사는 헤지(Hedge) 계약이 조기에 종료될 경우, 투자대상자산의 매각 또는 본 투자회사가 가입한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으로 손실의 일정부분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헤지(Hedge)거래 종료와 관련하여 정산 금액이 부족한 경우 자산 매각대금 또는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헤지(Hedge) 계약의 종료에 따른 정산 금액으로 일차적으로 사용되어,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헤지(Hedge) 거래가 종결된 사유가 한국무역보험공사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의 부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자산 매각을 통해서 헤지(Hedge) 정산이 이루어짐에 따라 보험금을 통해 정산하는 경우보다 추가적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헤지(Hedge) 손실 위험	본 투자회사가 투자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로 인해 헤지 정산금 미결제 상황이 발생하여 계약 당시 수령하기로 한 금액을 수령받지 못할 경우 본 투자회사에서 추구하는 투자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상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파생상품 그 자체에 투자되는 금액보다도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투자원금의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헤지(Hedge)계약시 예상한 규모(Notional Quantity)와 실제 규모(실제 생산량 또는 실제 USD 유입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예상한 헤지(Hedge)효과가 기대와 다를 수 있으며, 기타 예측 불가한 상황 발생시 파생상품 거래에서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 관련 위험	본 투자회사는 비상위험, 신용위험 또는 사업위험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의8 및 동 시행령 제12조의7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은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자원개발펀드')가 석유, 가스, 철 등 해외자원의 탐사·개발·생산 사업에 투자하여 비상위험, 신용위험 또는 사업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액의 일부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구체적인 보험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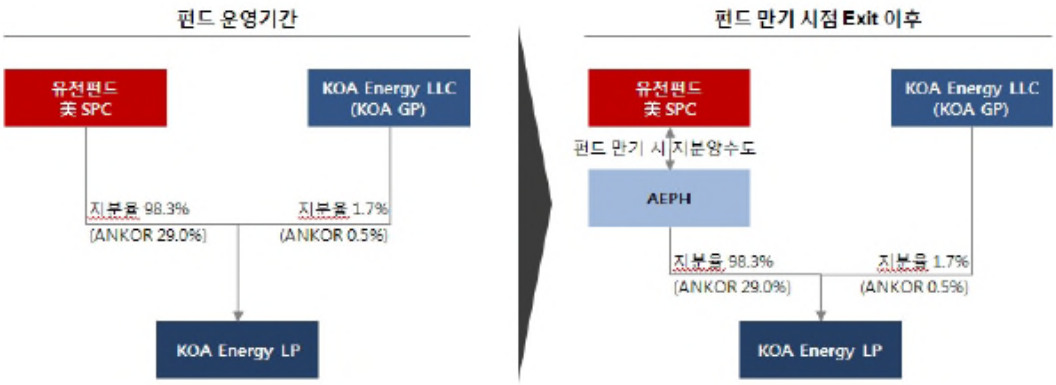


주1) 美 현지 SPC명: Korea Investment ANKOR LLC

보험가입시 본 투자회사는 보험금을 일시납하고, 이후 보험계약상 명기된 손실 발생시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

한편, 본 투자회사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맺은 보험계약의 세부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담보위험	- 비상위험: 피투자국의 수용, 전쟁, 혁명, 사업권침해, 송금제한 등 - 신용위험: 피보험투자상대방(차주)의 파산, 채무불이행 - 사업위험: 투자만료시 원금손실 등(유가, 생산량 위험이 포함됨)
보상손실	- 담보위험의 발생으로 주식 등의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 - 단, 최초 헤지(Hedge) 물량에 미달하는 생산량 부분에 대한 헤지(Hedge) 관련 손실은 부보 대상에서 제외됨
보험가액	외화기준 취득대가(원금)
자기책임 부담금	보험가액 × 10%
인수가액	보험가액 - 자기책임부담금
부보율	100%
보험금액	인수가액 × 부보율
부보통화	USD
보험기간	10년

	보험금 지급 시기 및 금액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심사 결과 결정되며,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험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으로 실제생산량이 없어 현금흐름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동 보험으로 회사가 입은 손실의 일정부분을 회수하더라도 보험금의 회수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원유가격 및 환율의 헤지(Hedge)를 정산하게되어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스왑뱅크와의 헤지(Hedge)정산을 위해 일차적으로 사용되며, 잔여 보험금은 금융기관 등의 차입금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 스왑뱅크의 요구 조건이 변경될수도 있으며 이 경우 보험금의 사용순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헤지(Hedge) 대금 미결제 등으로 인한 헤지(Hedge) 거래 조기 종료시 보험금 지급 여부는 상기의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심사 결과에 의해 확정됩니다. 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첨1-보상손실과 관련한 보험 약관 및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수위험	본 투자회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에 의해 설립된 해외자원개발 투자회사로서 100% 자회사인 KIA(Korea Investment ANKOR LLC)를 통해 파트너쉽(KOA Energy LP)의 유한책임사원 지분 98.3% (전체 ANKOR유전 지분의 29% 상당)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본 투자회사는 동법 제14조에 의해 존립기간 중 당해 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운용기간 중 투자자는 본 주식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도하거나 개별 매수자와의 장외 거래를 통해 매도하는 것 이외에 투자원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한편, 본 투자회사가 KIA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파트너쉽의 유한책임사원 지분은 2025년 말에 원매각자인 ANKOR E&P Holdings에 USD 1에 매각 후 투자회사 청산을 통해 투자자들이 Exit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한 투자회사 운영 기간 대비 만기 시점의 소유권 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tr><td>운영(Operation) 위험</td><td>대상 자산은 한국석유공사와 삼성물산 간에 체결한 운영계약서(Operating Agreement)에 근거하여 ANKOR Energy LLC(舊 Taylor Energy LLC)이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설립일시</td><td>2008년 5월</td></tr>
<tr><td>법적형태</td><td>Limited Liability Company</td></tr>
<tr><td>주주</td><td>ANKOR E&P Holdings (80%) & Song USA (20%)</td></tr>
<tr><td>직원수</td><td>・총 126명 - 해상: 66명 - 사무실: 60명
<table>
<tr><th>구분</th><th>인원수</th></tr>
<tr><td>1년 미만 근무</td><td>9</td></tr>
<tr><td>1~3년 근무</td><td>30</td></tr>
<tr><td>3~5년 근무</td><td>8</td></tr>
<tr><td>5~10년 근무</td><td>31</td></tr>
<tr><td>10~15년 근무</td><td>18</td></tr>
<tr><td>15년 초과 근무</td><td>30</td></tr>
<tr><td>합 계</td><td>126</td></tr>
</table></td></tr>
<tr><td>운영형태</td><td>・Operating service provider
- 보유자산 없음
- 생산물 판매수입 주주에게 직접 귀속
- 광구 운영비용을 주주에게 비용 청구로 조달/집행</td></tr>
<tr><td>운용자산</td><td>・해상 ANKOR 생산 및 개발/탐사자산 운영
・Alabama州 육상 Old Home 유전 운영
- ANKOR E&P Holdings: 23.375%
- STX: 23.375%
- 비운영권자: 53.25%</td></tr>
</table>

현재 ANKOR Energy LLC의 경영진의 2011년 기준 미국 멕시코만 지역 유전 개발 경력합은 총 276년이며 해당 유전 운영으로 한정할 경우 총 109년입니다. 전체 인원의 63%가 5년 이상 근속한 숙련 인원들이며, Senior Management 9명의 평균적인 산업 종사 경력도 30년 이상인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탐사 광구 3개를 시추하여 전부 발견에 성공하였고, 개발 광구 16개를 개발하여 이 중 15개에 대해 상업성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을 정도로 유전 운영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투자회사가 투자하게 될 사업의 운영과 관련한 제반 위험들은 상기와 같이 유전 운영의 전문성이 풍부한 ANKOR Energy LLC의 운영을 통해서 적절하게 제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2-운영계약서(Operating Agreement)]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판매 위험</td><td>본 투자회사가 투자한 ANKOR 유전은 생산되는 원유 및 천연가스에 대해 판매대행계약(Marketing Agreement)을 통하여 BP 및 삼성물산을 Off-taker(생산물 구매자)로 하</td></tr>
</table>

<table>
<tr><td></td><td>여 일괄 판매합니다. 원유의 경우 전 생산량을 BP에게 WTI 지수에 연동한 월평균 가격에 따라 판매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가격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tr><th>구분</th><th>내용</th></tr><tr><td>원유가격</td><td>(Calendar NYMEX + NYMEX Roll) + (LLS/WTI Differentia)</td></tr><tr><td>구성요소</td><td>・Calendar NYMEX :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되는 "Light Sweet Crude Oil"의 최근월물의 일일정산가격의 월 평균 가격
・ NYMEX Roll : (최근월물 평균가격-근월물 평균가격) * 0.6667 + (최근월물 평균가격-차근월물 평균가격) * 0.3333
・ LLS/WTI Differential : St. James 지역에서 거래되는 LLS의 평균 호가와 Cushing 지역에서 거래되는 WTI의 평균 호가의 차이의 평균</td></tr></table>
가스의 경우 전 생산량을 삼성물산에 Henry Hub 지수(미국 루이지애나 주, 멕시코만 해안에 위치한 파이프라인 허브로서 NYMEX 천연가스 선물 계약의 지표)에 연동한 일평균 가격에 따라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대행계약(Marketing Agreement)의 해지 권리는 본 투자회사가 가지게 될 예정이며, 부득이하게 해지하게 될 경우에도 미국 멕시코만 지역의 원유 및 천연가스 운송 인프라(예를 들면 파이프라인 시설 등)을 통해 미국 전역으로 판매될 수 있는 공급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생산 원유 및 천연가스의 판매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td></tr>
<tr><td>복구비용 초과 위험</td><td>본 투자회사가 궁극적으로 투자하는 대상인 ANKOR 유전은 미국 멕시코만 천해(淺海) 지역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유정에서 생산되는 석유가 생산비용으로 인하여 경제성을 상실하거나 고갈되어 철수할 경우 환경 보호 및 해양자원 보전을 위하여 유정을 폐쇄하여 자연상태로 복구하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투자회사는 AEPH와 협의된 수준에서 산정한 복구비를 매년 적립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투자회사의 해산 시 유전의 잔여 순현재가치(NPV)가 최초에 협의된 복구비를 산정하는데 배경이 되었던 예상 NPV와 차이가 발생할 경우 산정된 복구비 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투자회사는 AEPH와 맺게 될 유한책임조합계약서(Amended and Restated Agreement of Limited Partnership)을 통해 적립된 복구비 범위 내에서만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td></tr>
<tr><td>법률 관련 위험</td><td>본 투자회사는 금번 일반공모를 통해 모집한 자금을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및 본 투자회사의 집합투자규약(정관)에 따라 미국 멕시코만 지역에 위치한 ANKOR 유전의 지분 중 29.5%를 보유하게 될 KOA Energy LP(Limited Partnership)에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으로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상기 Limited Partnership에는 ANKOR 지분 29.5%의 매각자인 ANKOR E&P Holdings Corporation이 100% 출자한 KOA Energy LLC가 GP(General Partner)로서 참여하게 됩니다.</td></tr>
</table>

<table>
<tr><td></td><td>각 거래당사자들은 본 거래의 완료를 위해 유한책임조합계약서(Amended and Restated Agreement of Limited Partnership)와 매매 및 출자계약서(Amended and Restated Sales and Contribution Agreement)(이하 “거래 관련 계약(Transaction Agreements)”)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본 투자회사는 거래 관련 계약(Transaction Agreements)를 체결하기 이전, 본 거래 관련자들간 매매 가격 결정 및 계약 체결과 관련한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tr><th>구 분</th><th>주 요 내 용</th></tr>
<tr><td>계약 목적</td><td>매매 및 출자계약서(Amended and Restated Sales and Contribution Agreement) Section 2.1(a)(ii)에 기재될 매매대금의 결정 및 계약 효력 관련 합의서</td></tr>
<tr><td>계약 당사자</td><td>- ANKOR E&P HOLDINGS CORPORATION의 100% 출자자인 한국석유공사
-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 삼성증권 주식회사 및 대우증권 주식회사로 구성된 한국운용 컨소시엄의 대표사로서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td></tr>
<tr><td>유가 조정</td><td>- 매수자가 지급하는 매매대금은 한국석유공사와 체결한 "매매대금 결정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헤지(Hedge) 체결 유가를 고려하여 최종 확정
- 매도자는 청약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매도자가 수용가능한 가격으로 매도자가 통보하여야 하며, 매수자는 통보유가 이상에서 실제 헤지(Hedge) 체결
- 단, 매수자가 헤지(Hedge) 거래를 체결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현저하게 불합리할 경우는 매도자와 통보 가격을 재통보하여야 함</td></tr>
<tr><td>본 투자회사 모집금액 결정</td><td>-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은 청약일 이전, 합리적으로 체결가능한 헤지(Hedge) 유가를 한국석유공사와 협의하여 결정 후, 매매대금 및 모집금액을 결정하여야 함</td></tr>
</table>
본 투자회사가 100% 출자한 KIA는 상기 거래를 통해 ANKOR유전 지분 29%의 매매대금에 상당한 현금을 파트너쉽에 출자하여 유한책임사원(이하 “LP”)의 지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유한책임사원으로서의 지위 및 법률적인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들은 유한책임조합계약서(Amended and Restated Agreement of Limited Partnership)상에 반영되어 있고 지분 취득 및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한 내용들은 매매 및 출자계약서(Amended and Restated Sales and Contribution Agreement) 상에 반영되어 있어 본 거래와 관련한 법률 관련 위험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3-1- 유한책임조합계약서(Amended and Restated Agreement of Limited Partnership)] 및 [별첨3-2- 매매 및 출자계약서(Amended and Restated Sales and Contribution Agreement)]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비운영권자</td><td>본 투자회사는 해외자원개발전담회사인 Korea Investment ANKOR LLC를 설립하고 위</td></tr>
</table>

위험	회사가 ANKOR유전의 광업권 29.5%를 보유한 파트너쉽의 유한책임사원 지위로 사업에 참여합니다. 광업권의 관리와 관련한 주요 사항들은 유한책임조합계약서(Amended and Restated Agreement of Limited Partnership)에 근거하여 무한책임사원(이하 “GP”)인 KOA ENERGY LLC(AEPH의 100% 자회사)에 일임될 예정입니다. AEPH는 자원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한국석유공사가 100% 소유한 회사이기 때문에 본 투자회사는 유전 및 본 투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주요 권리를 위임하여, 유전의 운영을 본 투자회사가 직접 통제하지 못하는 비운영권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투자회사는 이에 대비하여 계약서 작성 시 유한책임조합계약서(Amended and Restated Agreement of Limited Partnership)에 운영과 관련한 GP의 선관주의의무를 포함시켰으며, 파트너쉽 지분 구조의 변경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LP 과반수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는 조항 등을 포함시켜 비운영권자 위험을 경감시키며, 운영 과정에서 한국석유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Monitoring을 통해 관리할 예정입니다.
재무 관련 위험	본 투자회사는 금번 공모를 통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할 예정이며, 모집한 금액은 한국석유공사와 삼성물산이 보유하는 미국 멕시코만 지역 소재 해상 유전인 ANKOR 해상 유전 및 가스전(이하 "ANKOR 유전")에 대한 권리 중 29.0%에 해당하는 자산을 美 Delaware州 소재 해외자원개발전담회사인 Korea Investment ANKOR LLC를 통해 취득하는데 사용합니다. 구체적으로 본 투자회사는 모집한 자금을 미국 Delaware州 법에 따라 설립될 KOA Energy LP라는 이름의 Limited Partnetrship(이하 "파트너쉽")의 유한책임사원의 지분(98.3%)을 취득하는 대가로 KIA를 통해 현금출자 형태로 지급하게 되며, 파트너쉽은 본 투자회사로부터 출자받은 현금을 ANKOR 유전을 취득하는데 사용합니다. 본 투자회사는 설정기간 동안 파트너쉽으로 부터 매 분기마다 ANKOR 유전에서 산출되는 원유 및 천연가스의 세후 판매수익을 지급받아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지급하고, 운용종료시점에 LP는 파트너쉽의 유한책임사원 지분 전부를 AEPH(Original Limited Partner)에게 USD 1에 양도하고 Exit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별첨4]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지분매입 관련 재무자문 결과보고서 내용 중 설립부터 운용, 매각까지 총 15년(회사의 기본 사업기간)동안 본 투자회사와 관련한 현금흐름의 추정을 몇가지 가정을 포함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투자의사결정 시[별첨4- 현금흐름 및 수익률 산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 및 환경 관련 위험	본 투자회사가 실질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자산인 ANKOR 유전은 자연 재해 및 환경 관련 위험에 대비하여 Lloyd's사를 비롯한 19여 개의 글로벌 기관들이 인수하는 Energy Package 타입의 보험 상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통상 Energy Package 보험은 1년 단위로 갱신되는 상품으로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 기준 본 파트너쉽이 가입한 상품의 부보 기간은 2011년 5월 1일부터 2012년 5월 1일까지입니다. 부보 대상은 ANKOR 유전 지분의 매각자인 ANKOR E&P Holdings가 보유한 ANKOR 유전 지분의 80%입니다. (삼성물산이 보유한 나머지 20%의 지분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함께 부보하였으나, 2011년부터 별도로 보험 가입하고 있습니다.) 상기 보험 상품의 구체적인 부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보험 Coverage	보 험 금 액	Retention(공제)
Section (Ⅰ)	- Physical Damage 플랫폼, 파이프라인 등 시설물 관련 피해보상	- 사전에 명세서에 명기된 각 시설물별 보상 금액에 따름	- 각 사고에 대해 100만불 공제
Section (Ⅱ)	- 유정관련 사고에 대한 보상 - 유정 통제를 위한 복구 비용, 재시추 비용, 유출 및 해양 오염 보상, 오염 복구비용 보상, 보유자산으로 인한 타인손실 보상 등	- 개별 유정관련 사고에 대해 포괄적으로 $1억 한도 보상 - 누출 및 오염복구비용에 대해서는 $5천만 한도 추가 보상 - AEPH가 보호,관리,통제하는 자산에 인한 타인의 손실에 대해서는 $5백만 한도 보상 - 단, 개별 유정당 보상한도는 $5백만	- 각 사고에 대해 100만불 공제 - 단, AEPH가 보호,관리,통제하는 자산으로 인한 타인의 손실에 대해서는 10만불 공제
Section (Ⅲ)	- Loss of Production Income - 매출액 손실 발생시 보전 단, 허리케인에 기인한 경우 제외	- 각 사고에 대해 최대 $69만/일 - 보험커버기간: 사고일로부터 365일	- 각 사고에 대해 자기부담기간 60일

(주 1) 허리케인에 기인한 Section(Ⅰ)과 Section(Ⅱ)에 대한 보상금액 한도는 계약기간동안 총 $8,000 만입니다.

(주 2) Section(Ⅰ)과 Section(Ⅱ)에 대한 공제는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허리케인에 기인한 것일 때에는 각 허리케인에 대해서 $2,400 만이 공제됩니다.

(주 3) AEPH 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SM58 리스의 B-19 ST3 유정의 경우, 기준 보험금액에서 47%만큼 보상 및 공제하게 됩니다.

상기 보험 상품은 ANKOR E&P Holdings 또는 KOA Energy LP가 소유하지 않은 자산(예를 들어 BP 소유의 송유관 시설 등)은 부보 대상에서 제외하며 허리케인에 대한 LOPI(Loss of Production Income)은 부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허리케인을 제외한 다른 사유로 타사의 시설물(예를 들어 BP 소유의 송유관 시설 등) 피해가 발생하여 ANKOR 유전이 생산 중단되는 경우에는 LOPI 피해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Business Interruption(사업중단)의 원인이 허리케인의 기인한 경우와 기인하지 않은 경우의 부보 대상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Business Interruption 원인	자사의 시설물 피해로 인한 경우	타사의 시설물 피해로 인한 경우
허리케인에 기인한 경우	X*	X
허리케인 이외 원인에 기인한 경우	O	O

(주 1) 허리케인에 기인한 자사의 시설물 피해로 인해 Business Interruption 이 발생했을 경우 2010 년에는 보상 대상이었으나 2011 년에는 보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이는 Indemnity Period(보험커버기간) 및 Waiting Period(자기부담기간)를 감안하였을 경우 보험료 대비 실익이 크지 않다는 한국 석유공사(KNOC)의 판단에 기인한 것입니다.

자산가치 손상 위험

본 투자회사는 거래 관련 계약(Transaction Agreements)에 의해 ANKOR 유전에 대한 권리하자 (Title Defect) 및 환경하자 (Environmental Defect)와 관련한 실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동 실사 과정에서 개별 하자금액 및 이의 합계가 매매 및 출자계약서(Amended and Restated Sales and Contribution Agreement)에 의해 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에서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산가치가 손상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 기준 금액을 초과한 Defect의 합계가 $10,000,000을 초과할 경우 매매 및 출자계약서(Amended and Restated Sales and Contribution Agreement)를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매매 당사자들에게 있습니다. 하자별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개 별	전 체
환경 하자	$250,000	$10,000,000

	<table><tr><td>권리 하자</td><td>$250,000</td><td>$20,000,000</td></tr></table> 동 위험과 관련하여 본 투자회사가 투자하는 ANKOR 유전을 한국석유공사가 인수할 당시 실시한 상기 하자 가능성에 대한 실사 결과를 확인한 결과, ANKOR 유전 가치에 손상을 입힐 Defect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ANKOR 유전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Title의 분쟁으로 인한 중대한 소송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운영회사인 ANKOR Energy LLC는 2010년 미국 내무부 산하 광물관리청 (MMS : Minerals Management Service)으로부터 안전환경대상(Safe Award for Excellence)을 수상하는 등 환경 관련 부분의 관리에 대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환금성 위험	본 투자회사는 환매금지형 투자회사로 본 투자회사의 주식은 공모를 통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며 상장이후 회사 청산시까지 지속적으로 거래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시장 금리가 상승할 경우 상대적으로 투자매력이 감소하여 주가가 하락하거나, 시장참여자의 부족으로 인해 상장 후 시장에서의 거래량이 예상보다 풍부하지 못할 경우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거래비용 증가 등으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의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영진 위험	본 투자회사는 ANKOR유전의 비운영권자로서, 파트너쉽의 출자지분(LP)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SPC에 투자하는 수동적 투자를 함으로써 경영진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운영경험 보유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유전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상기 파트너쉽은 자원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한국석유공사가 GP(General Partner)를 담당하여 운영할 예정이고, 거래 관련 계약(Transaction Agreement) 체결 및 한국석유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비운영권자 위험을 경감할 예정입니다.
투자제한 위험	본 투자회사는 투자대상 별 투자한도가 정해져 있고 파생상품의 가격변동에 따른 투자한도액을 일시적으로 초과할 경우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법령 및 규제 관련 위험	본 투자회사는 각종 계약내용 및 투자대상국의 법률 및 규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사업 진행상 어려움에 처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자원개발사업의 경우 다양한 환경규제 등에 노출되어 있어 향후 이러한 규제로 인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할 위험이 있으며, 이 경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도 변화 위험	국내외 법률, 조세 및 규제 등의 정책이나 제도변경에 따라 당초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규제가 생길 수 있으며 조세 제도의 변화 등으로 예상된 투자이익이 낮아지거나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정가액 산정위험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공정가액 산정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자산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정가액

	이 시장가치와 정확히 상응한다고 보장할 수 없고 정확한 가치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 오류 위험	본 투자회사의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 판매회사 등 관련기관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류가 법에서 정한 오차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가 산정 오류가 이러한 오차범위 이내에서 발생한 경우 당해 투자회사를 청약하거나 환매한 투자자, 기존투자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경제적 가치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법률, 조세 및 규제 등 제도적 위험	국내·외 법률, 조세 및 규제 등의 정책이나 제도변경에 따라 투자회사재산의 운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운용프로세스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적으로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집합투자업자에게 부여된 임의재량에 의한 투자활동의 결과는 집합투자업자의 능력에 좌우되고 특히 적절한 투자기회를 식별하고 성공적으로 투자전략을 이행하는 펀드매니져의 능력에 의존합니다. 펀드매니져는 당해 투자회사뿐만 아니라 다수의 다른 투자회사의 운용을 담당할 수 있고 또한 담당 펀드매니져의 퇴직 등으로 존속기간 도중에 담당 펀드매니져가 변경될 위험이 있습니다.
기타 주의 사항	본 신고서 작성 시점에 파악된 위험요소를 최대한 반영하여 분석 및 작성하였으나, 작성시점에서 인지하지 못한 위험 요인이 잠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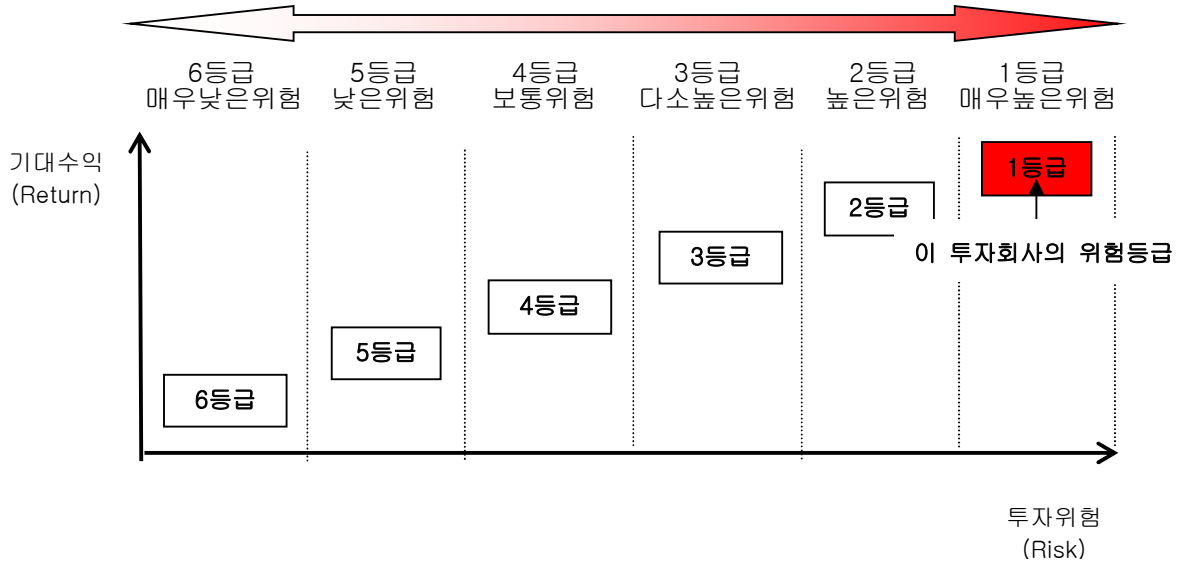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본 투자회사의 경우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대부분을 ANKOR유전의 지분 29.5%를 보유한 파트너쉽의 유한책임사원(LP)인 Korea Investment ANKOR LLC 지분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높은 자본이득을 추구하므로 5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가장 높은 수준인 6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매우 높은 1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본 투자회사는 석유 및 가스 가격의 변동 위험 및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감내 할 수 있고 투자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변경전·후 위험등급 및 변경사유

변경일	변경전 위험등급	변경후 위험등급	위험등급 변경사유
-	-	-	-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 및 상세설명]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주)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①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부동산개발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④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①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레버리지(차입)를 일으키는 실물형부동산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①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 위험	①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①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①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주) 1.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당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의 내부기준입니다. 따라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예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합니다. 따라서,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추후 실제 수익률 변동성으로 등급분류기준이 변경되면서 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①고위험자산이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

을 갖는 자산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투기등급채권 등 자산이란 투기등급채권(BB+이하), 투기등급CP(B+이하), 후순위채권,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contingent convertible bond, CoCo bond)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②중위험자산이란 채권(BBB급), CP(A3급),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③저위험자산이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이상), CP(A2-이상), 현금성자산, 이러한 저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4.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헤지 여부, 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5.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기초자산,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및 담보수준 등을 감안하여 위험등급이 상향 또는 하향될 수 있습니다.
6.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대상,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류합니다.
7. 상기 분류에 따른 동일유형임에도 불구하고 편입자산의 구체적인 운용내용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별도로 위험등급을 달리 분류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청약방법

판매회사는 다음 각 항의 방법으로 본 주식의 청약을 실시하며, 판매회사의 지점방문, 홈페이지 및 HTS를 통한 청약만 가능하며, 유선 청약은 불가능합니다. 다음에서 정하지 않은 청약의 실시와 관련된 절차, 방법에 대해서는 판매회사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① 청약기간은 2012년 1월 26일 ~ 31일(4영업일)까지입니다.

②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1.5%로 합니다. 다만 기관투자자의 경우 해당 청약분에 대한 납입 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청약증거금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③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2012년 2월 2일)에 주식의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이 납입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2012년 2월 2일에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환불합니다. 다만, 상기 초과금을 청약자에게 지급할 때까지 유치하는 기간에 대한 이자는 청약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청약한도는 일반투자자의 경우 200주 이상 50,000,000주 이하, 기관투자자의 경우 20,000주 이상 20,000,000주 이하로 합니다. 청약한도의 상한을 초과한 청약은 그 초과부분에 한하여, 청약한도의 하한에 미달한 청약은 그 전체에 대하여 청약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⑥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날인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사무취급처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각 판매회사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합니다.

⑦ 각 청약자는 회사 주식에 투자함에 따르는 위험을 고려하고 인식한 후에 투자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투자위험에 대한 내용은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위험”을 참조하시기 바랍

니다.

항목			내용
모집 주식의 수			70,000,000주
주당 모집가액		확정가액	5,000원
모집총액		확정가액	350,000,000,000원
최저 청약한도			일반청약자 200주/기관투자자 20,000주
최고 청약한도			일반청약자 50,000,000주/기관투자자 20,000,000주
청약단위			200주 이상 2,000주 이하: 200주 단위 2,000주 초과 10,000주 이하: 1,000주 단위 10,000주 초과 20,000주 이하: 2,000주 단위 20,000주 초과 50,000주 이하: 5,000주 단위 50,000주 초과 200,000주 이하: 10,000주 단위 200,000주 초과: 20,000주 단위
청약기간	일반모집	개시일	2012년 1월 26일
		종료일	2012년 1월 31일
	기타	개시일	-
		종료일	-
청약증거금	일반모집 또는 매출		청약금액의 101.5%
	기타		-
납입기일			2012년 2월 2일
배당기산일(결산일) 주1), 주2)			매년 3월 5일, 6월5일, 9월5일, 12월5일 - 투자회사 설립연도: 2011년 8월 2일 - 투자회사 청산연도: 당해 회사 청산일

(주 1) 당해 투자회사의 제 1 기 사업년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2012 년 6 월 5 일까지 입니다.

(주 2) 금번 공모를 통해 본 투자회사에 투자하시는 투자자께서는 2012 년 2 월 2 일(납입일)에 배정받으신 주식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본 투자회사의 예상 배당과 관련 내용은 “제 2 부.4. 이익분배 및 과세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 3) 본 건 청약시 선취판매수수료 1.5%를 징구를 위하여 청약증거금율을 101.5%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환불일에 배정수량에 대해서만 1.5%의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며, 배정받지 못한 주식에 대해서는 선취판매수수료분 1.5%를 포함하여 환불됩니다. 다만 기관투자자의 경우 해당 청약분에 대한 납입 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청약증거금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나. 환매

(1) 주식의 환매

주주는 이 회사 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

니다.

1. 주주인 개인이 사망한 때 또는 주주인 법인이 법정관리・화의신청・해산하는 때 (정관 제 17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이 상장되기 이전에 한하여 주식의 환매를 청구 가능)
2. 정관 제 33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정관 제 67 조 제 4 항에 해당하는 경우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 17시[오후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10영업일에 공고되는 주식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10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2) 17시[오후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11영업일에 공고되는 주식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11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주식의 판매회사는 전산시스템에 따라 매입 또는 환매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점을 매입 또는 환매를 청구한 시점으로 봅니다. 다만, 주주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약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주식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매입 또는 환매의 기준시점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주주에게 지급합니다.

환매대금은 투자회사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회사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이 투자회사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회사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정관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정관 제21조 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주주가 그 주식을 보유한 기간(당해 주식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합니다.

-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4) 주식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8영업일 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9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5) 주식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주식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주주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주주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1. 투자회사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회사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회사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주주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회사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주주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 투자회사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주주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주주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주식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회사 주식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6) 주식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회사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주주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을 부분환매하거나 환매연기를 위한 주주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법 제237조 제7항에 따라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 전날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을 나머지 자산(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정상자산에 대한 기준가격을 계산하여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지분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7조 제6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회사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회사를 설정한 경우에는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회사의 주식을 계속하여 발행·판매 및 환매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7조 제5항에 따라 부분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내용을 판매회사, 신탁업자 및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회사 주식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7시[오후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 전환 : 해당사항 없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제무상태표에 계상된 투자회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공고·게시일 전날의 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주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회사에 대한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공시주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kira.koreainvestment.com)·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주 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집합투자기구재산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원칙

구 분	평가원칙
시 가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함)에서 공표하는 가격.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음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2. 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공정가액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으로 평가하여야 함 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2.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3.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자가 제공한 가격 가. 채권평가회사 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다. 신용평가회사 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마.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자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4. 환율 5.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인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부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장부가격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 상기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그 차이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1,000분의 5)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 당해 거래소에서 평가기준일에 거래된 최종시가. 다만, 평가기준일의 최종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하여 당해 주식의 최종시가로 평가
비상장 지분증권	- 취득가. 다만, 취득가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평가할 수 있음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규약에 평가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채무증권등	-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규정 제20조에 따른 적용방법(채권평가회사 가격)으로 평가(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그밖에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등). 다만, 법 제4조 제7항 제1호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은 파생결합증권의 평가방법을 따름
파생결합증권	- 발행회사가 제시하는 가격과 채권평가회사 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평가. 다만, 발행회사가 일별가격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권평가회사 가격으로 평가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파생결합증권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당해 거래소에서 평가기준일에 거래된 최종시가로 평가. 다만, 평가기준일의 최종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하여 당해 증권의 최종시가로 평가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함
장내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발표하는 가격으로 평가
장외파생상품	- 발행회사가 제시하는 가격과 채권평가회사 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평가. 다만, 발행회사가 일별가격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권평가회사 가격으로 평가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함
실물자산등	- 시가 또는 기준신용등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 1. 부동산(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특수목적회사의 지분증권 포함) 가.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의 경우 : 취득가격 나. 부동산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때 : 매 1년마다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평가. 다만, 수익증권이 상장되지 않았으며, 수익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제공한 가격(감정평가액)이 전년도 장부가격보다 큰 경우 :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하되, 감정평가액과 전년도 장부가격의 괴리가 15%미만 발생 시 전년도 장부가격으로 평가 2) 감정평가액이 전년도 장부가격보다 작은 경우 : 감정평가액으로 평가 2. 실물자산 : 취득가격 3. 실물자산등 관련 지분증권 : 취득가격 4. 실물자산등 관련 채무증권(대출채권을 포함) : 취득가격으로 하되, 발생이자는 일별부리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함
집합투자증권	- 공고된 최종 기준가격으로 평가.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그 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평가
기타자산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

3)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등

구 분	주요내용
구 성	대표이사, 운용담당 총괄본부장, 마케팅담당 총괄본부장, 위험관리책임자, 준법감시인, 컴플라이언스·위험관리담당부서장
업 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1.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실물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도채권등 부실화된 자산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출자전환 주식 등 시장 매각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의 공정가액 산정에 관한 사항 6.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의 종료시각 차이에 따라 외화표시자산의 기준시점 적용등 평가에 관한 사항 7.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8. 평가방법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자산의 평가에 관하여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 본 투자회사는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2) 본 투자회사의 주주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주식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투자회사의 주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부과비율 (또는 부과금액)	부과시기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5%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시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주2)	환매시

(주 1) 금번 모집시 선취판매수수료를 반영하여 청약시 청약증거금율을 101.5%로 하였습니다. 다만 기관투자자의 경우 해당 청약분에 대한 납입 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청약증거금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주 2) 원칙적으로 환매가 금지되어 있으나 정관 제 21 조 제 1 항 제 1 호의 규정에 따라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부과비율 (연간,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관리	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동종유형총보수·)	증권 거래비용

	보수			회사 보수				비용)	
-	0.2500	0.0500	0.0150	0.0350	0.3500	0.2900	0.6400	1.6200	-
부과시기	정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년도					사유발생시	-	-	사유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본 투자회사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을 제외한 것으로, 이들 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기타비용 비율은 본 투자회사 존속기간 중 총 예상되는 기타비용을 연간비율로 환산한 수치입니다.

(주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투자회사는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며, 본 투자회사와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주 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주 4) 총보수·비용 비율은 본 투자회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다만, 본 투자회사는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하여 기타비용 중 (주 5)에 명기된 비용을 제외한 다른 비용에 대한 비율은 포함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총보수·비용 비율은 기타비용 중 (주 5)의 비용을 제외한 비용에 대한 비율이 합산되지 아니한 수치입니다.

(주 5) 기타비용으로는 해외자원보험료, 인수주선수수료, 자문수수료, 감사보수 및 기타 운영비용 등 본 투자회사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예상비용 등(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외화로 지급할 경우 환율에 의해 변동 가능)이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만, 아래의 금액은 예상금액 이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본 투자회사의 정관 제 60 조(자산의 운용비용 등)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상기 표에 반영된 보수비율은 모집총액 대비 예상 기타비용(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본 투자회사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은 제외)의 비율을 펀드 설정기간으로 나눈 수치 입니다.

(주6) 동종유형 총보수·비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회사 존속기간 중 총 예상 기타비용]

[단위:백만원]

구분	금액 (예상)	비고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료	5,883	
총액인수수수료	7,000	모집금액의 2%
기술자문수수료	438	
법률자문수수료	899	
재무자문수수료	182	

회사 설립 및 상장비용	135	
기타 운영비용	100	투자회사 내 유보금
합계	14,637	

(주) 기타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본 투자회사의 정관 제 60 조(자산의 운용비용 등)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관 제 60 조(자산의 운용비용 등)>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회사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주주명부 관리비용
5.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되는 비용
6. 회사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 비용
8. 회사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
10. 차입금의 이자
11. 해외자원개발보험료
12.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이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 대한 통지 등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
13. 법무, 회계 및 기술자문 등 서비스를 위한 법무법인, 회계법인 및 기술자문 등에 소요되는비용
14. 기타 회사의 모집·운영 및 자산의 운용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 총보수 · 비용 비율(TER : Total Expense Ratio) 산정

상기 보수 및 비용을 토대로 산출한 총보수·비용 비율(TER : Total Expense Ratio)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① 보수 및 비용 총액	25,680	
② 순자산 연평잔액	141,717	보수·비용 차감전 기준
총보수·비용 비율	18.1%	①÷②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구 분	투자기간				
	1년후	2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620	644	680	723	775

(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및 보수를 누적금액으로 산출한 것이며, 위에 기재한 기타비용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주 2) 평잔 기준으로 지급되는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주주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는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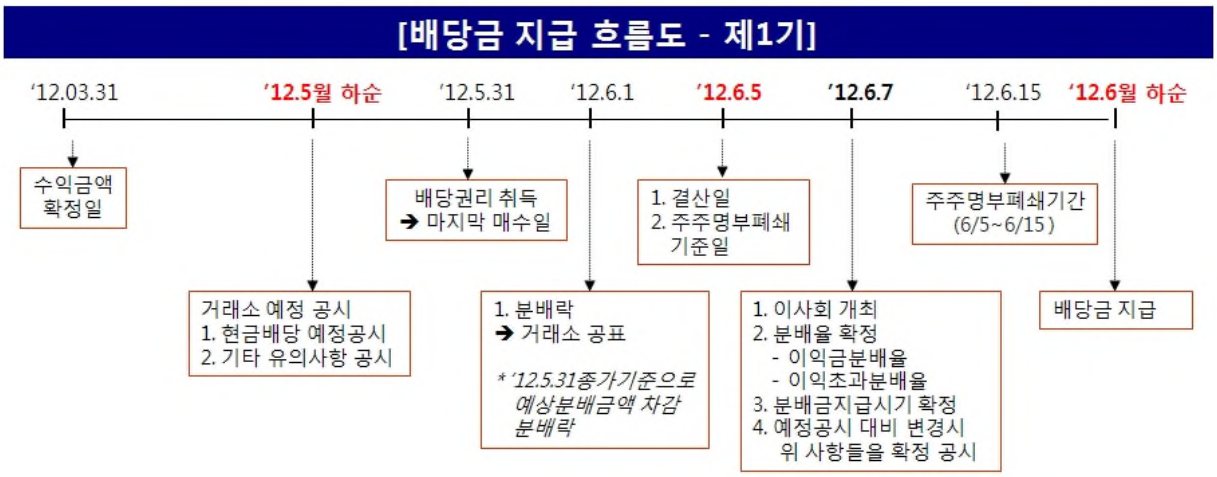
(주 3) 결산에 따른 이익분배를 감안한 투자기간 별 순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주 4) 본 투자회사 존속기간 동안 발생할 총 비용비율을 토대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1) 본 투자회사는 회사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사업년도 종료 후 이사회가 정하는 날에 주주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법 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주 1) 예시 흐름도이며,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 투자회사의 결산 일정입니다. 다만, 본 결산 일정은 회사의 운영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시기	종류	수익대상기간	회계연도말	분배금 지급 시기(예정)
1기	정기	2012. 01 ~ 2012. 03	2012. 06. 05.	2012년 06월 하순
2기	정기	2012. 04 ~ 2012. 06	2012. 09. 05.	2012년 09월 하순
3기	정기	2012. 07 ~ 2012. 09	2012. 12. 05.	2012년 12월 하순
4기	정기	2012. 10 ~ 2012. 12	2013. 03. 05.	2013년 03월 하순
5기	정기	2013. 01 ~ 2013. 03	2013. 06. 05.	2013년 06월 하순
6기	정기	2013. 04 ~ 2013. 06	2013. 09. 05.	2013년 09월 하순
7기	정기	2013. 07 ~ 2013. 09	2013. 12. 05.	2013년 12월 하순
8기	정기	2013. 10 ~ 2013. 12	2014. 03. 05.	2014년 03월 하순
9기	정기	2014. 01 ~ 2014. 03	2014. 06. 05.	2014년 06월 하순

시기	종류	수익대상기간	회계연도말	분배금 지급 시기(예정)
10기	정기	2014. 04 ~ 2014. 06	2014. 09. 05.	2014년 09월 하순
11기	정기	2014. 07 ~ 2014. 09	2014. 12. 05.	2014년 12월 하순
12기	정기	2014. 10 ~ 2014. 12	2015. 03. 05.	2015년 03월 하순
13기	정기	2015. 01 ~ 2015. 03	2015. 06. 05.	2015년 06월 하순
14기	정기	2015. 04 ~ 2015. 06	2015. 09. 05.	2015년 09월 하순
15기	정기	2015. 07 ~ 2015. 09	2015. 12. 05.	2015년 12월 하순
16기	정기	2015. 10 ~ 2015. 12	2016. 03. 05.	2016년 03월 하순
17기	정기	2016. 01 ~ 2016. 03	2016. 06. 05.	2016년 06월 하순
18기	정기	2016. 04 ~ 2016. 06	2016. 09. 05.	2016년 09월 하순
19기	정기	2016. 07 ~ 2016. 09	2016. 12. 05.	2016년 12월 하순
20기	정기	2016. 10 ~ 2016. 12	2017. 03. 05.	2017년 03월 하순
21기	정기	2017. 01 ~ 2017. 03	2017. 06. 05.	2017년 06월 하순
22기	정기	2017. 04 ~ 2017. 06	2017. 09. 05.	2017년 09월 하순
23기	정기	2017. 07 ~ 2017. 09	2017. 12. 05.	2017년 12월 하순
24기	정기	2017. 10 ~ 2017. 12	2018. 03. 05.	2018년 03월 하순
25기	정기	2018. 01 ~ 2018. 03	2018. 06. 05.	2018년 06월 하순
26기	정기	2018. 04 ~ 2018. 06	2018. 09. 05.	2018년 09월 하순
27기	정기	2018. 07 ~ 2018. 09	2018. 12. 05.	2018년 12월 하순
28기	정기	2018. 10 ~ 2018. 12	2019. 03. 05.	2019년 03월 하순
29기	정기	2019. 01 ~ 2019. 03	2019. 06. 05.	2019년 06월 하순
30기	정기	2019. 04 ~ 2019. 06	2019. 09. 05.	2019년 09월 하순
31기	정기	2019. 07 ~ 2019. 09	2019. 12. 05.	2019년 12월 하순
32기	정기	2019. 10 ~ 2019. 12	2020. 03. 05.	2020년 03월 하순
33기	정기	2020. 01 ~ 2020. 03	2020. 06. 05.	2020년 06월 하순
34기	정기	2020. 04 ~ 2020. 06	2020. 09. 05.	2020년 09월 하순
35기	정기	2020. 07 ~ 2020. 09	2020. 12. 05.	2020년 12월 하순
36기	정기	2020. 10 ~ 2020. 12	2021. 03. 05.	2021년 03월 하순
37기	정기	2021. 01 ~ 2021. 03	2021. 06. 05.	2021년 06월 하순
38기	정기	2021. 04 ~ 2021. 06	2021. 09. 05.	2021년 09월 하순
39기	정기	2021. 07 ~ 2021. 09	2021. 12. 05.	2021년 12월 하순
40기	정기	2021. 10 ~ 2021. 12	2022. 03. 05.	2022년 03월 하순
41기	정기	2022. 01 ~ 2022. 03	2022. 06. 05.	2022년 06월 하순
42기	정기	2022. 04 ~ 2022. 06	2022. 09. 05.	2022년 09월 하순
43기	정기	2022. 07 ~ 2022. 09	2022. 12. 05.	2022년 12월 하순

시기	종류	수익대상기간	회계연도말	분배금 지급 시기(예정)
44기	정기	2022. 10 ~ 2022. 12	2023. 03. 05.	2023년 03월 하순
45기	정기	2023. 01 ~ 2023. 03	2023. 06. 05.	2023년 06월 하순
46기	정기	2023. 04 ~ 2023. 06	2023. 09. 05.	2023년 09월 하순
47기	정기	2023. 07 ~ 2023. 09	2023. 12. 05.	2023년 12월 하순
48기	정기	2023. 10 ~ 2023. 12	2024. 03. 05.	2024년 03월 하순
49기	정기	2024. 01 ~ 2024. 03	2024. 06. 05.	2024년 06월 하순
50기	정기	2024. 04 ~ 2024. 06	2024. 09. 05.	2024년 09월 하순
51기	정기	2024. 07 ~ 2024. 09	2024. 12. 05.	2024년 12월 하순
52기	정기	2024. 10 ~ 2024. 12	2025. 03. 05.	2025년 03월 하순
53기	정기	2025. 01 ~ 2025. 03	2025. 06. 05.	2025년 06월 하순
54기	정기	2025. 04 ~ 2025. 06	2025. 09. 05.	2025년 09월 하순
55기	정기	2025. 07 ~ 2025. 09	2025. 12. 05.	2025년 12월 하순
56기	정기	2025. 10 ~ 2025. 12	2026. 03. 05.	2026년 03월 하순

(주 1) 수익대상기간 : 원유 및 가스 판매대금에 대한 수익이 정의되는 기간

(주 2) 회계연도말 : 분배금 지급 시 주주명부를 확정하기 위한 결산기말

(주 3) 분배금 지급시기 : 분배가능한 이익초과분배금 및 이익 분배금이 실제로 지급되는 시기

(2) 본 투자회사는 매년 3 월 5 일, 6 월 5 일, 9 월 5 일, 12 월 5 일을 결산일로 하여 3 개월을 주기로 결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때 결산으로 인한 이익분배금 및 이익초과 분배금을 주주에게 현금으로 분배합니다.

(3) (2)의 분배금의 지급은 매 결산기말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그 소유 또는 질권 등록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4) 본 투자회사가 (2)의 분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동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일 현재 주주의 권리가 있는 자에게 이사회에서 정한 일자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분배금은 순자산총액에서 최저 순자산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 내로 합니다.

(5) 본 투자회사의 결산으로 인한 이익분배금 및 이익초과분배금 또는 잔여재산분배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5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6)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이익분배금 및 이익초과분배금 또는 잔여재산분배금은 본 투자회사에 귀속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회사 단계에서의 과세**와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회사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회사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회사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주

주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본 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의한 투자회사로서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라 각 결산기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당해 회계연도의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환매 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주주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주주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회사의 주식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 변경, 양도(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함)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고 있습니다.

(3) 본 투자회사에 적용되는 사항

- 본 투자회사의 경우 미국 Delaware州 법에 따라 설립된 Korea Investment ANKOR LLC라는 회사를 통해 KOA Energy LP라는 이름의 Limited Partnership의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의거하여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당해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국외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의 14%를 한도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차감하거나, 동 외국납부세액이 납부할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에 따라 계산한 금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 납부 세액공제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목적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제57조제1항 및 제6항의 외국법인세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5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그 사업연도의 외국 납부세액(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한도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빼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간접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그 사업연도의 외국 납부세액이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사업연도"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으로 보고, "과세표준 신고 시"는 "결산 시"로 본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투자신탁을 대리(代理)하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30][시행일 : 2011.10.26]

<법인세 법 시행령>

제94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text{당해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법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외국납부세액을 말한다)} \times \frac{\text{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소득금액}}{\text{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국외원천 과세대상소득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식 중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소득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이 조에서 "환급비율"이라 한다)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본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식 중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이라 함은 국외원천소득 중 그 소득에 대하여 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당해 소득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④ 간접투자회사등은 매일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계산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비율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는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계산일까지의"로 본다. <개정 2009.2.4>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해당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재산"이라 한다)에 귀속되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이 귀속되는 간접투자회사등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법인은 동 확인서의 사본을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하는 집합투자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4, 2010.2.18>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회사 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법 제5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외국납부세액 환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으로, "사업연도의 종료일"은 "결산일"로 본다.

⑦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간접투자회사등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9조제1항제1호·제2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2.4>

⑧ 법 제57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은 해당 투자신탁, 투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환급신청서 및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2.4>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2.9]

<소득세 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
5.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5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4조제3항제10호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이를 바탕으로 본 투자회사의 세후 이익비율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과세지역	투자대상	항목	금액	비고
미국	LLC	총 법인세 차감전 이익	100.0	과세 대상 소득
		법인세액	-35.0	원천징수세율 35%
한국	본 투자회사	법인세 납부 후 이익	65.0	
		외국납부세액 환급	+14.0	법인세법 57조의2에 따라 14%한도로 환급
		세후 펀드의 배당가능이익	79.0	

- 한편, 일반청약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6에 의거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액면가액 5천만원 이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경우 9.9%(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가 이루어지고,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경우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단, 2015년 1월 1일 이후 배당 받는 분부터 적용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액면가액 3억원 이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경우 5.5%(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가 이루어지고, 3억원 초과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경우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6(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으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별 액면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별 액면가액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②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주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된 경우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려면 배당 결의를 한 후 즉시 제1항에 따른 주식 보유자별·증권회사별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명세를 직접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주식 보유자가 위탁 매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비과세하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③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주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은 직접 또는 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 보유자별로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 배당소득비과세·분리과세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관련세법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소득 및 주주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개별 주주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주는 투자회사의 투자에 따른 과세에 관하여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5.발기인 · 감독이사에 관한 사항

가. 발기인에 관한 사항

성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비고
한국투자신탁운용	107-81-85653	-	2만주	결격사유 없음

나. 감독이사에 관한 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비고
김화석	1946.7.30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現)세무사, 김화석세무회계사무소 대표	해당없음	결격사유 없음

유미라	1975.7.22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現)세무사, 청담세무회계사무소 대표	해당없음	결격사유 없음

다. 감독이사의 보수지급기준

(1) 본 투자회사가 설립후 발기인총회에서 정한 최초의 법인이사, 감독이사에 대한 보수는 다음과 같으며, 퇴직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 법인이사 : 지급하지 아니함
- 감독이사 : 월 100만원

(2) 청산인의 보수 : 각 월100만원 이내에서 지급 가능함. 다만. 금융위원회가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함.

[별첨]

[별첨1-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주식등) 약관 및 특약]

구분	내용
EOD(Event of Default)발생 시 투자원금 회수 관련	- 기본적으로, 약관에서 정한바에 따라 손실 보상 - 단, 보험사고 통지일까지의 원유 생산량이 헤지(Hedge) 계약을 체결한 원유량(예상 생산량의 75% 수준)보다 적은 경우에는 각 헤지(Hedge) 계약 정산일별로 헤지(Hedge) 계약을 체결한 원유량보다 실제 원유 생산량이 적은지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손익은 보험금 산정 손실액에서 제외
기타	- 보험사고 통지일을 기준으로 본 투자회사가 미정산한 헤지(Hedge) 계약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약관 7조에 의해 동 금액은 투자대상사업으로부터 회수된 것으로 간주 -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액 산정에 가산하지 않음

이로 인해, 본 투자회사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험을 통한 투자원금 일부 보전 효과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내용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주식등) 약관>

제 7 조(손실액) 제4조의 담보위험이 발생하여 회수할 수 없는 손실액은 보험계약자가 다음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기본손실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잔액을 손실액으로 합니다.

기본손실액= 취득원금 - (기배당금액의 합계 + 주식등 매각금액)

주1) 취득원금: 제20조에 의거 집행통지된 자금의 총합계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책임부담금
2. 보험금지급전에 회수한 금액
3. 당해 위험발생으로 보험계약자가 취득한 금액 또는 취득가능한 금액(헤지(Hedge)를 위한 파생상품거래 등에 의한 취득금 포함)
4. 제 11 조에 규정된 의무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그 의무를 이행했다면 방지·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금액 또는 배상받을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금액
5. 보험계약자가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확대되었다고 인정되는 손실액
6. 공사가 보상할 책임을 짐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주식등) 특약>

1. 보험금 수취권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공사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보험금 수취권자가 피보험투자상대방이 생산하는 원유와 관련하여 헷지를 위한 파생상품거래(통화 관련 파생상품거래를 제외하며, 이하 "헷지계약") 등 기타 중요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해당 거래를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를 포함함)에는 사전에 공사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보험금 수취권자가 헷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약관 제 7 조의 손실액(이하 "손실액")은 동

헷지계약으로 인한 손익을 반영(헷지이익은 손실액에서 차감하고 헷지손실은 손실액에 가산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보험사고 통지일 직전의 헷지계약 정산일(또는 결제일)까지의 헷지계약 대상물량(이하 "헷지물량")이 같은 기간중의 총 생산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헷지계약상의 계산기간별로 해당 기간의 생산물량을 초과하는 헷지물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손실액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또한, 보험사고 통지일을 기준으로, 미정산(또는 미결제) 헷지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손실액에서 차감(보험금 지급 후 발생하는 이익은 공사에 지급하여야 함)하되, 미정산(또는 미결제) 헷지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은 손실액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또한, 헷지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은 손실액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4. 유가하락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원금손실이 발생하였으나, 헷지계약으로 인하여 보험금 수취권자에게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보험금 지급 및 헷지계약 정산과 관련하여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은 손실액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5. 보험기간은 약관 제 18 조에 따른 보험책임 개시일(이하 "보험책임 개시일")로부터 10 년이 경과한 달의 월력상 보험책임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보험책임 개시일로부터 7 년이 경과한 달의 월력상 보험책임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이하 "중간정산일") 현재 보험계약자가 피보험투자상대방에게 투자한 원금 전부를 회수한 경우(이하 "중간정산 요건") 보험기간은 중간정산일에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보험계약자가 투자원금을 전부 회수하였는지 여부는 이 특약 제 3 조에 따라 손실액 산정에 반영되는 헷지계약으로 인한 손익도 가감하여 판단한다.
6. 중간정산 요건의 충족여부는 중간정산일로부터 5 영업일 이전까지 공사와 보험계약자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보험계약자는 중간정산일로부터 3 개월 이전의 월력상 보험책임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당시까지 회수한 금액, 중간정산일까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및 이 특약 제 3 조에 따라 손실액 산정에 반영되는 헷지계약으로 인한 손익의 명세 등 중간정산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일체의 자료를 공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7. 중간정산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된 경우 중간정산일 이후 공사가 산정한 추가 보험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공사와 보험계약자가 협의하기로 한다.
8. 보험계약의 내용과 투자계약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

[별첨2-운영계약서[Operating Agreement]]

구 분	주 요 내 용
계약 당사자	- 舊 KNOC USA Corporation (現 ANKOR E&P Holdings) - Samsung Oil & Gas USA Corp.
계약 체결일	2008년 5월 2일
선행조건	<Management>

또는 주요내용	1. Power of the Board -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자 - 이사회와 이사회로부터 지명된 자는 회사의 대리인 - 이사회와 이사는 회사의 모든 권한을 부여 받음. - 이사회와 이사의 의사결정과 행위는 모두 회사의 의사결정과 행위로 간주되며, 회사와 각각의 참여회사에 귀속됨 2. Appointment and Number of Directors - 이사회는 4명의 자연인으로 구성하되, 3명은 KNOC USA Corporation, a Delaware corporation(KNOC)에서 임명하고, 1명은 Samsung Oil & Gas USA Corp., a Delaware corporation(Song)에서 임명함. - 각각의 참여회사는 제7조 Section B 에 따라 회사와 다른 참여회사에 통보하여 이사회의 인원을 임명함. 3. Chairman of the Board - 이사회의 의장은 KNOC가 임명함. -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와 참여회사간의 회의를 주관 4. Term of Directors - 각각의 이사는 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하기 항목 중 가장 빠른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이사 직무 수행 (i) 이사가 사망, 무능(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이 계약의 조건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ii) 이사가 자신을 임명한 참여회사에게 공지 후 사임하는 경우(참여회사의 요청에 의해 그 이전에 효력 발생이 되지 않는 한, 사임은 공지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함.) (iii) 이사를 임명한 참여회사에 의해 해고되는 경우 - 이사는 이사를 임명한 참여회사의 서면 통지에 의해 원인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해고 가능, 제7조 Section B에 따름. - 이사의 사임, 해고, 사망 또는 무능(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으로 인해 발생된 공석은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이사를 선임한 참여회사에 의해 즉시 자연인으로 임명 5. Meetings of the Board a. 이사회는 매달 한번 이상 정기회의 주최. 회의 시기, 날짜, 장소, 필수요건과 요구사항의 공지, 이 계약서의 조건에 따른 규

	정과 절차를 적용 b. 이사회의 특별회의는 2명이상의 이사의 요청에 의함. 회의에 대한 공지는 제7조 Section B 에 따라 적어도 회의 전 5 영업일 이전에 각각의 이사에게 공지되어야 함. - 공지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음. (i) 시기, 날짜, 장소(모든 이사의 별도의 동의가 있지 않 는 한 회사의 본사로 함) 및 회의를 실시하는 방법 (ii) 제안안건과 회의의 목적, 이사회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보와 문서 - 이사들의 만장일치가 있지 않는 한, 공지사항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행위는 특별회의에서 다루어 질 수 없음. - 어떤 이사든지 회의 전, 회의 중, 회의 후에 서면으로 회의에 대한 공지사항을 포기할 수 있음. c. 이사회의 정족수는 최소한 KNOC가 임명한 이사 2명 - 이사회의 모든 결정은 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요구 - 각각의 이사는 하나의 의결권을 가짐. d. 모든 이사는 이사를 임명한 참여회사의 승인받은 어떤 안건에 대한 투표권의 자격을 대리인에게 이사를 위해서 투표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 - 모든 대리권은 이사나 이사를 지명한 참여회사 또는 참여회사의 대리인의 서명이 있어야 함. - 모든 대리권은 이사가 권한을 실행하여 취소할 수 있음. e. 전화 또는 기타 다른 통신수단으로 참석 가능 f. 이사회는 그 권한을 경영진, 임원, 직원 대리인 회사의 대표에게 위임할 수 있음. - 하기의 행위를 수행할 때는 Section 5의 Subsection c에 따라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i)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매각, 폐기, 그 외에 회사의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 (ii) 회사의 자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사항 (iii) 회계정책을 적용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iv) 세금 목적을 위한 거래의 배분이나 금전적인 지출이 수반되는 세금의 선택을 변경하거나 결정 하는 사항

(v) 금전적인 예산을 수정하거나 적용하는 사항

(vi) 현재 승인된 예산 이외의 회사의 부채를 발생시키는 사항(금전적인 측면에 대한 조건을 수정하는 사항)

(vii)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한 결정이나 예산에 의해 결정된 경우에서 고려되어야 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viii) 인격을 다른 형태로 변경하거나 다른 인격과 합병하는 사항

(ix) 다른 인격의 부채를 보증하는 행위

(x) 임명, 고용, 해고, 재배치와 회사의 임원의 업무 조건과 관련한 의사 결정 사항

(xi) 회사의 해산

(xii) 회사의 청산신청 제출, 개편, 연방 파산법이나 다른 미국법에 의한 감면이나 채무재조정

(xiii) 회사의 제한된 채무구조 변경이나 어떤 방법으로든 이 계약 또는 승인된 형태의 수정

(xiv) 상기에 언급된 사항 이외의 이사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

6. 임직원

a. 이사회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채용하여 의무와 책임을 부여한다. 임직원은 회장, 부회장, 비서, 재무담당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b. 모든 임직원은 새로운 후임자가 채용이 될 때까지 근무해야 한다. 만약 특정 임직원이 부족하면 이사회는 충원해야 한다.

c. 회장은 회사의 CEO로써 회사의 일반적인 감독, 지시, 사업 및 임직원의 관리를 책임지고 의무와 권리를 수행해야 한다.

d. 비서는 모든 이사회 회원사들에게 회의를 통보 및 소집하고 모든 회의의 기록을 하며 의무와 권리를 수행해야 한다.

e. 재무담당자는 회사의 장부와 재무제표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고 회사의 모든 자금과 증권을 수탁하여야 하며 의무와 권리를 수행해야 한다.

f. 이사회는 언제든지 특정 임직원을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g. 임직원은 이사회, 회장, 비서한테 서면 통보를 통해 퇴직할 수 있다.

h. 이사회에서 위임된 임직원은 해당 직책과 책임의 법위내에서 회사를 대표하여 각종 문서, 서류,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문서를 진행할 수 있다.

7. 부도. 이사회의 의무사항

	a. 회사는 독립된 장부와 은행계좌를 유지하여야 한다. b. 대중과 채권자로부터 독립된 법적실체를 유지하여야 한다. c. 회사는 납세신고를 문서철하고, (1) 연결납세신고서로 하고 , (2) 참여회사의 세금목적을 위해서 분할하여서는 아니되며, (3) 법적으로 납세 의무가 있는 모든 세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d. 회사의 자산을 혼돈되지 않게 구분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한다. e. 회사는 본인 명의로 영업하여야 하고 조직적 형식을 엄격히 준수하여 독립적인 존재를 유지해야 한다. f. 회사의 독립적인 재무제표를 유지해야 하고 제3자의 어떠한 재무 제표에 본 회사의 자산이 보이게 하며, 회사의 자산이 회원사의 종합적 재무제표에 포함될 경우 적당한 부호로 표시하여 본 회사의 자산과 신용이 회원사나 기타 사람들의 채무나 기타 의무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g. 회사는 자신의 부채와 비용을 자체적인 자금조달을 통해 충당해야 하고 회원사의 추가적인 자금납부를 통해 충당하여서는 아니된다. h. 회사 관련 기업과의 거래는 아니되고 공정한 원칙하에는 가능하다. I. 회사는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j. 회사의 의무에 충실하여 신용이나 자산을 hold out하면 아니되고 k. 회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일반 비용지출을 분배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l. 회사의 독립된 양식의 문서, 인보이스, 수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m. 회사의 질권설정된 자산에 대해 어떠한 부채나 의무를 제3자한테 benefit을 주면 아니된다. n. 회사의 잘못된 오해를 풀어야 한다. 8. 연도별 예산. 이사회는 2009년 이후부터 매회 회계연도 시작전 90일 전에 운영예산과 자본예산에 대해 논의 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다음 회계연도 시작전에 운영예산과 자본예산을 Exhibit B에 있는 형식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각각의 운영예산과 자본에산은 조달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통해 매 회계연도 시작전 20일전에 예산이 합의를 보게 하여야 한다. <제5조 자본 출자와 비용> A . 초기 자본 출자와 비용

	KNOC와 Song 은 첨부 C에 따라 초기 출자를 함. 멤버들은 첨부 C의 비율에 따라 회사의 요청에 의해 비용을 지출함. B . 추가 자본 출자와 비용 멤버들은 때때로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추가적인 자본을 납입해야 함. 멤버는 본인의 지분 비율이 달라진 경우에, 회사가 요청하는 비용의 지분율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C . 출자에 대한 대가 멤버는 자본 계좌나 자본 출자에 대하여 배당이나 이자를 받을 자격이 없음. 갚지 않은 자본 출자는 회사나 다른 멤버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음. 멤버는 회사가 다른 멤버의 자본 출자 대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어떠한 현금이나 자산에 대해 출자나 대출할 필요가 없음 D . 자본 계좌 자본 계좌는 각 멤버마다 설립되고 유지됨. 각 멤버의 계좌는 아래 사항에 의해 증가함 (1) 멤버가 회사에 낸 현금 출자 금액 (2) 멤버가 회사에 현물 출자 가치에 동의 (3) 재무부 규정 1.704-1 B4i 조에 기술된 면세를 포함하여 회사 멤버 소득과 이득의 할당 (4) 회사가 멤버들에게 한 현금 배당 (5) 회사가 멤버들에게 한 현물 배당 (6) 705 a2B 조에서 기술된 회사의 지출에 대한 멤버들의 할당 (7) 재무부 규정 1.704-1 B4i 조나 에 기술된 것들을 포함한 회사의 손실이나 공제의 할당. 그러나 재무부 규정 1.704-1 b4i 나 1.704 b4iii 조에 기술된 손실이나 공제는 (7)에서 제외. 멤버의 자본 계좌는 재무부 규정 1.704-1 b2iv 나 1.704-1 b4iii 조에 기술된 바에 따라 허가되고, 그리고 재무부 규정 1.704-1 b2iv 과 1.704-1 b4 조의 필요에 의해 유지되고 조정됨. 여기에는 멤버 자본 계좌의 가치를 반영한 자산이 조정되고, 그 조정은 재무부 규정 1.704-1 b2iv 조에 의한 각각에 해당되는 세금을 배분하기 보다는 감가상각, 소모, 할부상환, 장부에 계상된 이득과 손실을 반영함. <제7조 분배와 할당> A . 정기 분배

	(1) 위원회는 회사의 자금이 지불에 필요한 의무 수준 이상으로 지나차게 보유하고 있거나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의무나 책임 수준보다 과도하게 유보할 경우 결정함 (2) 위원회는 회사가 멤버들에 대해 계약이나 법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결정함 초과 현금의 분배는 각 회계 분기 마감 후 45일 내에 지분율에 의거하여 멤버들에게 이루어짐 B . 멤버 인출 이 약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해산과 청산에 따른 분배와 할당과 같은 회사로부터의 멤버들의 인출은 불가함 C . 할당 규정에서 필요로 하는 상황을 제외하고, 소득, 이득, 손실, 공제의 각 항목에 따른 소득세와 세액 공제는 그들간의 분배율에 따라 할당 된다. D . 이자 변동 멤버 이자에 할당되는 소득, 이득, 손실, 공제 항목들은 멤버쉽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에, 회기 연도의 비율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전용되어 할당됨. 이 때에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나 현금 분배가 멤버들 사이에 양도된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그러나 할당은 재무부 규정 706조에 의거하여 허용되는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별첨3-1 유한책임조합계약서(Amended and Restated Agreement of Limited Partnership)]

구 분	주 요 내 용
계약 목적	ANKOR유전지분 인수를 위해 미국 델라웨어주에 설립된 파트너쉽(KOA Energy Limited Partnership)의 무한책임사원 KOA Energy LLC (AEPH의100% 자회사, GP)와 유한책임사원 Korea Investment ANKOR LLC (본건 투자회사의100% 자회사, KIA, LP), AEPH 사이의 책임과 권리에 대한 합의서
계약 당사자	- ANKOR E&P HOLDINGS CORPORATION (KOA Energy LLC에 대한 100% 출자자) - KOA ENERGY LLC(파트너쉽의 무한책임사원) - Korea Investment ANKOR LLC (파트너쉽의 새로운 유한책임사원)
파트너쉽 의사결정	- 파트너쉽의 주요 경영권에 대해서는 GP가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이를 행사하나, 주요한 경영행위 (대출, 차입, 보증, 신규자산매입, 합병, 출자, 지분의 발행/매입, 매각/인수)에 대해서는 LP에게 서면통보를 해야 하며, 이러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신의성실의 의무를 가지고 파트너쉽의 이익을 고려해야함
GP 면책	- GP는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함

<table>
<tr><td></td><td>- 단, GP와 파트너쉽은 본계약에 따른 권한 행사 결과 발생한 손실에 대해, LP에 대해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그리고 GP는 파트너쉽에 대해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 제외)</td></tr>
<tr><td>LP 권리</td><td>- 사전 동의권(GP가 LP 지분 과반수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
· 자산의 처분 (단, 배당이나 청산, Tag Along Right, Drag Along Right 행사, 담보권 설정, 강제 경매 등은 제외)
· 합병, 조직변경 또는 동 사항에 대한 확약 및 동의
· 제3자에 대한 파트너쉽 증권 발행
- 의결권
· 1 Common Unit 당 1 의결권
· 의결前 10 ~ 60일 사이에 장소·시간통지함
- 비용 납입 의무
· LP는 파트너쉽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Capital Account의 결손을 보충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단, LP는 GP의 비용 청구가 있는 경우 비용 납입의무 부담(1 Common Unit 당 1 USD)
- 환급 금지
· LP는 본 계약 및 파트너쉽 종료에 의한 배분 등을 제외하면 비용 납입금 반환 청구권이 없음
- Buyout
·LP는 2025년말을 기준으로 AEPH에게 모든 지분을 Buyout Price(*)에 양도해야 하고, AEPH는 본 계약상 LP의 권리·의무를 인수하고, LP에게 Buyout Price를 지급하여야 함.

(*) Buyout Price의 결정
<table>
<tr><th>Scenario</th><th>Buyout Price per Common Unit</th></tr>
<tr><td>LP Net Property Value 이 0 이상</td><td>LP Net Working Capital / Common Units</td></tr>
<tr><td>LP Net Property Value 이 0 미만;
LP Net Property Value > LP Net Working Capital</td><td>1$ / Common Units</td></tr>
<tr><td>LP Net Property Value 이 0 미만;
LP Net Property Value < LP Net Working Capital</td><td>(LP Net Working Capital - LP Net Property Value) / Common Units</td></tr>
</table>
·Net Working Capital(순운전자본): 파트너쉽의 유동자산(미래의 채무나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보유한 유보금을 포함) - 파트너쉽의 유동부채
·GP는 Closing 후 15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독립된 제3자에게 Buyout</td></tr>
</table>

<table>
<tr><td></td><td>Price의 평가를 의뢰해야 하고, 위 제3자가 Buyout Price를 결정한 즉시 이를 LP와 AEPH에게 통지하고 평가 보고서를 제공해야함.
위 Buyout Price에 의한 LP 지분의 매매는 그러한 통지가있은 날로부터 10일~20일 사이 GP가 지정한 날 이뤄짐.
・Net Property Value(순자산가치): 파트너쉽의 석유·가스 자산(매립 비용 제외) 및 장기자산의 공정가격 - 장기부채</td></tr>
<tr><td>지분 양도</td><td>- LP
・LP는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 양도 가능
<table><tr><th>LP가 지분 양도할 수 있는 경우</th><th>지분 양수인이 LP가 되기 위한 요건 (대체 파트너 요건)</th></tr><tr><td>①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에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Permitted Transfer)로서, 지분 양수 받은 파트너가 12개월 이상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유지; 혹은
② GP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혹은
③ Article VIII에 따른 지분 양도</td><td>① 지분 양도가 ‘publicly traded partnership’* 에 해당하거나 법령 위반이 아닐 것;
② 양도인 및 GP가 서면으로 파트너 교체에 동의할 것(단, 다른 파트너가 지분을 양수할 경우 GP의 동의는 필요 없음);
③ 양수인이 관련 비용을 지급할 것;
④ 양수인이 본 계약에 구속될 것임을 약정</td></tr></table>* ‘publicly traded partnership’: 지분이 증권시장 등에서 거래됨으로써 Corporation으로 간주(USC Section 7704)
** 만약 지분 양수인이 ‘대체 파트너 요건’(Substituted Partners)을 충족 못할 경우, 파트너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관련법령에 따라 지분양수인의 지위에 머무름

- GP
・GP는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 양도 가능
①다른 파트너에게 지분을 양도할 것
②LP 지분 과반수의 사전 동의가 있을 것
③양수인이 GP로서의 의무를 인수할 것에 동의</td></tr>
<tr><td>Administra-tive Fee</td><td>- GP가 사용한 실비의 보전 외에도 파트너쉽 수입의 0.1%를 Administrative Fee로서 분기별 지급</td></tr>
<tr><td>배당</td><td>- 향후 발생 할 수 있는 비용등을 고려한 유보금(Reserve) 및 복구비 사전 적립금을 제외하고, 비용 청구나 부채발생이 필요 없을 수준에서, 수익을 각 사원(Partner)</td></tr>
</table>

	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배당 (*) 배당금 = 분배 대상 분기 매출액 - 개발비(CAPEX) - 운영비(OPEX) - 법인세 - 복구비적립금 - 2개월 예상 비용 단, 복구비적립금은 매분기 $471,000을 펀드 만기 시점까지 적립
Tag Along Right	- AEPH가 ANKOR유전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 하고, 무한책임사원(GP)이 Drag Along Right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무한책임사원(GP)은 유한책임사원(LP)에게 매각 30일전에 양수인, 양도가격 등 통지 해야 함. 통지 수령후 15일 이내 유한책임사원 지분의 과반수 찬성으로, 무한책임사원은 파트너쉽의 보유지분을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매도하도록 함
Drag Along Right	- AEPH가 ANKOR유전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 할 경우, 무한책임사원(GP)은 그와 동일한 조건으로 파트너쉽이 보유한 지분을 함께 매각할 수 있음. 단, 동 권리의 실행은 7년간 LP의 동의를 받아야함
자산 양도	- 2025년말 기준으로, LP는 파트너쉽의 유한책임사원 지분전부를 AEPH (Original Limited Partner)에게 USD 1에 양도하고 본 계약상 유한책임사원으로서의 의무에서 벗어남
재무정보의 관리	GP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LP에게 제공해야 함; -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외부 회계법인이 감사한 연도말 연결 재무제표 (GAAP에 따라 작성된 제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등) - 매 분기말로부터 45일 이내, 분기말 기준 제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 Schedule K-1 - 매해 3월15일 전까지, 직전년도말 기준 유보금보고서(Reserve Report)
재무정보의 열람 등	GP는 LP 등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 그에게 파트너쉽의 모든 장부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함. 단,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LP에게 일정기간 기밀정보(logs, well reports, drilling data)에 대한 접근을 거부할 수 있음
대주주 변경	- 요건 (i) AEPH 혹은 한국석유공사 이외의 제3자가 GP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거나; (ii) GP의 조직변경, 합병, 주식교환, 혹은 자산의 전부 혹은 중요부분의 처분으로 인해 AEPH 혹은 한국석유공사 이외의 제3자가 GP 경영권의 50% 이상을 취득하거나; 혹은 (iii) GP의 지분권자가 GP의 청산이나 해산을 승인한 경우 - 대주주 변경 통지 GP는 LP에게 예정된 대주주 변경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늦어도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함. GP로부터 대주주 변경 통지를 받은 LP는 본 계약을 해지 가능
탈퇴, 해산, 계약의 금지	- GP 탈퇴 금지 ・GP는 LP의 과반수 지분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지분을 타에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트너쉽이 해산될 때까지 탈퇴가 허용되지 않음 - LP의 해지권 ・LP는 GP로부터 대주주 변경(Change of Control)을 통지 받은 경우 본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음 - LP의 해산 등 ・LP의 해산이나 파산, 탈퇴는 파트너쉽의 존속에 영향이 없음 - 파트너쉽의 해산 ・파트너쉽은 2041년 12월 31일 혹은 아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산함 (i) GP의 파산, 탈퇴, 청산, 해산(합병등에의한경우는제외) (ii) 델라웨어州법상 해산사유의 발생
진술·보장의 내용	각 Partner는 개별적으로 다른 Partner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진술 및 보장함 (i) 각 Partner는 유효하게 존속함 (ii) 각 파트너는 본 계약의 당사자로서 그에 구속됨 (iii) 본 계약의 체결이 관련 법령이나 정관 등에 위배되지 않음 (iv) 지분 취득은 대리인의 지위가 아닌 자신의 계산에 의한 것이고, 다시 양도할 의사로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교섭하지 않았음 (v) 증권거래법령에 따라 지분증권의 발행이 면제되므로, 각자 지분은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였음 (vi) 각 파트너는 지분 투자의 위험을 평가할 능력과 식견을 갖고 있음을 확인함. 또한 본 건 투자가 원본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하고, 지분 취득은 높은 위험 부담을 부담하며, 지분양도에는 중대한 제한이 있고 공개 시장이 없으며 따라서 긴급 상황에서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함

[별첨3-2 매매 및 출자계약서(Amended and Restated Sales and Contribution Agreement)]

구 분	주 요 내 용
계약 목적	파트너쉽(KOA Energy LP)의 설립을 위해, GP에 ANKOR유전 29.5%를 현물출자 할 AEPH, 파트너쉽에 ANKOR 유전지분 29.5%를(29%는 매매를 통해, 0.5%는 현물출자를 통해) 양도할 GP, 위 파트너쉽에 현금출자(ANKOR 유전지분29.0%에 상당)를 통해 유한책임사원 지분을 취득할 LP간의 계약
계약 당사자	- ANKOR E&P Holdings Corporation(AEPH) - KOA Energy LLC(GP) - Korea Investment ANKOR LLC(KIA) - 파트너쉽(KOA Energy LP)
양도 자산	- “Leases”: Oil, Gas, Mineral 임차권(leases) 및 통행권(rights-of-way) 등 Exhibit A-1에 기재된 재산 / “Wells”: Hydrocarbons, source water, CO_2 등 Exhibit A-2에 기재된 재산 - “Units”: Leases 혹은 Wells를 포함한 토지 / “Properties”: Leases, Wells, 및 그에 속한 주택, 토지 및 그 부속물 등 - 양도 가능한 AEPH의 Properties 관련 계약

<table>
<tr><td></td><td>- 양도 가능한 AEPH의 인허가 등
- 기계, 장비, 구조물, 드릴링 플랫폼, 파이프라인 등
- AEPH가 보유한 지진, 지질 등 데이터(위 정보에 대한 분석은 제외)</td></tr>
<tr><td>이전 제외 자산</td><td>- 권리하자(Title Defect,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의 수익을 거두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로 제외되는 자산: (i) KIA가 AEPH에게 통지한 권리하자가 Closing 전에 치유되지 않거나 KIA가 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ii) AEPH가 계속 보유하기로 결정하여 대금에서 공제한 경우
- 환경하자(Environmental Defect, 환경법 위반이거나 채무를 야기할 수 있는 사건들 중, 별지(Schedule)를 통해 공개하지 않은 것)로 제외되는 자산:
(i) KIA가 AEPH에게 통지한 환경하자가 Closing 전에 치유되지 않거나, KIA가 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ii) AEPH가 이전제외자산으로 간주하여 대금에서 공제한 경우</td></tr>
<tr><td>효력발생일 (Effective Time)</td><td>- 효력발생일(Effective Time): 2011년 1월 1일 오전 7시(미국 중부 표준시)
- ANKOR유전지분은 위 계약종결일(Closing Date)에 파트너쉽에 이전되지만,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등은 위 자산이전기준시점(Effective Time)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LP의 현금출자액을 조정함</td></tr>
<tr><td>Closing 전 예비정산보고</td><td>- 예비정산보고서기간: AEPH는 늦어도 Closing으로부터 5영업일 전에 앞서 20 영업일간 예비정산을 실시하여, 대금 조정을 반영한 예비정산보고서(Preliminary Settlement Statement)를 매수인에게 제출해야 함
- 대금의 조정
<table>
<tr><th>증액(upward)</th><th>감액(downward)</th></tr>
<tr><td>효력발생일 전 발생한 양도자산 관련 수입으로서 파트너쉽(매수인)이 지급받은 금액</td><td>효력발생일 후 발생한 양도자산 관련수입으로서 AEPH가 지급받은 금액</td></tr>
<tr><td>효력발생일 후 발생한 운영비용(Property Cost)으로서 AEPH가 지급한 금액</td><td>효력발생일 전 발생한 운영비용으로서 파트너쉽(매수인)이 지급한 금액</td></tr>
<tr><td>파트너쉽(매수인)이 부담할 조세를 AEPH가 납부한 경우</td><td>AEPH가 부담할 조세를 파트너쉽이 지급할 경우 권리 하자(Title Defect, 자산이 일정 수준이하의 수익을 거두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과 관련한 감액(개별 권리하자는 최소 $250,000, 전체 권리하자 합계는 최소 $20,000,000 이상일 것)</td></tr>
<tr><td>기타</td><td>환경 하자(Environmental Defect), 환경법 위반이거나 채무를 야기할 수 있는 사건들 중, 별지(Schedule)를 통해 공개하지 않은 것)와 관련한 감액(개별 환경 하자는 최소 $250,000, 전체 환경 하자 합계는 최소</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td></td><td><table>
<tr><td></td><td>$10,000,000 이상일 것)</td></tr>
<tr><td></td><td>권리하자(Title Defect)과 관련한 감액(개별권리하자는 최소 $250,000, 전체 권리하자합계는 최소 $20,000,000 이상일 것)</td></tr>
<tr><td></td><td>권리하자, 환경하자와 관련하여 이전대상에서 제외된 경우</td></tr>
<tr><td></td><td>기타</td></tr>
</table></td></tr>
<tr><td>Closing</td><td>- 종결 조건
<table>
<tr><th>AEPH/KOA 측 선행조건</th><th>KIA 측 선행조건</th></tr>
<tr><td>AEPH와 KOA의 진술/보장이 중요한 점에서 사실일 것</td><td>KIA의 진술/보장이 중요한 점에서 사실일 것</td></tr>
<tr><td>AEPH, KOA, 파트너쉽(매수인)이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td><td>KIA가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td></tr>
<tr><td>계류 중인 소송이나 분쟁이 없을 것, 본건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판결이 없을 것</td><td>계류 중인 소송이나 분쟁이 없을 것, 본건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판결이 없을 것</td></tr>
<tr><td>권리하자 혹은 환경하자로 인한 조정금액의 합계가 [$1,000,000]을 초과하지 않을 것</td><td>권리하자 혹은 환경하자로 인한 조정금액의 합계가 [$1,000,000]을 초과하지 않을 것</td></tr>
<tr><td>Closing 서류(Section 9.3.)의 교부</td><td>Closing 서류(Section 9.3.)의 교부</td></tr>
<tr><td>계약체결 이후 중대하게 불리한 변화(Material Adverse Effect)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td><td>해당 없음</td></tr>
<tr><td>KIA의 허가 등: (i) 해외자원개발사업법상 등록, (ii) 자본시장법상 펀드의 등록, (iii) 외국환거래법상 해외투자 신고, (iv) 기타</td><td>AEPH, KOA가 본건 거래에 필요한 정부 동의 등을 받을 것</td></tr>
</table>
- 일시/장소

・[], 2011 / Vinson & Elkins LLP in Houston, Texas 혹은 상호 합의한 장소</td></tr>
</table>

<table>
<tr><td></td><td>- 서류 등 교환
<table>
<tr><th>Closing Obligation</th><th>Responsible</th></tr>
<tr><td>Transfer Documents(Bill of Sale 등 자산양도 관련 서류)의 교부</td><td>AEPH</td></tr>
<tr><td>First Amended and Restated Agreement of Limited Partnership</td><td>AEPH, KOA, KIA</td></tr>
<tr><td>예비정산보고(Preliminary Settlement Statement)</td><td>AEPH, KIA</td></tr>
<tr><td>투자자는 예비정산보고상 현금 출자액을 파트너쉽(매수인)에게 지급</td><td>KIA</td></tr>
<tr><td>예비정산보고상 현금 출자액을 KOA GP에게 지급</td><td>파트너쉽</td></tr>
<tr><td>Treasury Regulation 1.1445-2(b)(2)상의 서류</td><td>AEPH, KOA</td></tr>
<tr><td>진술/보장이 진실하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했다는 내용의 확인서</td><td>AEPH, KOA, KIA</td></tr>
<tr><td>정관 등 설립에 관한 서류, 이사회 등의 의결, 임원의 재직증명 등</td><td>AEPH, KOA, KIA, 파트너쉽</td></tr>
<tr><td>기타</td><td></td></tr>
</table>
- 이전 시기 및 귀속 시점

・양도자산의 이전 시점: 양도자산은 Closing 때 AEPH에서 파트너쉽으로 양도됨

・양도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입 및 운영비용의 귀속 주체: 양도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운영비용은 효력발생일(2011. 1. 1. 07:00 AM, Central Time)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AEPH가, 그 이후에는 파트너쉽에게 귀속됨

- Signing Payment

・KIA는 Closing 당일 AEPH에게 보증금의 계약체결일로부터 Closing까지의 기간 동안 연1.5%의 비율을 매수가격에 적용한 금액(“Signing Payment”)을 지급함. 위 금액은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반환되지 아니함</td></tr>
<tr><td>최종정산보고
[D-Day ~ D+180]</td><td>AEPH는 Closing 후 180일안에 최종정산보고서 (Final Settlement Statement)를 제출해야함</td></tr>
<tr><td>이의제기
(Dispute Notice)
[D+30 ~ D+210]</td><td>파트너쉽은 최종정산보고서 수령 30일이내에 AEPH에게 최종정산보고서의 수정사항과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함(“Dispute Notice”). 최종정산보고서를 상호 합의할 경우, 그 가격은 최종매수가격이 됨</td></tr>
<tr><td>사업수행과 관련된의무</td><td>Closing 후 AEPH 및 그 계열회사는
(i) 종전과 같이 관련 계약 및 법령에 따라 자산을 관리하고,</td></tr>
</table>

	(ii) 회계장부 등을 기록하며, (iii) 중요계약의 위반/변경·해지/자산 관련 소송등을 KIA에게 서면통지하여야 하고, (iv) 본건 전에 체결된 관련 계약(본건 계약에 별첨자료로 제공하여야 함)을 해지하거나 중요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아니되며, (v) 정상적인 사업수행과정이나 관련 계약에 따른 것을 제외하고는 자산의 중요 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서는 아니되고, (vi) 적정규모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vii) 자산과 관련하여 우선매수권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책임의인수	파트너쉽은 그 지분에 비례하여 자산의 사용, 소유,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단, (i) 이전제외자산과 관련된 책임, (ii) 별지 목록에 기재된 소송으로부터 발생한 책임, (iii) 유독물질을 자산이외의 장소로 처분하거나 운송한 AEPH나 그 계열회사의 책임, (iv) Income Tax 혹은 Franchise Tax, (v) 효력발생일 이전기간의 책임 등은 제외
Title Matter & Environment Matter	- AEPH와 GP는 유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진술과 보장을 제공 - 매매 및 출자계약서(Sales and Contribution Agreement) 체결 시점부터 계약종결일까지 이전대상 자산, 회계장부 등에 대하여 실사를 진행함 - 권리하자(Title Defect,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의 수익을 거두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혹은 환경하자(Environmental Defect, 환경법 위반이거나 채무를 야기할 수 있는 사건들 중 양도인 측이 공개하지 않은 것)와 관련하여 현금출자액을 감액할 수 있음. 단, 권리하자는 개별 권리하자 액수가 25만 불을 넘고, 전체 권리하자 합계액이 2천만 불을 초과한 경우에만, 환경하자는 개별 환경하자 액수가 25만 불을 넘고, 전체 환경하자 합계액이 1천만 불을 초과한 경우에만 감액이 허용됨 - 권리하자 및 환경하자로 인한 현금출자액의 감액은 [1백만불]을 초과 할 수 없음"
면책	- KIA AEPH, KOA는 자신의 진술보장/확약사항 위반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이전 제외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Closing 전기간 AEPH가 소유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상해나 사망에 대한 배상책임, Income Tax 혹은 Franchise Tax (일정한 경우 제외) 등으로부터 KIA 및 그 계열회사를 면책시킴 - AEPH, KOA KIA는 자신의 진술보장/확약사항 위반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AEPH, KOA를 면책시킴 - 파트너쉽 파트너쉽은 자신이 인수한 책임(Section 13.1.)과 관련하여, KIA, AEPH, KOA 등을 면책시킴
책임의제한	(i) KIA 혹은 파트너쉽이 AEPH 및 KOA에게 통지한 AEPH의 개별손해배상액이 $250,000를 초과하고 (ii) AEPH의 손해배상액의 합계가 $500,000을 초과할 경우, $500,000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함. AEPH와 KOA는 어떤 경우든 대금의 10%를 초과하여 KIA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음.
Material Adverse Effect	계약종결일(Closing) 이전에 양도자산이 훼손, 소실, 파괴, 수용되고 그로 인해 운용에 중대한 장애가 야기될 경우, LP는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해지	- 요건 (i) KOA 측 선행조건이 Closing 까지 충족되지 못한 경우, (ii) AEPH/KOA 측 선행조건이 Closing 까지 충족되지 못하고 KOA의 통지를 받은때로부터 10일내 치유되지 않은 경우, (iii) 계약종료일까지 Closing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iv) AEPH와 KIA가 상호합의한 경우 - 효과 (i) Deposit(보증금): AEPH가 몰취하거나, 혹은 AEPH가 보증금을 몰취 할 수 없는 경우, AEPH는 보증보험을 KIA에게 즉시 반환하고 위 보험상 권리를 KIA에게 양도하여야 함
준거법	미국 델라웨어州 법

[별첨4-현금흐름 및 수익률 산출 내역]

가) 주요가정

구분	내용
평가기준일	2012년 1월 31일
평가기간	2011년 1월 1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15년)
매입기준일	2011년 9월 30일
생산량	- William M. Cobb & Associates 매장량평가보고서 (평가기준일:2011년1월1일) 기준 - 기술적 실현가능성 고려: Proved: 100%, Probable: 90%, Possible: 0%인정
가격	회사와 컨소시엄사 간의 협의를 통해 도출한 가격을 적용
위험회피	- 유가: 매입기준일로부터 7년간 WTI가격을 기준으로 1) 예상 Notional Quantity의 51% 수준에 대해 FWD 매도 (Strike $90/bbl), Call Option 매수 (Strike $180/bbl) 및 2) 예상 Notional Quantity의 24% 수준에 대해 Put Option 매수 (Strike $75/bbl)방식의 헤지(Hedge)계약 실행 - 환율: 매입기준일로부터 7년간 Forward 방식의 헤지계약 실행(행사가격: KRW 1,165/USD)(예상 Notional Quantity의 65% 수준)
세제	- 미국 ・Federal Income tax rate (35%) ・Severance tax(취득세), Ad valorem tax(생산세), State income tax 없음 ・Franchise Tax : 상한액인 년 180,000불 반영 ・감가상각: 광업권은 공정가액(매입제안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기간인 15

	년간 생산량 비례법으로 상각 - 대한민국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국내 Mutual fund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 본 프로젝트의 경우 이에 해당하여 과세소득금액이"0"이 됨.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특례 :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 세액이 있는 경우 당해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국외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 (이하"국외원천소득")의 14%를 한도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차감하거나, 동 외국납부 세액이 납부할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 받을 수 있음. 본 프로젝트의 경우 국외원천소득의 14% 금액 환급
잔존가치	평가기간 종료 시 매입지분의 잔존가치는 "0" 으로 가정
기타	- 운용보수 : 펀드 순자산가액의 25bp/년 - 기타 보수 : 펀드 순자산가액의 10bp/년 - 판매수수료 및 총액인수 수수료 : 모집금액 대비 150bp 및 200bp(1회) - 한국무역보험공사 보험료: 보험기간 10년, 보험료율 0.41% 적용

나) 추정현금흐름

구분	단위	합계	2011	2012	2013	2014	2015~2025
Net Revenue 주1)	USDmn	946.9	100.9	108.9	102.9	87.0	547.3
(-) 운영비용 (Opex)	USDmn	(-)287.7	(-)22.9	(-)24.1	(-)25.9	(-)24.3	(-)190.5
(-) 자본적 지출 (Capex)	USDmn	(-)95.5	(-)33.5	(-)40.3	(-)1.9	(-)1.3	(-)18.5
(-) Other Expenses	USDmn	(-)3.6	(-).3	(-).3	(-).3	(-).3	(-)2.5
Cash Distribution	USDmn	560.1	44.2	44.2	74.8	61.0	335.8
Cash Distribution	USDmn	550.6	43.5	43.5	73.6	60.0	330.1

from KOA LP							
(-) US Federal income tax	USDmn	(-)80.3	(-).9	(-).6	(-)12.7	(-)9.9	(-)56.2
(±) Oil Price 헤지	USDmn	26.0	-	3.7	5.2	4.4	12.7
Cash Flow(Fund)	USDmn	496.4	42.6	46.5	66.1	54.5	286.6
예상 환율 주2)	KRW/ USD			1,154	1,112	1,127	1,119
Cash Flow	억원	5,476	469.4	509.3	737.4	612.9	3,146.7
(±) FX hedge	억원	103	-	6.9	22.8	15.1	58.5
(+) Tax return	억원	334	3.7	10.9	51.9	41.0	226.2
(-) 매입제안 가격	억원	(-)3,389	(-)3,389.0	-	-	-	-
(-) 판매수수료	억원	(-)122.50	(-)122.5	-	-	-	-
(-) 보험수수료	억원	(-)58.337	(-)58.3	-	-	-	-
(-) 자문료	억원	(-)18	(-)17.6	-	-	-	-
(-) 옵션매입 비용	억원	(-)140	(-)140.0	-	-	-	-
(-) 운용보수	억원	(-)70	(-)2.0	(-)11.9	(-)10.9	(-)9.4	(-)35.3
Working Capital	억원	181	(-)205.6	(-)55.8	(-)95.6	(-)91.4	629.0
합계	억원	2,297	(-)3,461.0	459.4	705.7	568.1	4,025.1
현금유입기준 IRR : 10.0%							

다) 현금흐름 세부내역

1) Production Profile

ANKOR 유전의 생산량은 매장량 평가기관인 William M. Cobb & Associates의 Production Profile (평가기준일: 201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2025년 까지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현금흐름을 추정하였습니다. 한편, 기술자문기관의 자문결과를 토대로 회사와 컨소시엄사 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하여 Proved, Probable 및 Possible에 대해서 각각 100%, 90%와 0%의 기술적 실현가능성을적용하였습니다.

구분	단위	합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2025
원유								
Proved	mbbl	5,819	818	652	582	555	518	2,694
Probable	mbbl	3,044	40	313	447	303	266	1,676
Oil Subtotal	mbbl	8,863	858	965	1,028	858	784	4,370
천연가스								
Proved	mmcf	15,114	2,490	1,815	1,629	1,672	1,399	6,110
Probable	mmcf	9,918	310	1,607	1,710	1,275	908	4,107
Gas Subtotal	mmcf	25,032	2,799	3,422	3,339	2,947	2,307	10,218
Total Production	mboe	13,179	1,340	1,555	1,604	1,366	1,182	6,131

2) Net Revenue

2011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하는 Net Revenue (Gross Production에서 Government royalty 및 Overriding royalty를 차감하고, 천연가스 생산에 따른 Shrinkage factors을 고려한 Net Production 기준의 수익)는 아래와 같으며, 전체 Net Revenue 중 약 83%가 원유 생산으로부터 발생됩니다.

구분	단위	합계	2011	2012	2013	2014	2015~2025
원유							
Proved	USD mn	497.9	85.4	63.4	46.5	44.4	41.5
Probable	USD mn	252.0	4.1	25.8	35.7	24.3	21.2
Subtotal	USD mn	749.9	89.5	89.2	82.3	68.6	62.7
가스							
Proved	USD mn	81.5	10.0	9.4	9.2	9.5	8.1
Probable	USD mn	55.5	1.2	8.3	9.7	7.3	5.2
Subtotal	USD mn	137.0	11.2	17.8	18.9	16.8	13.3
Net Revenue	USD mn	887.0	100.6	107.0	101.1	85.5	76.0

3) Price Forecast

본 투자회사의 원유 및 천연가스 가격은 ANKOR 유전의 생산물 실제판매가격 및 WTI의 가격추이를 바탕으로 회사와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컨소시엄사 간의 협의를 통해 도출한 가격을 적용하였습니다.

- 원유 가격

원유 가격는 세 기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였으며, 각 기간별 예상 유가 및 적용 유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적용기간	예상유가	적용유가	비고
2011.1 ~ 2011.9 (헤지기간 이전)	USD 106/bbl	USD 106/bbl	2011년 1월부터 8월까지 ANKOR 유전의 생산물 실제 판매 유가의 평균치 적용. 해당유가는 LLS 및 HLS와 WTI간의 Premium이 반영된 금액임
2011년 하반기 ~ 2018년 상반기 (헤지기간)	USD 80/bbl	USD 85/bbl (75%물량) USD 80/bbl (25%물량)	헤지한 75%의 물량 중 FWD 매도 가격을 체결하는 51%(예상) 물량에 대해서는 헤지가격 USD 90/bbl을 그리고 Put Option을 체결하는 24%(예상)물량에 대해서는 헤지가격 USD 75/bbl 적용, 헤지하지 않은 25%의 물량에 대해서는 예상유가인 USD 80/bbl을 적용
2018년 하반기~ 2025년 상반기 (헤지기간 이후)	USD 100/bbl	USD 100/bbl	헤지 기간 이후 시점부터 펀드만기시점 적용

주) 헤지(Hedge) 행사가격 및 계약 구성(FWD 비율)은 추후 계약에 따라 변동이 가능함
2012년 1Q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실제 평균 가격인 $90/bbl을 적용하여 분석함

- 천연가스 가격

천연가스 가격은 2015년까지 블룸버그(Bloomberg) 예측가격을 사용하였으며, 2015년 이후 가

격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가정하였습니다. 기간별 적용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천연가스의 경우 생산 물량의 비중이 낮아 별도의 헤지(Hedge)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분	단위	2011	2012	2013	2014	2015 이후
천연가스 가격	USD/mcf	4.00	5.19	5.65	5.71	5.78

- LLS & HLS - WTI Premium

WTI 대비 LLS(Light Louisiana Sweet) 및 HLS(Heavy Louisiana Sweet) Premium은 추세 및 전망치를 바탕으로 2011년 하반기와 2012년에 각각 USD 10/bbl 및 USD 10/bbl을 적용하였습니다.

2011년 및 2012년 LLS & HLS - WTI Premium으로 인한 수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생산량(mbbl)	Premium(USD/bbl)	Revenue(USD mn)
2011년 4분기	214	10	2.1
2012년	965	10	9.6

ANKOR 유전의 원유는 BP를 통해 매출되며, 이때 적용되는 가격은 LLS 혹은 HLS와 WTI 간의 가격 차이를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HLS 혹은 LLS 와의 가격차이는 시장요인과 지리적요인에 따라 발생하며, 최근 아래와 같은 이유로 LLS와 HLS는 WTI대비 Premium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① 시장요인

캐나다와 미국을 연결하는 Keystone Pipeline 증설로 인해 Cushing 지역 재고부담이가중되어 LLS 및 HLS는 WTI 대비 가격 Premium이 존재합니다.

② 지리적요인

미국남부 주요 석유정제 집중지역(Houston & Port Arthur)과의 지리적 입지 및 접근성은 WTI 가격보다 Premium을 받을수 있는 요인을 제공합니다.

③ 전망

2013년초 Canada Keystone pipeline의 남부 정제기지까지의 증설이 완공되기 이전에는 Cushing 지역 재고해소가 어려워 LLS와 HLS의 WTI 대비 가격 Premium이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1년 LLS와 WTI 간의 가격 Premium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단위	AEPH판매가격	WTI	LLS-WTI Premium
2011년 1월	USD/bbl	92.0	89.2	2.8
2011년 2월	USD/bbl	93.0	88.6	4.4
2011년 3월	USD/bbl	113.0	102.9	10.1
2011년 4월	USD/bbl	121.0	109.5	11.5

출처) AEPH

4) 운영 비용

추정기간 동안의 연도 별 운영비용은 processing, pumping, 보험료 및 운송 비용 등으로 William M. Cobb & Associates의 Reserves Report 상 제시된 금액과 Energy Package Insurance와 관련한 회사의 추정금액을 적용하였습니다. 추정기간 동안의 유전펀드 귀속 운영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단위	합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2025
SIMBA	USD mn	101.39	6.46	6.88	8.11	7.92	7.49	64.52
SS230	USD mn	69.92	6.10	6.61	7.01	6.78	6.45	36.96
SM73	USD mn	77.92	7.00	7.01	7.35	6.30	6.14	44.12
SM58	USD mn	2.03	0.15	0.15	0.16	0.16	0.15	1.25
VR191	USD mn	20.90	1.61	1.61	1.70	1.66	1.69	12.63
SM27	USD mn	12.84	1.51	1.31	1.07	1.05	0.90	6.99
SS290	USD mn	2.67	0.08	0.46	0.48	0.47	0.36	0.81
Total	USD mn	287.67	22.92	24.05	25.88	24.33	23.20	167.29

5) 자본적 지출

추정기간 동안의 연도별 자본적 지출은 Facilities 및 Drilling 등 관련 금액으로 William M. Cobb & Associates의 Reserves Report 상 제시된 금액을 적용하였습니다. 추정기간 동안의 유전펀드 귀속 자본적 지출 추정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단위	합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2025
SIMBA	USD mn	32.8	-	24.6	0.8	0.9	1.1	5.4
SS230	USD mn	30.9	17.4	8.3	0	0.2	0	5
SM73	USD mn	8.6	3.3	0.4	0.2	0.1	0.8	3.8
SM58	USD mn	2.8	2.5	0.0	0	0	0	0.3
VR191	USD mn	0.3	-	0.0	0	0.1	0	0.2
SM27	USD mn	4.9	2.9	0.8	0.8	0	0	0.3
SS290	USD mn	13.8	6.9	5.6	0	0	0	1.3

Total	USD mn	93.9	33	39.6	1.8	1.3	1.8	16.3

6) Other Expenses

본 투자회사가 투자한 파트너쉽이 속해있는 Delaware州에 납부해야 할 Franchise Tax 를 연 USD 180,000 고려하며, Net Revenue의 0.1%를 GP에게 지급할 Administration Fee로 반영하였습니다. 추정기간 동안의 유전펀드 귀속 Other Expenses 추정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단위	합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2025
Other Expenses	USD mn	(-)3.5	(-).3	(-).3	(-).3	(-).3	(-).2	(-)2.2

7) 과세

상각금액을 고려한 Taxable Income금액을 기준으로 35%의 Federal Income Tax를 미국 과세당국에 납부하고, 대한민국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아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추정기간동안 유전펀드 귀속 납부 및 환급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US Income Tax

구분	단위	합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 2025
Net Revenue	USD mn	932.3	100.6	107.0	101.1	85.5	76.0	462.0
(-) Opex	USD mn	(-)289.0	(-)22.9	(-)25.3	(-)25.9	(-)24.3	(-)23.2	(-)167.3
(-) Capex	USD mn	(-)93.8	(-)33.0	(-)39.6	(-)1.8	(-)1.3	(-)1.8	(-)16.3
(-) Other Expenses	USD mn	(-)3.5	(-).3	(-).3	(-).3	(-).3	(-).3	(-)2.2
(-) Depletion	USD mn	(-)305.8	(-)31.1	(-)36.1	(-)37.2	(-)31.7	(-)27.4	(-)142.3
Taxable Income	USD mn	240.3	13.4	5.7	36.0	27.9	23.4	134.0

Federal Income Tax rate	%		35%	35%	35%	35%	35%	35%
US Federal income tax	USD mn	78.9	0.9	0.6	12.6	9.8	8.2	46.9

② 세액 환급(대한민국, 외국납부세액공제)

구분	단위	합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 2025
환급대상액 [min(①, ②)]	USD mn	31.6	0.4	0.2	5.0	3.9	3.3	18.8
① US Tax 납부세액	USD mn	78.9	0.9	0.6	12.6	9.8	8.2	46.9
② 외국과세소득금액 x14%	USD mn	31.6	0.4	0.2	5.0	3.9	3.3	18.8
예상환율 주)	KRW/ USD			1,154	1,112	1,127	1,119	1,154
환급세액	KRW	334	3.7	10.9	51.9	41.0	226.2	334

한편 관련 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관련규정	적용내용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	-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라 국내 Mutual fund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함. (따라서 100% 배당하는 경우 소득 0)

	공제]	- 배당가능이익 = 기업회계기준 상 법인세비용차감 후 당기순이익 + 이월이익잉여금(이월결손금) + 상법상 이익준비금
외국납부 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의 2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당해 소득이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의 14%를 한도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차감하거나, 동 외국납부세액이 납부할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에 따라 계산한 금액만큼 환급 받을 수 있음.

8) 원유 가격 헤지(Hedge)

운용사는 SWAP BANK와 협의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원유 가격 헤지(Hedge)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분	헤지(Hedge) 조건
헤지(Hedge) 방식	Forward + Deep OTM Call Option Buy 방식(Zero Cost) 및 Put Option 매입(Option Premium) 합성
헤지(Hedge) 기간	매입기준일로부터 7년
헤지(Hedge) 물량	헤지(Hedge) 기간 내 예상 생산량의 75% 수준 예상 생산량의 51% 수준을 FWD로 구성하며, 나머지 24%에 Put Option 매입 예정
헤지(Hedge) 가격	FWD : USD 90/bbl (가정) Call Option : USD 180/bbl Put Option : USD 75/bbl

주) 헤지(Hedge) 물량 및 행사가격은 추후 계약에 따라 변동이 가능함

한편,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단위	합계	2011 주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주1)
Oil Production	mbbl	6,333	858	965	1,028	858	784	720	568	552
Hedge 물량(Q)										
Hedged(FWD)	mbbl	2,722	-	492	525	438	400	367	290	211
Hedged(Put	mbbl	1,281	-	232	247	206	188	173	136	99

Option)										
Naked	mbbl	2,330	858	241	257	215	196	180	142	241
Oil Price & Price gap(P)										
Price (Naked)	USD/ bbl		90	83	80	80	80	80	80	80
Price (FWD Hedged)	USD/ bbl		90	90	90	90	90	90	90	90
Price Gap	USD/ bbl		-	7	10	10	10	10	10	10
Hedge (손)익	USD mn	26.0	-	3.7	5.2	4.4	4.0	3.7	2.9	2.1

주1) 2011년 4분기는 기거래된 가격을 반영하였으며 2018년은 1~3분기만 Hedge기간에 포함됨

9) F/X(Foreign Exchange) 헤지(Hedge)

운용사는 SWAP BANK와의 협의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F/X 헤지(Hedge)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분	헤지(Hedge) 조건
헤지(Hedge) 상품	Forward(Zero Cost)
헤지(Hedge) 기간	매입기준일로부터 7년
헤지(Hedge) 대상	예상 외화 유입액의 65% 수준
적용 조건	KRW 1,165/USD (가정)

주) 헤지(Hedge) 물량 및 행사가격은 추후 계약에 따라 변동이 가능함

상기와 같은 조건에서 F/X 헤지(Hedge)를 할 경우 헤지(Hedge)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 및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단위	합계	2011 주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주1)
대상현금흐름	USD mn	319.3	12.5	45.3	66.1	54.5	46.6	42.0	30.1	22.2
예상현물환율	KRW/ USD			1,154	1,112	1,127	1,119	1,110	1,090	1,090

Hedge 환율	KRW/ USD			1,165	1,165	1,165	1,165	1,165	1,165	1,165
환율 차이	KRW/ USD			11	53	38	46	55	75	75
헤지 (손)익	억원	103		7	23	15	16	17	14	12

주1) 2011년 4분기 및 2018년 1~3분기 귀속 분배금에 대해서만 헤지(Hedge)기간에 포함됨

출처) 한국은행

10) Working Capital

본 투자회사의 만기시 투자재상 유전의 유정(Well)을 구하기 위한 충당금 및 헤지(Hedge) 증거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유보금의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단위	2011	2012	2013	2014	2015	…	2024	2025
복구비용 전입 (환입)	억원	5	20	19	19	19	…	19	(-)253
Hedge 증거금 전입	억원	200	60	60	60	0	…	0	0
Hedge 증거금 환입	억원	0	0	0	0	0	…	0	0
Working Capital	억원	205	285	364	444	463	…	253	0
△ Working Capital	억원	205	(-)56	(-)96	(-)91	(-)87	-	(-)9	276

라) 민감도분석

매장량 중 Probable에 대한 기술적 실현 가능성 변동 하의 원금회수기간(Payback Period) 및 내부수익률(IRR)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헤지(Hedge)기간의 유가 : USD 80/bbl 기준)

구분	Probable 인정 비율

	80%	90%	100%
원금회수기간 (Payback Period)	6.7년	**6.3년**	5.9년
내부수익률(IRR)	8.6%	**10.0%**	11.4%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 해당사항 없습니다.

본 투자회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회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1기		
제2기		
제3기		

가. 요약재무정보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단위:원]

제무상태표			
항 목	제1기	제2기	제3기
	-	-	-
운용자산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실물자산 현금 및 예치금 기타 운용자산 기타자산			
자산총계			
운용부채 기타부채			
부채총계			
원본 수익조정금 이익잉여금			
자본총계			

(주 1) 결산 분배금이 있는 경우 계정 분류의 차이로 인하여 요약 재무정보의 부채 및 자본 항목과 나. 제무상태표의 금액이 상이합니다.

[단위:원]

손익계산서			
항 목	제1기	제2기	제3기
	-	-	-
운용수익 이자수익 배당수익 매매/평가차익(손) 기타수익			
운용비용 관련회사 보수 매매수수료 기타비용			
당기순이익			
매매회전율			

(주 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 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 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 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나. 제무상태표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손익계산서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단위:억주,억원]

기 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주수 (출자 지분수)	금액	주수 (출자 지분수)	금액	주수 (출자 지분수)	금액	주수 (출자 지분수)	금액
제1기								
제2기								
제3기								

(주 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3. 투자회사의 출자금에 관한 사항

가. 출자지분 총수

발행할 출자지분 총수	발행한 출자지분의 총수	미발행 출자지분의 총수

10억주	2만주	9억 9,998만주

나. 발행한 출자지분의 내용

- 주당 액면가액 (무액면인 경우 1주의 금액) : 5,000원

구분	종류	발행주식수	발행가액 총액	비고
기명식	보통주	2만주	1억원	무액면발행

(주 1) 본 투자회사의 설립일 기준입니다.

4.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1)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회사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3)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 기준)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단위:%]

기 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	-	-	-	-
투자회사					
비교지수					
수익률 변동성					

(주 1)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회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아니합니다.

(주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4)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연평균 수익률 그래프 (세전 기준)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세전 기준)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단위:%]

기 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	-	-	-	-
투자회사					
비교지수					

(주 1)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회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아니합니다.

(주 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고 1 년 미만인 경우(예:8 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고 1 년 미만인 경우(예:8 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 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회사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연도별 수익률 추이 그래프 (세전 기준)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2011.10.31 현재 / 단위: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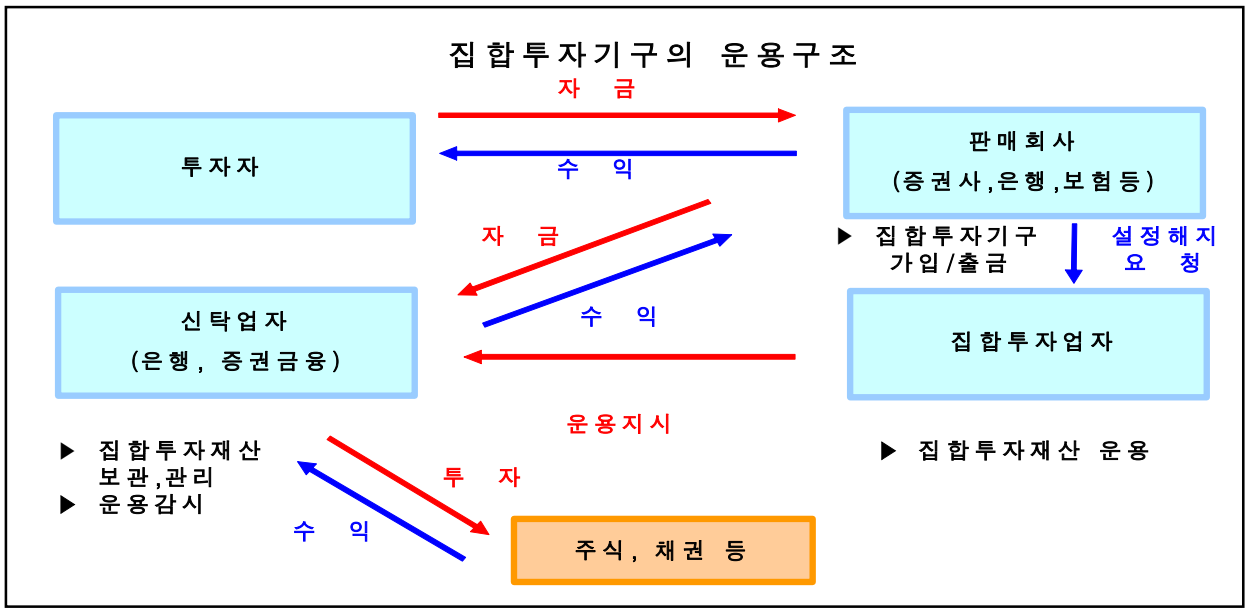
(주 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 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 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 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 사 명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대표전화 : 02-6112-5999, kira.koreainvestment.com)
회사 연혁	2022.7 :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주식회사 설립
자본금	3억
주요주주현황	한국투자금융지주(100%)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1. 투자회사의 설정・해지업무
2. 투자회사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

(2) 의무

1. 선관의무 : 집합투자업자는 주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회사재산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2. 충실의무 : 집합투자업자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3)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정관・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주

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투자회사의 회계감사인이 주주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투자회사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사·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감사인과 집합투자업자의 이사·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는 법에 따라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운용자산 규모

[2019.12.31. 현재 / 단위:억]

집합투자기구 종류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및부동산파생	특별자산및특별자산파생	혼합자산및혼합자산파생	단기금융(MMF)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투자계약형	재간접형	파생형					
수탁고	68,436	78,551	12,002	0	76,012	35,666	7,928	24,509	39,508	37,800	380,412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 개요

회 사 명	중소기업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50번지 (연락처 : 1566-2566, www.ibk.co.kr)
회사 연혁	- 1961.08. : 중소기업은행 설립 - 1994.11. : KOSDAQ 등록 - 1997.11. : 정부투자기관에서 출자기관으로 전환 - 2003.12. :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 GDR 상장

	- 2003.12. : KOSDAQ에서 증권거래소로 이전 상장 - 2006.12. : 당기순이익 1조원 클럽가입 - 2009.06. : 중국 현지법인 설립 - 2010.10. :「2010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 대상」종합대상 수상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자본금	3조 2,199억원
주요주주 현황	대한민국정부(65.13%), 한국산업은행(8.91%), 한국수출입은행(2.29%), 기타주주(23.76%)

(주1) 2010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1. 투자회사재산의 보관 및 관리
2. 집합투자업자의 투자회사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3. 집합투자업자의 투자회사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주식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4. 집합투자업자의 투자회사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5. 투자회사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금・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6. 무상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수령
7.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8.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2) 의무

1. 선관주의의무 : 투자회사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회사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2. 운용행위감시 등

- 투자회사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투자회사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정관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투자회사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투자회사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정관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법 제88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3. 법 제93조 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4. 법 제238조 제1항에 따른 투자회사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5. 법 제238조 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6.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7. 그 밖에 주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69조 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

(3) 책임

- 신탁업자가 법령・정관・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주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는 법에 따라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 사 명	신한펀드파트너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여의도동 23-9) (연락처 : 02-2180-0400, www.shinhanfundpartners.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1. 기준가격의 산정업무
2. 기준가격의 통보업무

(2) 의무

-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며, 이 경우 그 수수료는 이 투자회사재산에서 부담합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회사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책임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주주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는 법에 따라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

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	KIS자산평가㈜	NICE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02-2251-1300, www.koreaap.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02-3215-1400, www.bond.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02-398-3900, www.nicepni.com)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02-721-5300, www.fnpricing.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투자회사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자산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투자회사에 제공하는 업무

(2) 의무

- 채권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준칙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채권 등 자산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1.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사항
 2.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기 위한 사항
 3.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위하여 얻은 정보를 다른 업무를 하는 데에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채권평가회사로부터 투자회사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자산의 평가가격을 제공받는 경우 그 비용을 투자회사재산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는 법에 따라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등

(1) 주주총회의 구성

- 이 투자회사에는 전체 주주로 구성되는 주주총회를 두며, 주주총회는 법령(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2) 주주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1) 주주총회의 소집

- 주주총회는 투자회사의 이사회가 소집합니다.

- 투자회사의 이사회는 투자회사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주주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주주총회의 소집을 그 이사회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사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이사회(법 제201조 제3항에 따라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를 포함한다)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이사회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 전자등록기관은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주주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전자등록기관은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는 때에는 가부 등의 표시로 그 주주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이사회로부터 제출받아 보내야 합니다.

2) 의결권 행사방법

- 주주총회는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주주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정관으로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

다.

-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주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주총회일 전날까지 이사회(법 제201조 제3항에 따라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를 포함한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합산합니다.

- 이사회는 주주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주주총회일부터 6개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주주는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합니다.

3) 연기주주총회

- 투자회사의 이사회(법 제201조 제3항에 따라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를 포함한다)는 주주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좌수가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주주총회(이하 “연기주주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이사회는 연기주주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연기주주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주주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좌수가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주식의 총수로써 주주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법에서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정관으로 정한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의합니다.

(3) 주주총회 결의사항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

 가.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

경되는 경우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2)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

가. 영업양도 등으로 투자회사재산의 보관·관리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나. 법 제184조제4항, 법 제246조제1항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투자회사재산의 보관·관리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다.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3. 투자회사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4. 투자회사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의 변경. 다만, 투자회사를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정관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개방형투자회사의 환매금지형투자회사로의 변경

7.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8. 그 밖에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 정관의 변경 또는 투자회사의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해당 이사회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주주에게 주식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회사재산으로 법시행령 제22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주식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따라 주식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주식을 소각하여야 합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회사를 해지하는 경우, 정관에서 정한 투자회사 존속기간의 종료, 주주총회의 투자회사 해지 결의, 투자회사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회사를 해지하는

경우 투자회사를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회사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주주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주주는 집합투자업자(해당 주식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포함한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주주에 관련된 투자회사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 제9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주주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투자회사재산 명세서
 2. 주식 기준가격대장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4. 투자회사재산 운용내역서

- 집합투자업자는 정관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정관·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주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주주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한다)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그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설립 전에 신고된 경우에는 그 발기인을 말한다)
 2.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3.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법시행령 제13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

4.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5. 그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인수계약을 체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6. 그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7.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마. 재판관할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정관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 주주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주주의 선택에 따라 주주의 주소지 또는 주주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주주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투자회사의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회사의 기준가격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회사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격 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1) 의무해지

- 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합니다. 이 경우 청산인은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청산인이 법인이사인 경우에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정관에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
 3. 투자회사의 피흡수합병
 4. 투자회사의 파산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6. 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2)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회사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주주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투자회사의 주식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투자회사를 해산하려는 경우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1) 영업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회사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회사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회사의 설정 현황
2.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현황과 주식의 기준가격표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이 기재된 서류
4. 투자회사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2) 결산서류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회사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제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투자회사의 회계기간 종료
2. 투자회사의 계약기간 종료
3. 투자회사의 해지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회사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주주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주주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주주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3.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법 제230조 제3항에 따라 그 주식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4.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정관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투자회사의 자산·부채 및 주식의 기준가격
 가. 사업년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나. 사업년도의 말일
 다. 계약기간의 종료일
 라. 해지일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회사의 최초 설립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이하 “해당 운용기간”이라 한다)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3. 기준일 현재 투자회사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투자회사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5. 기준일 현재 투자회사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6. 투자회사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7. 투자회사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8. 투자회사의 업종별·국가별 투자내역
9. 투자회사의 결산 시 분배금 내역(결산 후 최초로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
10. 투자회사의 투자대상 범위 상위 10개 종목
11. 투자회사의 구조.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12. 투자회사가 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주주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주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

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주주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투자회사재산에 관하여 투자회사의 사업년도 종료, 투자회사의 존속기간 종료 또는 투자회사의 해산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1. 정관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주주총회의 결의내용
 4. 법 제247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6.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다만, 주주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주주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주주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신탁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법 제230조 제3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
 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3.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정관에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신탁업자는 주주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주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주주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 집합투자재산의 순자

산가치의 변동명세가 포함된 운용실적을 비교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정관변경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주주는 상기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정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합니다. 다만,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 및 정관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시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시행령 제9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주주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및 법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나. 정관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법시행령 제26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8. 그 밖에 주주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kira.koreainvestment.com), 주식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주식을 판매한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주주에게 알리는 방법
 3. 집합투자업자, 주식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회사재산에 속하는 법 제9조 제15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법 제9조 제15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

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1.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4) 위험지표의 공시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단위:백만원]

이해관계인		거래의 종류	자산의 종류	거래금액
성명 (상호)	관계			
-	-	-	-	-

(주1) 작성기준일 기준 최근 1년간 내역입니다.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단위:백만원]

거래일자	거래상대방	거래내용	거래금액	거래사유
-	-	-	-	-

(주1) 작성기준일 기준 최근 1년간 내역입니다.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

1)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

구 분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지분증권 관련	1. 기본원칙 - 투자자에 대한 이익 기여도에 따라 투자중개업자 선정 2. 기여도 평가방법 가. 지분증권 - 정기적으로 관련부서(운용, 리서치, 매매 등)에서 투자중개업자의 수익률기여도 및 기타기여도 등을 평가 나. 지분증권 관련 장내파생상품 - 정기적으로 관련부서(운용, 리서치, 매매 등)에서 투자중개업자의 펀드운용, 운용전략 및 기업분석업무, 매매업무 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 3. 위탁배정 - 투자중개업자별로 기여도 평가점수에 따라 투자중개업자 Pool을 구성한 후 Pool 내에서 투자중개업자 지정

채무증권 관련	1. 기본원칙 - 투자자에 대한 이익 기여도에 따라 투자중개업자 선정 2. 기여도 평가방법 - 정기적으로 관련부서(운용, 리서치, 매매 등)에서 투자중개업자의 재무건전성과 펀드운용, 운용전략 및 기업분석업무, 매매업무 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 3. 위탁배정 - 투자중개업자별로 재무건전성 및 기여도 평가점수에 따라 배정그룹을 결정하고 그 그룹내에서 투자중개업자 지정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 6 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제출시 첨부서류]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집합투자규약(부속서류를 포함한다)
2.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투자신탁, 투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출자금의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신탁인 경우는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그 부속서류를 포함한다)의 사본
 가.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 및 투자익명조합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신탁업자
 다. 일반사무관리회사(그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탁자(그 업무수탁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집합투자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의 사본
6. 예비투자설명서
7. 간이투자설명서

[붙임] 용어풀이

금융투자상품	이익추구 혹은 손실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투자원금 및 운용성과를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관련증권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채권, 주식, 부동산 및 부동산관련증권, 특별자산의 투자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단위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채권 및 주식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이자・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채권 및 주식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판매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판매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정해진 일정기간동안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때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자총회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투자자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집합투자규약에 따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Benchmark)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 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펀드는 그 비교지수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투자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환율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거래	금융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운용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